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07호

2017. 4. 27.(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1041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17-109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제2017-109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 고 시

제2017-145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
제2017-146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3
제2017-148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0
제2017-149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82
제2017-150호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해제) 고시	110
제2017-15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5
제2017-152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0
제2017-153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0
제2017-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62
제2017-15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삼육대학교)	213

◆ 공 고

제2017-102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16
제2017-1037호 2017년도 제2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217
제2017-104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29
제2017-1049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31
제2017-105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240
제2017-1057호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240

제2017-1059호 제35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학생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245
제2017-1060호 제35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모집 공고	249
제2017-1061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56
제2017-1079호 차량은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56
제2017-1095호 2017년「서울시 공공건축가」공개모집 공고	258

◆ 구 고 시

제2017-2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266
제2017-5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동구)	267
제2017-52호 사도 변경(일부폐지) 결정 고시(성동구)	272
제2017-3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광진구)	272
제2017-5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273
제2017-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대문구)	278
제2017-58호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마포구)	287
제2017-32호 사도개설 변경 허가 고시(강서구)	288
제2017-2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관악구)	289
제2017-63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 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290
제2017-6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298

◆ 구 공 고

제2017-392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공람공고(성동구)	303
제2017-41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 공사완료 공고(중랑구)	306
제2017-404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307
제2017-569호 도시관리계획(등촌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서구)	312
제2017-6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315
제2017-681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도로) 변경결정(안) 열람공고(구로구) ...	315
제2017-488호 도시관리계획[시흥1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4개소] 결정(변경) 열람공고(금천구)	317
제2017-62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관악구)	318
제2017-5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320

제2017-576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서초구)	328
제2017-583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서초구)	330
제2017-59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열람공고(서초구)	332

◆ 사업소고시

제2017-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35
-----------------------------------	-----

◆ 기 타

제2017-7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336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41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본 조례와 관련 있는 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 유지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개정 등
- 나.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보완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내용 반영
 - 관리사항 포함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 조정(4년→5년)(안 제6조, 제7조)
 - 통합심의회위원회 검토·심의 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사항 추가 및 이 경우의 재적위원 계산법 명시(안 제14조, 제18조)
- 나.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에서 준공공임대주택 삭제(안 제2조)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등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급계획 → 공급·관리계획
 - 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교통영향평가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59,

FAX : 02-2133-0756, E-mail : ninema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9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정역량 강화 및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을 위한 기구 수 확대, 소속기관 신설 및 부서간 사무조정 등 기구개편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본청 기구 및 소속기관 신설 등 기구 개편

- 평생교육국 및 서울식물원·성동소방서 신설 등

나. 행정환경·수요변화 반영을 위한 부서명·직제변경 및 사무조정

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간 소관업무 이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9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구조정에 따른 인력 배치 및 행정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총 정원을 17,521명에서 17,603명으로 82명 증원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관(성동소방서·서울식물원) 인력 배치 및 박물관 건립, 시립대학교 교육수준 향상 등 시정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총 정원 82명 증원

－ 일반직 +15, 연구직 +4, 소방공무원 +56, 교육공무원 +7

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직급·직렬 조정 및 관리기관간 정원 이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5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0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2016.09.0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천호재정비촉진계획(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409,096.3	-	409,096.3	강동구 천호동일대 기성시가지 재정비 및 활성화, 집창촌과 노후 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해 신 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9,096.3	-	409,096.3	100.0
획지	소계	282,822.4	증) 40.5	282,862.9	69.1
	공동주택용지	45,827.0	감) 138.3	45,688.7	11.1
	근린생활시설용지	33,348.3	-	33,348.3	8.2
	주상복합용지	27,510.0	-	27,510.0	6.7
	종교용지	453.0	-	453.0	0.1
	준치	175,684.1	증) 178.8	175,862.9	43.0
정비기반시설	소계	126,273.9	감) 40.5	126,233.4	30.9
	유수지	10,626.6	-	10,626.6	2.6
	녹지	1,881.8	증) 424.2	2,306.0	0.6
	공공청사	1,406.2	-	1,406.2	0.3
	공원	33,101.7	-	33,101.7	8.1
	도로	79,257.6	감) 464.7	78,792.9	19.3

※ 천호3구역 측량성과 및 구역계 조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나. 인구·주택수용 계획(20,037인 / 8,461세대)

구 분		기존세대수	계획세대수				계획인구수
			소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합 계	기정	6,987	8,461	1,525	170	6,766	20,037
	변경	6,987	8,461	1,523	172	6,766	20,037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구역		999	999	882	117	2,498
	천호2구역		194	194	162	32	485
	천호3구역	기정	502	502	481	21	1,255
		변경	502	502	479	23	1,255
	소계		1,695	1,695	1,523	172	4,238
존치관리구역		5,292	6,766	-	-	6,766	15,799

※ 천호3구역 계획용적률 증가(231.68%→231.29%)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추가확보(21세대→23세대, 증:2세대)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06.2	-	1,406.2	09.11.26	천호1구역
기정	1	유수지	천호유수지	천호동329	10,626.6	-	10,626.6	75.10.07	-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422-1	3,115.0	－	3,115.0	－	천호1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338-19	1,672.7	－	1,672.7	－	천호7구역
녹지	변경	4	녹지	연결녹지	천호동423-96	1,881.8	증)424.2	2,306.0	13.12.12	천호3구역

※ 천호3구역 측량성과 및 녹지면적 증가에 따른 면적 변경

마. 교통계획 : 변경없음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9,096.3	-	409,096.3	-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구역	38,508.2	-	38,508.2	-	
	천호2구역	10,106.8	-	10,106.8	-	
	천호3구역	23,266.4	감) 178.8	23,087.6	-	
존치 지역	존치 관리 구역	천호4구역	15,503.7	-	15,503.7	-
		천호5구역	50,613.5	증) 178.8	50,792.3	-
		천호6구역	40,201.3	-	40,201.3	-
		천호7구역	117,313.2	-	117,313.2	-
		천호11구역	10,840.9	-	10,840.9	-
		천호12구역	6,402.2	-	6,402.2	-
		천호13구역	24,682.2	-	24,682.2	-
		천호14구역	13,980.4	-	13,980.4	-
	존치시설 등		57,677.5	-	57,677.5	올림픽로, 천호공원 등

※ 천호3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제척부지 천호5존치관리구역 편입

아.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 3) 존치관리구역 운영지침 : 도서참조

자. 용도지역·지구계획

- 1) 용도지역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409,096.3	-	409,096.3	-
주거 지역	소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5.4	-	138,20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4.0	-	27,404.0	-
상업 지역	소 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38,508.2	-	38,508.2	100.0
주거지역	소계	31,925.2	-	31,925.2	8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521.2	-	4,521.2	11.7
	준주거지역	27,404.0	-	27,404.0	71.2
상업지역	소계	6,583.0	-	6,583.0	17.1
	일반상업지역	6,583.0	-	6,583.0	17.1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10,106.8	-	10,106.8	100.0
주거지역	소계	10,106.8	-	10,106.8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06.8	-	10,106.8	100.0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구 분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23,266.4	감) 178.8	23,087.6	100.0
주거지역	소계	23,266.4	감) 178.8	23,087.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50.7	감) 35.9	1,914.8	8.3
	제2종일반주거지역	21,315.7	감) 142.9	21,172.8	91.7

※ 천호3구역 구역경계 변경에 따른 편입 용도지역 면적 변경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천호동355~ 332-2	10,934	456	양측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 (2009.11)	-

차.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주 된 용 도	건 폐 율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	최대 (법적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	공동주택, 판매·업무	50%이하	350	518	- / 40	135
	천호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0	300	- / 23	70
	천호3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2	250	18 / 21	66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 추진사업별 비용분담계획

구분		재정비 추진구역 ①	계획 기반시설 ②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④	유상매입 시설 ⑤	순부담면적 (㎡) (②-③-④-⑤)	비고
총계	기정	71,881.4	22,700.6	1,649.2	6,407.0	-	14,644.4 (20.40%)	-
	변경	71,702.6	22,660.1	1,299.0	6,705.4	-	14,655.7 (20.40%)	-
천호1재정비추진구역		38,058.2	15,186.5	-	4,969.2	-	10,217.3 (26.50%)	-
천호2재정비추진구역		10,106.8	3,492.8	1,223.7	184.0	-	2,085.1 (20.60%)	-
천호3재정비 추진구역	기정	23,266.4	4,021.3	425.5	1,253.8	-	2,342.0 (10.07%)	-
	변경	23,087.6	3,980.8	75.3	1,552.2	-	2,353.3 (10.19%)	-

※ 계획기반시설내 공공시설 설치 환산면적 포함(천호1, 천호3)

2) 기반시설별 재원조달계획

구분			면적(㎡)	사업비(백만원)			설치주체 및 비용분담		비고	
				소계	보상비	공사비	공공(시,구)	민간		
도로	촉진 구역	천호1구역		6,477.0	43,139	40,689	2,450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2구역		3,492.8	21,869	20,788	1,081	-	●	
		천호3구역	기정	891.8	7,339	7,062	277	-	●	천호3구역 부담
			변경	427.1	7,339	7,062	277	-	●	
	소로2-16호선	기정	3,730.7	8,809	8,514	295	-	●	천호3구역 부담	
		변경	4,195.4	8,809	8,514	295	-	●		
	소계			14,592.3	81,156	77,053	4,103	-	-	-
공원 녹지	촉진 구역	천호1구역		3,115.0	19,136	18,690	446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3구역	기정	1,881.8	16,614	16,265	349	-	●	
			변경	2,306.0	20,359	19,931	428	-	●	
	소계	기정	4,996.8	35,570	34,995	795	-	-	-	
		변경	5,421.0	39,495	38,621	874	-	-	-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19,100.23	42,727	7,379	35,348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영주차장 포함)

※ 소로2-16호선은 공공(강동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계획 승인전 해당조합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계획 승인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가능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분		합계	분양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1,695	1,525	626	714	185	170	21	119	30	-
	변경	1,695	1,523	624	714	185	172	23	119	30	-
천호1추진구역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추진구역		194	162	35	106	21	32	-	20	12	-
천호3 추진구역	기정	502	481	239	224	18	21	21	-	-	-
	변경	502	479	237	224	18	23	23	-	-	-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사업시기	대상지역	비고
1단계	2005~2019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천호3구역	구역별 촉진사업 시행 소로2-16호선 조성
2단계	2009~2022	천호4구역, 천호5구역, 천호6구역, 천호7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기타	2005~2022	기타 존치구역(천호11~14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 단계별 추진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 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 시기를 맞추어 다음 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 할 수 있음

하.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거.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너. 방재계획 : 변경없음

더.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러. 에너지순환계획 : 변경없음

머. 특성화계획 : 변경없음

버. 기타계획 : 변경없음

서.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구역별 정비계획 개요

구역명		구역면적 (㎡)	건폐율(%)		용적률(%)			층수					
								평균			최고(높이)		
			기준	계획	법적상한	완화	계획	기준	완화	계획	기준	계획	
재정비 촉진 구역	천호1	38,508.2	50이하	50이하	518이하	518.98	514.98	-	-	-	-	40층(135m)이하	
	천호2	10,106.8	30이하	30이하	300이하	264.96	299.56	-	-	-	-	23층(70m)이하	
	천호3	기정	23,266.4	30이하	30이하	250이하	221.17	231.68	-	-	18층이하	-	21층(66m)이하
		변경	23,087.6	30이하	30이하	250이하	221.51	233.29	-	-	18층이하	-	21층(66m)이하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분		합계	분양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1,695	1,525	626	714	185	170	21	119	30	-
	변경	1,695	1,523	624	714	185	172	23	119	30	-
천호1촉진구역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94	162	35	106	21	32	-	20	12	-
천호3 촉진구역	기정	502	481	239	224	18	21	21	-	-	-
	변경	502	479	237	224	18	23	23	-	-	-

3) 정비계획

가)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천호3구역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23,266.4	감)178.8	23,087.6	-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칭	면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3,266.4	감)178.8	23,087.6	100.0%	정비구역면적 : 0.77% 감소
정비기반시 설 등	소 계	2,773.6	감)40.5	2,733.1	11.84%	정비기반시설면적 :1.46% 감소
	도 로	891.8	감)464.7	427.1	1.85%	－
	녹 지	1,881.8	증)424.2	2,306.0	9.99%	－
택지 (획지)	소 계	20,492.8	감)138.3	20,354.5	88.16%	－
	획지1	20,039.8	감)138.3	19,901.5	86.20%	공동주택부지
	획지2	453.0	－	453.0	1.96%	종교부지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도로		2009.11.26	-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연결녹지	423-96번지 일원	1,881.8	증)424.2	2,306.0	13.12.12 (서고2013-421)	

※ 측량성과 및 녹지면적 증가에 따른 면적 변경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천호3재정비 촉진구역	23,266.4	획지1	20,039.8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139	-	-	139	-	-
			획지2	453.0	천호동 359-5번지 일원						
변경	천호3재정비 촉진구역	23,087.6	획지1	19,901.5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139	-	-	139	-	-
			획지2	453.0	천호동 359-5번지 일원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용적률	계획 용적률	
기정	천호3 재정비 촉진구역	23,266.4	획지1	20,039.8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46,428.6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이하	221.17	231.68	최고66m (21층)이하 평균18층이하
			획지2	453.0	천호동 359-5번지 일원	-	종교시설	50 이하	200이하			최고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세대수							
					합계(비율)		분양		소형주택(장기전세)			
			합계		502 (100.0%)		481		21			
			전용 60㎡이하		260 (51.8%)		239		21			
			전용 60㎡~85㎡이하		224 (44.6%)		224		-			
			전용 85㎡초과		18 (3.6%)		18		-			
심의 완화사항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평균 18층 이하 적용 - 최고높이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별 높이 적용(천호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반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2선변(3m)									
변경	천호3 재정비 촉진구역	23,087.6	획지1	19,901.5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46,428.6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이하	221.51	233.29	최고66m (21층)이하 평균18층이하
			획지2	453.0	천호동 359-5번지 일원	-	종교시설	50 이하	200이하			최고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세대수							
					합계(비율)		분양		소형주택(장기전세)			
			합계		502 (100.0%)		479		23			
			전용 60㎡이하		260 (51.8%)		237		23			
			전용 60㎡~85㎡이하		224 (44.6%)		224		-			
			전용 85㎡초과		18 (3.6%)		18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2선변(3m)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④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⑤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분	가구		획지			비고
	명칭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	23,266.4	획지1	천호동 423-76번지일원	20,039.8	주택용지
			획지2	천호동 359-5번지일원	453.0	종교용지
변경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	23,087.6	획지1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19,901.5	주택용지
			획지2	천호동 359-5번지일원	453.0	종교용지

⑦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가구		공급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기정	계획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1,053.09	1,101.87	21	전용면적 60㎡이하
	변경	1,172.43	1,206.81	23	전용면적 60㎡이하

나)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다)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409,096.3	-	409,096.3	-
주거 지역	소 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5.4	-	138,20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4.0	-	27,404.0	-
상업 지역	소 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천호동355~ 332-2	10,934	456	양측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 (2009.11)	-

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0	25~33	주간선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 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올림픽로	-	2009.11.30. (서고2009-472)
기정	중로	1	406	20~23	보조간선도로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 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158) 2006.7.27 (서고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	집산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 도로		2009.11.26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 도로	-	2006.2.8 (서고제2006-49) 2009.1.2 (서고제2008-508)	천호1·2구역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 도로			천호1구역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 도로		2005.10.13 (강고2005-59)	존치시설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 도로			천호5구역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 도로		1969.1.18	천호1구역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 도로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08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 도로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 도로		2006.2.8 (서고제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 도로			천호11구역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73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2006.2.8 (서고제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 도로		78.6.1	천호5구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 도로			천호4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 도로		90.11.12	천호6구역

②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천호동329	7,004.0	-	7,004.0	-	천호7구역
기정	2	주차장	천호동422-1	4,521.2	-	4,521.2	-	천호1구역

나) 공간시설

① 공원·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422-1	3,115.0	-	3,115.0	-	천호1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338-19	1,672.7	-	1,672.7	16.09.08	천호7구역
녹지	변경	4	녹지	연결녹지	천호동423-96	1,881.8	증)424.2	2,306.0	13.12.12	천호3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06.2	-	1,406.2	09.11.26	천호1구역

라) 방재시설

①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천호유수지	천호동329	10,626.6	-	10,626.6	75.10.7	일부 주차장 중복결정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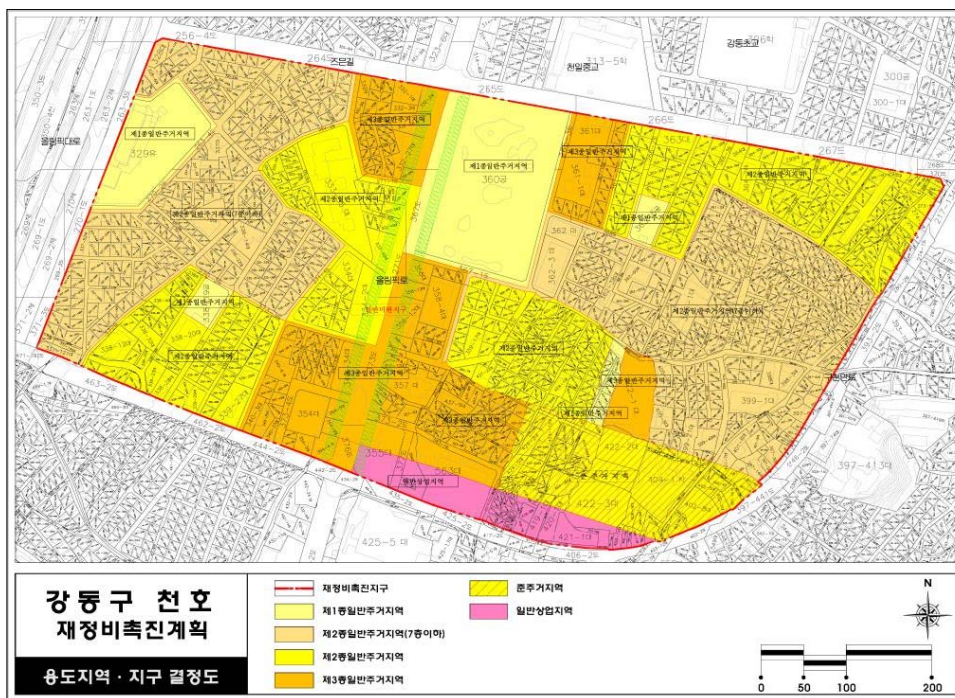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2)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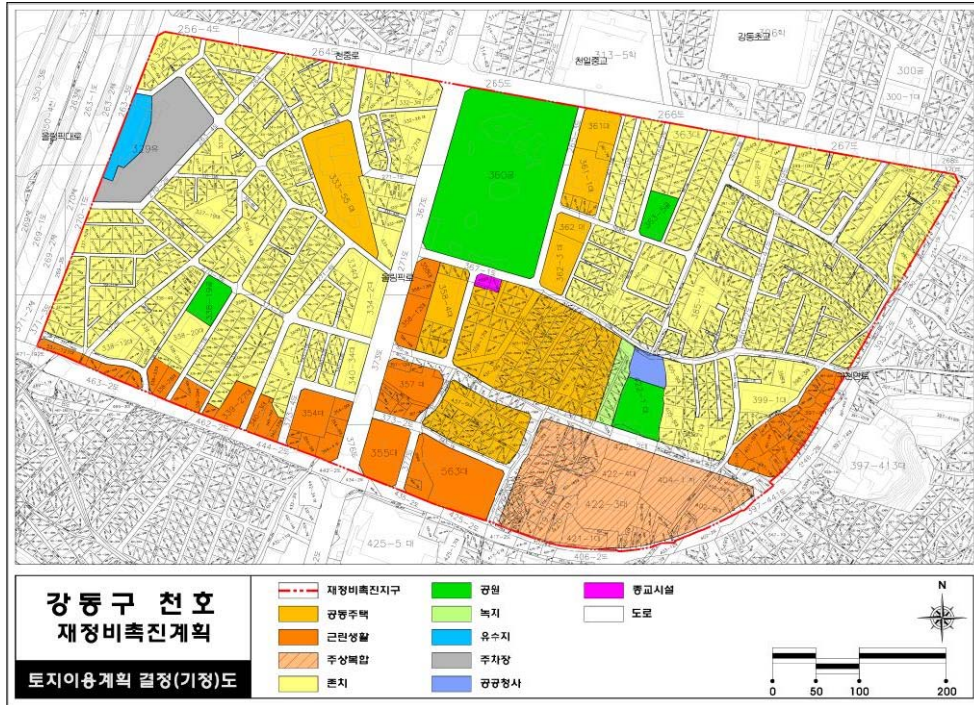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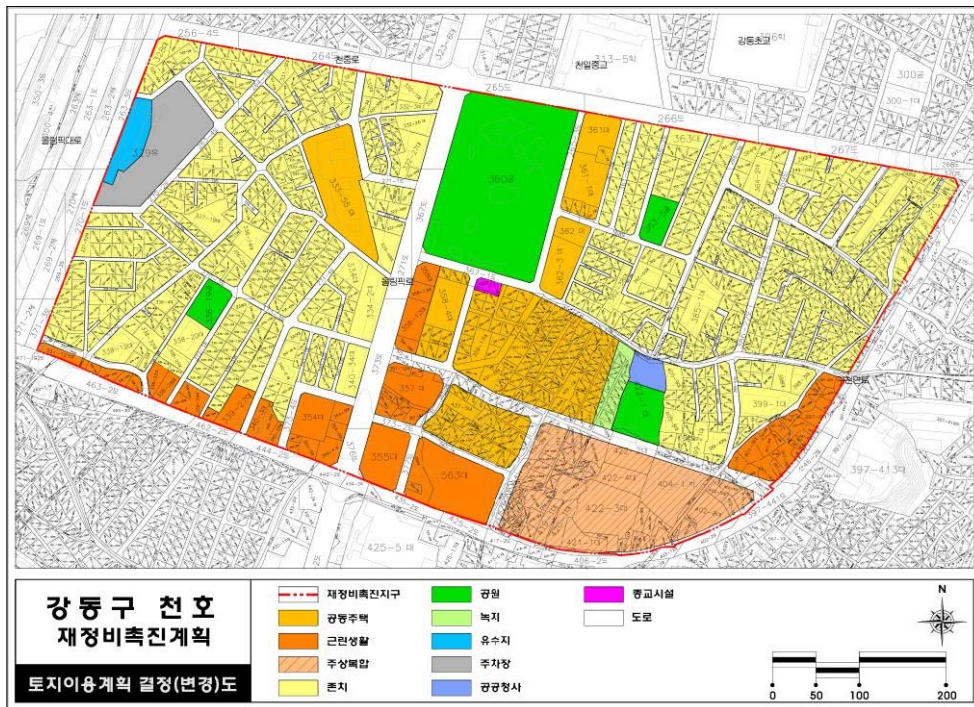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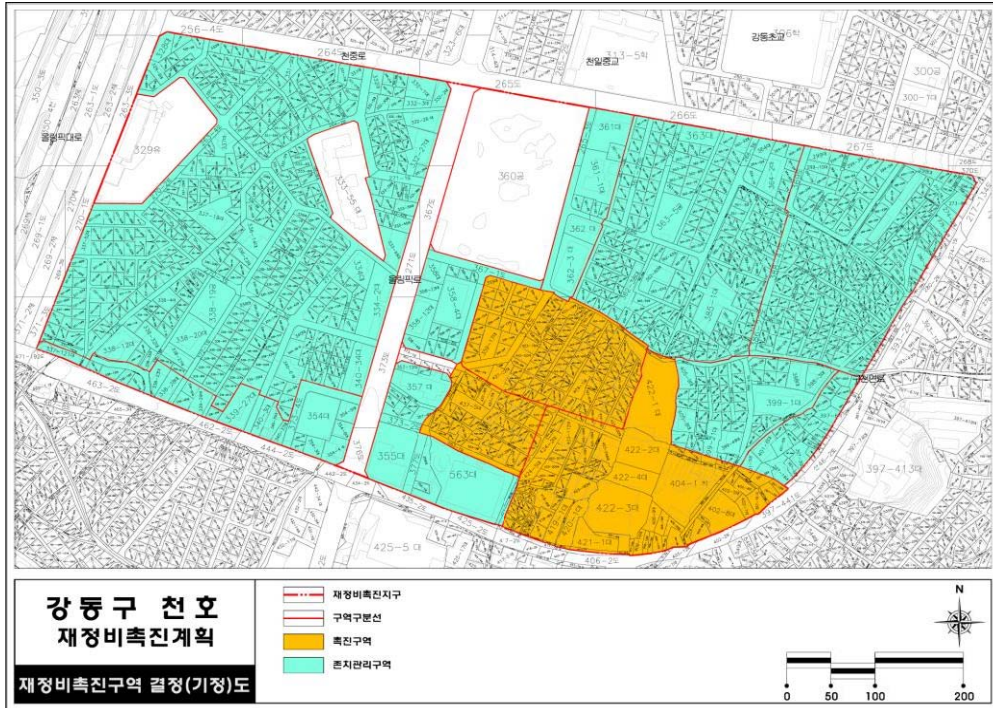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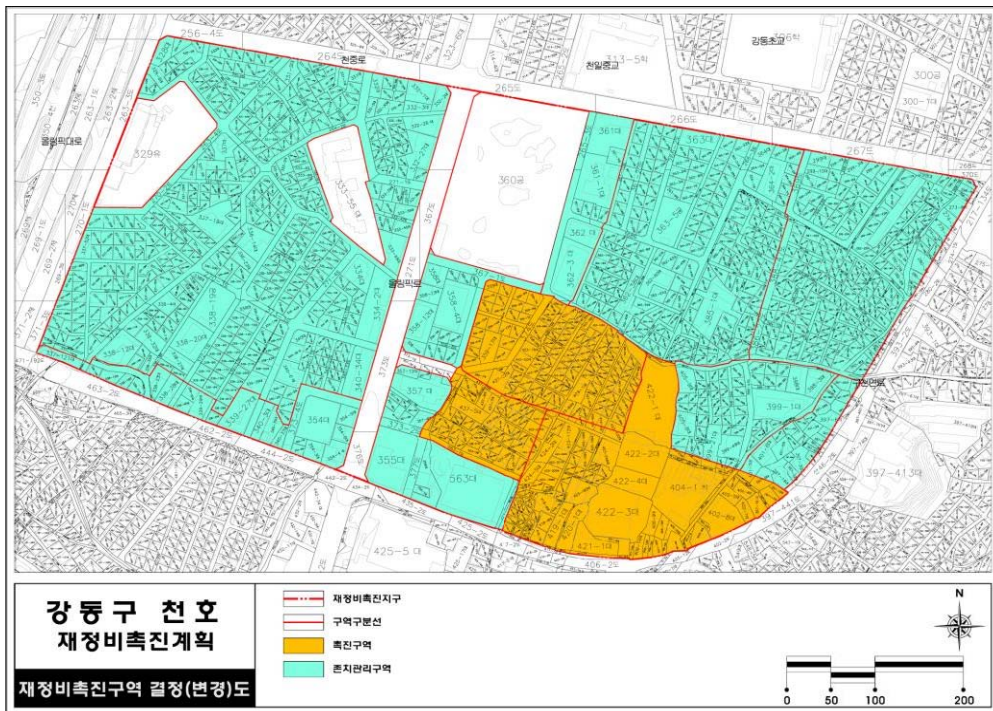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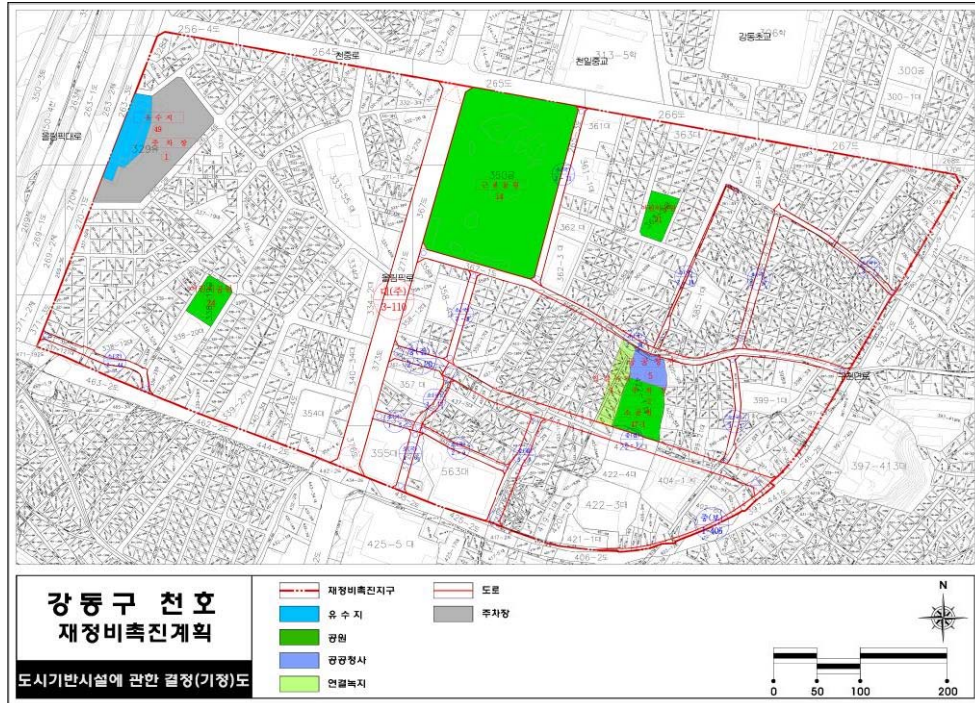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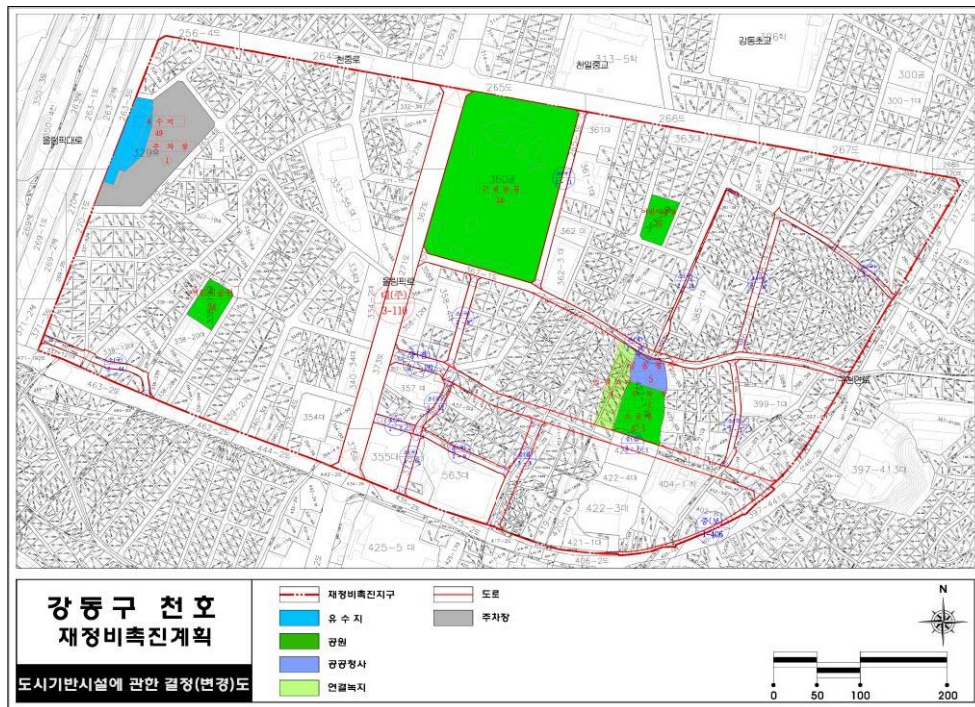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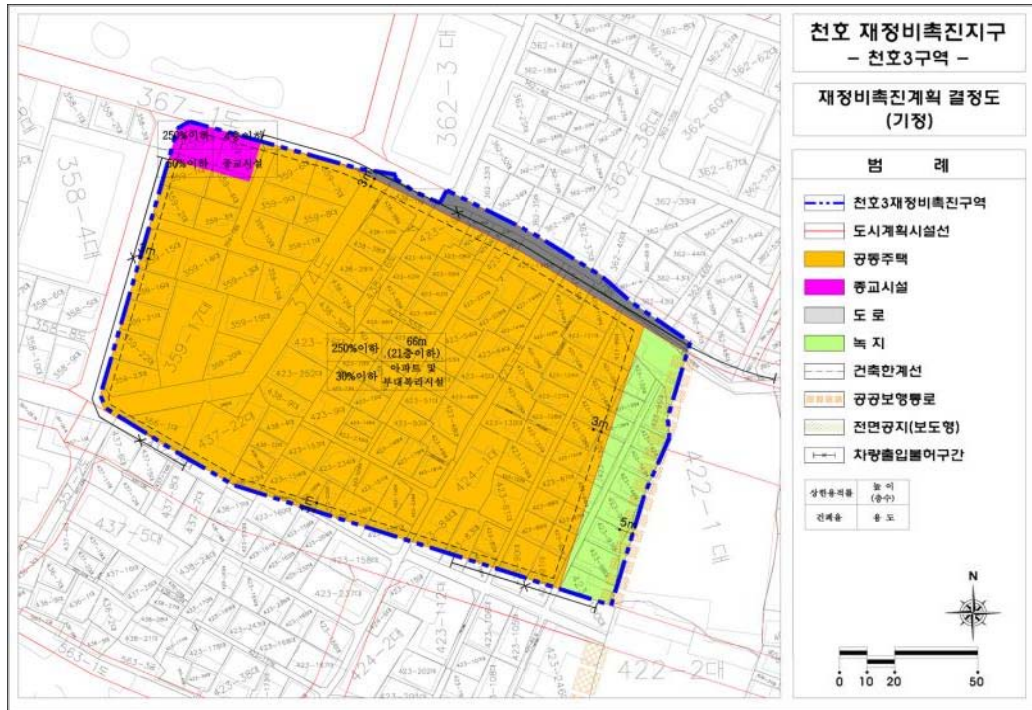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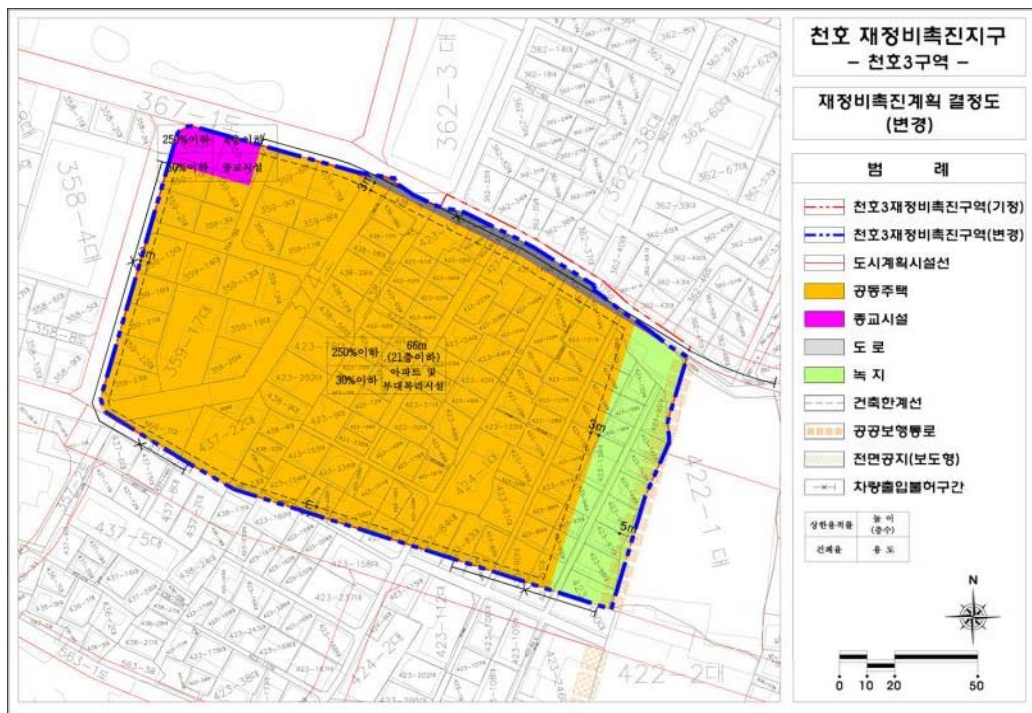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천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천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제2010-186호(2010.5.20), 제2011-341호(2011.11.17), 제2012-143호(2012.5.31), 제2013-41호(2013.2.14.), 제2013-151호(2013.5.16.), 제2014-240호(2014.6.26.), 제2015-115호(2015.5.7), 제2016-319호(2016.10.13)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I.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계획 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44.6	-	385,344.6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44.6	-	385,344.6	100.0	-
개발 용지	소 계	234,126.1	증)5,800.0	239,926.1	62.3	-
	첨단업무복합	74,259.0	-	74,259.0	19.3	-
	첨단업무지원	38,551.0	-	38,551.0	10.0	-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 용지	상업업무복합	89,195.0	증)5,800.0	94,995.0	24.7	—
	주 거 복 합	32,121.1	—	32,121.1	8.3	—
공공 용지	소 계	151,218.5	감)5,800.0	145,418.5	37.7	—
	공공문화복합	14,318.0	증)93.0	14,411.0	3.7	광진구청
	공 원	16,516.0	감)1,515.3	15,000.7	3.9	—
	광 장	1,897.5	—	1,897.5	0.5	—
	공 공 공 지	1,579.0	감)1,039.0	540.0	0.1	—
	주 차 장	1,037.0	—	1,037.0	0.3	—
	입체공공시설	4,250.0	—	4,250.0	1.1	복합문화시설
	도 로	111,621.0	감)3,338.7	108,282.3	28.1	—

※ 변경사유 : 1)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2,구의1,구의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고시 제2014-248호) 및 구의1존치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공원, 공공공지)

2) 완화차로(자양로, 아차산로)폐지에 따른 도로면적 조정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717	증)22	2,739	7,173	증)58	7,231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434	감)171	1,263	3,786	감)452	3,334	세대당 2.64인
	60㎡ 이하	318	—	318	840	—	840	
	85㎡ 이하	645	—	645	1,703	—	1,703	
	85㎡ 초과	471	감)171	300	1,243	감)452	791	
존치정비구역	소계	466	감)32	434	1,230	감)84	1,146	
	60㎡ 이하	75	—	75	198	—	198	
	85㎡ 이하	106	—	106	280	—	280	
	85㎡ 초과	285	감)32	253	752	감)84	668	
존치관리구역	—	817	증)225	1,042	2,157	증)594	2,751	기존세대 수용

※ 변경사유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2,구의1,구의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고시 제2014-248호) 및 구의1존치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택수인구수 축소 및 존치관리구역 확대에 따른 주택수인구수 증가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통 시설	도 로	111,621.0	감)3,338.7	108,282.3	28.1	
	주차장	1,037.0	-	1,037.0	0.3	
	소 계	112,658.0	감)3,338.7	109,319.3	28.4	
공간 시설	공원	16,516.0	감)1,515.3	15,000.7	3.9	
	광장	1,897.5	-	1,897.5	0.5	
	공공공지	1,579.0	감)1,039.0	540.0	0.1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4,250.0	-	4,250.0	1.1	
	소 계	24,242.5	감)2,554.3	21,688.2	5.6	
	공공 청사	광진구청	증)93.0	14,411.0	3.7	
	소 계	14,318.0	증)93.0	14,411.0	3.7	
합 계		151,218.5	감)5,800.0	145,418.5	37.7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	감)3	10	19,992.5	감)2,555.3	17,438.2	－
공원	소계	6	－	6	16,516.0	감)1,515.3	15,000.7	－
	소공원	3	－	3	3,377.0	감)1,516.0	1,861.0	－
	주제공원	3	－	3	13,139.0	증)0.7	13,139.7	－
광장		2	－	2	1,897.5	－	1,897.5	－
공공공지		5	감)3	2	1,579.0	감)1,039.0	540.0	－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구명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수법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기정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0	-	78,147.0	전면개발	
	해제	자양2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216-9번지 일원	14,026.0	감)14,026	-	-	
	기정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	10,816.4	전면개발	
	해제	구의1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6-10번지 일원	4,917.0	감)4,917	-	-	
	해제	구의2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3-7번지 일원	4,672.0	감)4,672	-	-	
	기정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59.5	-	9,859.5	전면개발	

※ 변경사유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2,구의1,구의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고시 제2014-248호)

○ 구역별 계획(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구역별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85,344.6	—	385,344.6	100.0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	137,703.9	감)23,615	114,088.9	29.6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0	—	78,147.0	20.3	도시환경정비
	자양2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216-9번지 일원	14,026.0	감)14,026	—	—	정비구역 해제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7번지 일원	15,266.0	—	15,266.0	4.0	도시계획시설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	10,816.4	2.8	도시환경정비
	구의1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6-10번지 일원	4,917.0	감)4,917	—	—	정비구역 해제
	구의2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3-7번지 일원	4,672.0	감)4,672	—	—	정비구역 해제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59.5	—	9,859.5	2.5	도시환경정비
존치 정비 구역	소 계	—	59,038.0	감)3,887	55,151.0	14.3	—
	자양1 존치정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5,151.0	—	55,151.0	14.3	도시환경정비
	구의1 존치정비구역	구의동 246-15번지 일대	3,887.0	감)3,887	—	—	정비구역 해제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	123,589.0	증)27,502	151,091.0	39.2	—
	자양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69-10번지 일대	1,133.0	—	1,133.0	0.3	—
	자양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11번지 일대	1,805.0	—	1,805.0	0.5	—
	자양3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5번지 일대	9,506.0	—	9,506.0	2.5	—
	자양4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35번지 일대	5,823.0	—	5,823.0	1.5	—
	자양5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번지 일대	1,098.0	—	1,098.0	0.3	—
	자양6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6-4번지 일대	2,024.0	—	2,024.0	0.5	—
	자양7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7-3번지 일대	6,100.0	—	6,100.0	1.6	—
	자양8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8번지 일대	3,491.0	—	3,491.0	0.9	—
	자양9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48,952.0	감)1,127.3	47,824.7	12.3	—
	자양10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8번지 일대	2,649.0	—	2,649.0	0.7	—
	자양1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6-11번지 일대	—	증)7,821.9	7,821.9	2.0	신규지정
	자양1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88번지 일대	—	증)7,331.4	7,331.4	1.9	신규지정
	구의1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4번지 일대	7,718.0	—	7,718.0	2.0	—
	구의2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6번지 일대	7,593.0	—	7,593.0	2.0	—
	구의3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14번지 일대	1,807.0	증)8,804	10,611.0	2.8	구역편입확장
	구의4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36번지 일대	8,379.0	—	8,379.0	2.2	—
	구의5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3-4번지 일대	13,034.0	증)4,672	17,706.0	4.6	구역편입확장
	구의6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15번지 일대	2,068.0	—	2,068.0	0.5	—
	구의7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6번지 일대	409.0	—	409.0	0.1	—
기타 존치구역(도로)		—	65,015.0	감)1.3	65,013.7	16.9	—

※ 변경사유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2, 구의1, 구의2,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고시 제2014-248호) 및 구의1존치정비구역 해제 반영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2재정비촉진구역(구역해제) → 자양11, 자양12준치관리구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자양2 재정비 촉진구역	합 계		14,026	-	14,026	100.0
	주거지역	소 계	1,376	증)5,844	7,220	84.9
		제1종일반	-	증)2,728	2,728	1.7
		제3종일반	668	-	668	2.7
		준 주 거	708	증)3,116	3,824	80.6
	일반상업지역		12,650	감)5,844	6,806	15.1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변경)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 기정

구역명		구역면적 (㎡) -①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 률 (%) -⑤
				합 계 -②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③	기존 기반 시설내 -④		
합 계		196,741.9	130,188.4	66,553.5	36,159	10,247.5	1,579	14,318	4,250 [12,416]	1,228.6 (18,860)	15,008.4 (58,079)	50,316.5 (-10,379)	25.5 (-5.3)
촉진 구역	소 계	137,703.9	88,479.4	49,224.5	24,237	6,723.5	1,196	14,318	2,750 [8,388]	1,228.6 (5,394)	15,008.4 (27,664)	32,987.5 (16,173)	24.0 (11.7)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0	54,368.0	23,779.0	16,106	4,923.0	-	-	2,750 [8,388]	- (4,112)	- (12,394)	23,779.0 (7,273)	30.4 (9.3)
	자양2 재정비촉진구역	14,026.0	10,315.0	3,711.0	3,291	420.0	-	-	-	221.0	526.0	2,964.0	21.1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0	-	15,266.0	948	-	-	14,318	-	948.0	14,318.0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6.4	8,315.4	2,501.0	1,566	862.0	73	-	-	24.6	164.4	2,312.0	21.4
	구의1 재정비촉진구역	4,917.0	3,906.0	1,011.0	781	-	230	-	-	-	-	1,011.0	20.6
	구의2 재정비촉진구역	4,672.0	3,683.0	989.0	563	-	426	-	-	35.0	-	954.0	20.4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59.5	7,892.0	1,967.5	982	518.5	467	-	-	-	-	1,967.5	20.0
	준치 정비 구역	59,038.0	41,709.0	17,329.0	11,922	3,524.0	383	-	1,500 [4,028]	- (13,466)	- (30,415)	17,329.0 (-26,552)	29.3 (-45.0)
준치 정비 구역	자양1 준치정비구역	55,151.0	38,551.0	16,600.0	11,576	3,524.0	-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0 (-27,281)	30.1 (-49.5)
	구의1 준치정비구역	3,887.0	3,158.0	729.0	346	-	383	-	-	-	-	729.0	18.8

※ () :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 : 입체공공시설 연면적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①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⑤
			합 계 -②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③	기존 기반 시설내 -④		
합 계	169,239.9	109,126.4	60,113.5	31,146	9,859.5	540	14,318	4,250 [12,416]	972.6 (18,860)	14,482.4 (58,079)	44,658.5 (-10,379)	26.4 (-6.1)
소 계	114,088.9	70,575.4	43,513.5	19,570	6,335.5	540	14,318	2,750 [8,388]	972.6 (5,394)	14,482.4 (27,664)	28,058.5 (10,462)	24.6 (9.2)
촉진 구역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0	54,368.0	23,779.0	16,074	4,955.0	-	2,750 [8,388]	- (4,112)	- (12,394)	23,779.0 (7,273)	30.4 (9.3)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0	-	15,266.0	855	-	-	14,411	948.0	14,318.0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6.4	8,315.4	2,501.0	1,566	862.0	73	-	24.6	164.4	2,312.0	21.4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59.5	7,892.0	1,967.5	982	518.5	467	-	-	-	1,967.5	20.0
	소의3 재정비촉진구역	9,859.5	7,892.0	1,967.5	982	518.5	467	-	-	-	1,967.5	20.0
존치 정비 구역	소 계	55,151.0	38,551.0	16,600.0	11,576	3,524.0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0 (-27,281)	30.1 (-49.5)
	자양1 존치정비구역	55,151.0	38,551.0	16,600.0	11,576	3,524.0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0 (-27,281)	30.1 (-49.5)

※() :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 : 입체공공시설 연면적

○ 구역별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 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시설은 해당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설치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 기정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장기 전세주택 (세대)
				소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계		1,900	1,046	574	217	308	49	28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434	775	379	142	202	35	28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802	212	310	102	173	35	280
	자양2재정비촉진구역	93	93	-	-	-	-	-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	-	-	-	-	-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구의1재정비촉진구역	40	40	-	-	-	-	-
	구의2재정비촉진구역	38	38	-	-	-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존치정비 구역	소계	466	271	195	75	106	14	-
	자양1존치정비구역	434	239	195	75	106	14	-
	구의1존치정비구역	32	32	-	-	-	-	-

○ 변경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장기 전세주택 (세대)
				소계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합계		1,697	843	574	217	308	49	28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263	604	379	142	202	35	28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802	212	310	102	173	35	28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	—	—	—	—	—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존치정비 구역	소계	434	239	195	75	106	14	—
	자양1존치정비구역	434	239	195	75	106	14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2011년	2017년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0년	2013년	2017년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7년	2019년	2021년	• 자양1,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방재계획 (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변경없음)

-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8,147	-	78,14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3,779	-	23,779	30.4	-
	도 로	16,106	감)32	16,074	20.6	-
	공 원	4,923	증)32	4,955	6.3	-
	문 화	2,750	-	2,750	3.5	-
택 지 (획 지)	소 계	54,368	-	54,368	69.6	-
	획 지	54,368	-	54,368	69.6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54	25~38	보조 간선도로	264 [675]	자양동781-4 [자양동216-26]	자양동245-12 [구의동244-6]	1966.6.21	완화차로 폐지에 따른 선형변경 (아차산로)
변경	대로	3	54	25~38	보조 간선도로	264 [675]	자양동781-4 [자양동216-26]	자양동245-12 [구의동244-6]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 간선도로	152 [435]	자양동683-9 [자양동680-72]	구의동592-39 [구의동592-39]	서고제2009-225호 (2009.6.4)	(동서울길)
기정	중로	1	451	20	집산도로	423	구의동592-39	자양동781-1	서고제2009-225호 (2009.6.4)	(새마을길)
기정	중로	2	479	18	집산도로	157 [434]	자양동680-81 [자양동716]	구의동591-29 [구의동591-29]	서고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332 [408]	자양동680-81 [자양동683-6]	자양동781-4 [자양동781-4]	서고제2009-225호 (2009.6.4)	

※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 공원(변경)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	소공원	자양동 216-1 일대	224 [1,772]	증)32	256 [256]	서고제2009-225호 (2009.6.4)	
기정	③	-	소공원	자양동 781-3 일대	743	-	743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⑤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 일대	3,351	-	3,351	서고제2009-225호 (2009.6.4)	지하에 열공급 설비 중복결정

※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을 의미함

■ 공공청사(변경없음)

■ 문화시설(변경없음)

■ 열공급설비(변경없음)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자양3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266	-	15,26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5,266	-	15,266	100.0	-
	도 로	948	감)93	855	5.6	완화차로 폐지에 따른 면적 축소
	공공청사	14,318	증)93	14,411	94.4	-
택 지 (획 지)	소 계	-	-	-	-	-
	획 지	-	-	-	-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공공청사	-	구의동 777 일대	14,318	증)93	14,608	-	광진구청

※ 자양로 원화차로 폐지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면적 확장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라) 구의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20) 존치구역의 정비 및 정비계획(변경)

가) 존치정비구역(변경)

(1) 자양1존치정비구역(변경없음)

(2) 구의1존치정비구역(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구의1 존치정비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6-15번지 일대	3,887	감)3,887	-	-

나)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1)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77,333.1	증)3,854.8	181,187.9	서고시 제1996-154호 (1996.6.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177,333.1㎡ → 177,326.6㎡(감6.5㎡)” 에서 감소면적 6.5㎡는 구의3재정비촉진구역의 측량면적 반영임으로, 해당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무관함에 그 이전 177,333.1㎡ 이 기정면적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증 3,854.8㎡)	• 자양2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통합적 관리 및 자양 12특별계획가능구역의 적정규모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 역 확장

○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1,187.9	-	181,187.9	100.0
주거지역	소 계	121,728.9	증)5,844.0	127,572.9	70.4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6.8	증)2,728.0	3,854.8	2.1
	제3종일반주거지역	47,092.0	-	47,092.0	26.0
	준주거지역	73,510.1	증)3,116	76,626.1	42.3
일반상업지역		59,459.0	감)5,844.0	53,615.0	29.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일반상업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728㎡)	• 자양2재정비촉진구역의 구역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환원
-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면적 3,116㎡)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지정일	비고
기정	-	아차산로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교 ~ 잠실교 (자양동219-18 ~ 자양동779-7)	141,600 (4,560)	5,900 (190)	양측 12	서고시 164호 1982.4.22	-
변경	-	자양로	중심지 미관지구	구의동220 ~ 구의동234 (자양동769-8 ~ 구의동246-15)	24,000 (16,260)	1,000 (동측535 서측820)	양측 12	서고시 164호 1982.4.22	선형 변경
변경	-	아차산로	일반 미관지구	자양동 ~ 구의동 (구의동246-19 ~ 구의동 244-6)	67,200 (16,320)	1,400 (680)	양측 12	서고시 164호 1982.4.22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자양로변 중심지미관지구 및 아차산로 변 일반미관지구 선형 변경	•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미관지구 선형 변경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377)	성동교 (자양동219-18)	자양동 강변 (자양동680-70)	1972.9.1	아차산로 자양로
기정	대로	3	90	29~38	보조간선 도로	1,650 (310)	모진동 (자양동779-7)	능동 (자양동769-8)	1971.4.7	자양로
변경	대로	3	90	29~38	보조간선 도로	1,650 (310)	모진동 (자양동779-7)	능동 (자양동769-8)		
기정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 도로	1,200 (675)	구의동 (자양동216-26)	광장동 (구의동244-6)	1966.6.21	아차산로
변경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 도로	1,200 (675)	구의동 (자양동216-26)	광장동 (구의동244-6)		
기정	중로	3	470	12	국지도로	270 (120)	자양동 680-86	자양동 680-83	서고제2009-225호 (2009.6.4)	
변경	중로	3	470	12	국지도로	147 (-)	자양동 680-87	자양동 680-83		
기정	소로	2	구의1	8	국지도로	170	자양동 779-2	자양동 779-24	서고제2009-225호 (2009.6.4)	
폐지	소로	2	구의2	8	국지도로	70	구의동 246-104	구의동 246-25	서고제2009-225호 (2009.6.4)	
폐지	소로	2	구의3	8	국지도로	70	구의동 246-63	구의동 246-8	서고제2009-225호 (2009.6.4)	
폐지	소로	2	구의4	8	국지도로	72	구의동 246-3	구의동 246-1	서고제2009-225호 (2009.6.4)	
기정	소로	3	구의1	6~8	국지도로	346	자양동 778-18	자양동 777-1	서고제2009-225호 (2009.6.4)	

※ () 안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90	대로3-90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완화차로 폐지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대로3-54	대로3-54		
중로3-470	중로3-470	• 도로 연장 변경 (B=12, L=270m→147m)	• 자양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자양2재정비 촉진구역에 포함된 부분 도시계획시설 폐지
소로2-구의2	-	• 도로폐지 (B=8, L=70)	•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기존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폐지
소로2-구의3	-	• 도로폐지 (B=8, L=70)	• 구의1, 구의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폐지
소로2-구의4	-	• 도로폐지 (B=8, L=72)	

②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③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	소공원	자양동 776-5 일대	862	-	862	서고제2009-225호 (2009.6.4)	-
변경	②	-	소공원	자양동 216-1일대	1,772 (420)	감)420	256 (-)	서고제2009-225호 (2009.6.4)	-

※ () 안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	소공원	• 공원 일부폐지 (A=420㎡)	• 자양2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따라 일부 공원폐지 • 자양12특별계획가능구역의 신설에 따른 구의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구의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원 폐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내의 공원면적 유지)

②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공공공지	구의동 246-16일대	383	감)383	-	서고제2009-225호 (2009.6.4)	-
폐지	③	공공공지	구의동 246-10일대	230	감)230	-	서고제2009-225호 (2009.6.4)	-
폐지	④	공공공지	구의동 243-6일대	426	감)426	-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⑥	공공공지	자양동 776-25일대	73	-	73	서고제2012-143호 (2012.5.31)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A=383㎡)	•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개별 필지별 개발을 위해 시설 폐지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A=230㎡)	• 구의1, 구의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촉진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폐지
④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A=426㎡)	

■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공공청사	-	자양동 777 일대	14,318	증)93	14,411	서고제2009-225호 (2009.6.4)	광진구청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공공청사	-	공공청사 면적 확장 (A=93㎡)	자양로 완화차로 폐지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면적 확장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최대개발규모

구분	최대개발규모(㎡)		비고
	기정	변경	
간선도로 교차 지하철역사 연결구역	3,000	3,000	- 적용예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간선도로변	2,000	2,400	
이면도로변	1,000	1,000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 최대개발규모(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간선도로변)	최대개발규모 변경 (2,000㎡ → 2,400㎡, 증 400㎡)	간선도로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개발규모 변경

② 가구 및 획지계획

• 기 정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B	9,300.5	자양동	779	920.4
			779-3	486.9
			779-4	577.5
			779-5	3,645.6
			779-6	1,143.1
			779-7	547.1
			779-8	1,668.0
			779-21	83.0
			779-23	56.8
			779-24	123.0
			779-25	49.1
C	1,804.6	자양동	779-11	1,314.1
			779-12	490.5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D	1,133.3	자양동	769-7	218.2	
			769-8	140.3	
			769-9	58.1	
			769-10	543.6	
			769-44	90.0	
			769-46	29.3	
			769-47	12.4	
			769-48	25.5	
			769-49	15.9	
E-1	7,718.4	구의동	252-9	248.3	
			252-10	201.3	
			252-11	174.9	
			252-12	227.4	
			252-13	117.0	
			252-14	980.0	
			252-15	336.9	
			252-25	137.9	
			252-26	178.2	
			252-27	81.7	
			252-45	193.7	
			252-46	165.0	
			252-47	165.0	
			252-48	141.8	
			252-49	185.1	
			252-50	117.4	
			252-91	183.5	
			252-92	133.9	
			252-93	201.3	
			252-94	183.5	
			252-95	439.0	
			252-96	116.7	
			252-97	153.4	
			252-98	100.2	
			252-99	100.2	
			252-100	100.2	
			252-101	153.4	
			252-102	116.7	
			252-103	116.7	
			252-104	275.7	
			252-105	113.4	
			252-106	113.4	
			252-107	113.4	
			252-108	113.4	
			252-109	1,173.2	
			252-131	65.6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E-2	7,593.0	구의동	252-16	3,762.6
			252-18	148.1
			252-19	147.4
			252-28	148.1
			252-29	115.0
			252-30	169.5
			252-31	183.5
			252-32	130.2
			252-33	171.2
			252-34	228.8
			252-35	197.4
			252-36	220.8
			252-37	165.6
			252-38	150.7
			252-39	168.9
			252-40	117.7
			252-41	162.3
			252-42	162.3
			252-43	199.0
			252-44	289.7
			252-90	304.6
			252-133	136.9
			252-134	41.2
			252-135	47.5
			252-136	23.9
F	1,807.0	구의동	246-14	1,475.7
			246-117	145.1
			246-118	106.5
			246-119	79.7
G	8,379.1	구의동	246-1	431.1
			246-2	196.1
			246-3	1,372.2
			246-4	19.2
			246-5	213.2
			246-6	124.3
			246-36	182.8
			246-37	174.7
			246-38	141.8
			246-39	331.6
			246-40	299.0
			246-41	138.5
			246-42	247.6
			246-43	335.5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G	8,379.1	구의동	246-44	140.2
			246-45	335.5
			246-47	239.0
			246-65	123.3
			246-66	123.3
			246-67	309.4
			246-68	110.1
			246-69	110.1
			246-70	126.3
			246-71	124.3
			246-72	123.3
			246-73	123.3
			246-74	111.1
			246-75	110.7
			246-89	168.3
			246-90	240.7
			246-91	166.9
			246-92	166.9
			246-93	137.8
			246-94	197.4
			246-95	183.1
			246-96	194.4
			246-97	19.2
			246-98	182.8
H	13,033.9	구의동	246-105	231.4
			246-107	40.3
			246-108	32.4
			243-2	671.8
			243-3	155.0
			243-4	2,308.4
			243-5	140.5
			243-9	318.3
			243-11	250.2
			243-12	682.0
			243-13	437.7
			243-17	332.6
			243-18	252.2
			243-19	359.3
			243-21	176.5
			243-22	193.1
			243-23	188.1
			243-24	256.0
			243-25	259.2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H	13,033.9	구의동	243-27	130.2	
			243-28	126.6	
			243-29	126.6	
			243-30	144.8	
			243-31	144.8	
			243-32	128.3	
			243-33	126.6	
			243-34	130.2	
			243-45	139.2	
			243-46	137.5	
			243-47	131.6	
			243-48	118.3	
			243-49	119.7	
			243-50	131.6	
			243-51	198.7	
			243-52	193.1	
			243-53	141.8	
			243-54	141.8	
			243-55	131.6	
			243-56	155.0	
			243-57	141.5	
			243-58	141.8	
			243-62	133.2	
			243-63	338.5	
			243-68	11.9	
			243-69	24.5	
			243-70	197.0	
			243-71	445.0	
			243-72	9.9	
			243-75	13.1	
			243-76	609.6	
			243-78	1,037.4	
243-79	51.9				
243-80	99.7				
K	3,491.2	자양동	680-3	621.3	
			680-4	820.1	
			680-68	1,058.1	
			680-70	991.7	
L	6,100.2	자양동	627	435.0	
			627-1	346.2	
			627-2	423.0	
			627-3	2,532.4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L	6,100.2	자양동	627-8	318.1
			627-15	61.6
			627-20	184.2
			627-21	659.9
			627-22	201.2
			627-24	190.8
			627-25	156.6
			627-26	185.3
			627-27	217.3
			627-28	188.6
M	2,023.6	자양동	219-20	99.5
			626	558.8
			626-1	210.6
			626-2	189.6
			626-3	280.8
			626-4	316.5
N-1	5,822.8	자양동	626-5	367.8
			219-6	248.5
			219-7	380.2
			219-8	553.4
			219-11	511.0
			219-12	289.6
			219-13	505.8
			219-14	264.0
			219-18	531.7
			219-22	289.6
			219-23	289.6
			219-24	296.2
			219-31	496.6
			219-35	529.0
			219-36	256.5
			219-37	280.9
			219-38	25.9
			219-39	24.6
			219-40	20.8
			219-41	20.4
N-2	1,097.8	자양동	219-42	4.4
			219-43	4.1
			219-2	957.7
			612-62	140.1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N-3	2,649.4	자양동	219-3	264.1
			219-4	15.2
			219-5	813.6
			219-44	312.8
			219-17	229.1
			219-25	755.7
			219-28	101.5
			219-30	157.4
O	2,067.5	구의동	244-14	364.0
			244-15	501.5
			244-17	74.0
			244-18	102.5
			244-19	406.0
			244-50	520.3
			244-51	99.2
P	408.6	구의동	244-6	408.6

• 변 경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	위 치	면 적(㎡)	
-	B	9,960.5	-	-	※ 획지계획(기정) 전면폐지 및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	C	1,804.6	-	-	
-	D	1,133.3	-	-	
-	E-1	7,718.4	-	-	
-	E-2	9,125.6	-	-	
-	F	10,611.1	-	-	
-	G	8,379.1	-	-	
-	H	17,671.2	-	-	
-	K	3,491.2	-	-	
-	L	6,100.2	-	-	
-	M	2,023.6	-	-	
-	N-1	5,822.8	-	-	
-	N-2	1,097.8	-	-	
-	N-3	2,649.4	-	-	
-	O	2,067.5	-	-	
-	P	408.6	-	-	
-	Q	7,842.4	-	-	
-	R	9,336.7	-	-	

- 획지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획지계획	• 획지계획 전면 폐지	•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③ 공동개발계획

• 계획기준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분할가능선	- 간선도로변의 필지에 대하여는 도로확폭을 위한 예정부지(폭3m)를 대지분할가능선으로 계획 - 대지분할가능선을 기준으로 공공용지 제공 - 대지분할가능선으로 계획된 부지 부분에는 공공용지 제공과 관계없이 장래 도시계획도로 확폭을 위하여 지하층 개발 규제	- 간선도로변 등 도로의 확폭이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2~5m)을 계획 -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필지들은 대지분할가능선을 기준으로 대지분할 후 기반시설 제공 - 대지분할가능선으로 계획된 부지 부분에는 장래 도시계획도로 확폭을 위하여 지하층 개발 규제	
공동개발(지정)	- 동일한 소유의 인접한 필지 - 입지여건상 잠재력이 큰지역의 소규모 필지	-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 연접한 개별소유 필지로서 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 -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에 따라 필지의 규모가 작아진 필지 및 그와 연접한 필지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등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권장)	- 공공시설 설치에 따라 필지의 규모가 작아짐으로 단독개발이 곤란한 필지 - 접근성이 불량한 필지 및 전면도로 차량 진출입이 불허가 필요한 필지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연접한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 (부정형·세장형, 과소필지,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2이상의 필지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연접한 대지간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연접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 지정 계획된 필지 포함 가능)	

※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부분은 기반시설로 조성 후 기부채납하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계	기정	변경	
B	자양동	779	920.4	4,566.0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기 공동개발
		779-5	3,645.6				
		779-6	1,143.1	1,690.2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779-7	547.1				
D	자양동	769-7	218.2	506.6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769-8	140.3				
		769-9	58.1				
		769-44	90.0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계	기정	변경	
E-1	구의동	252-11	174.9	1,154.9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252-14	980.0				
		252-13	117.0	233.7	-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252-96	116.7				
		252-15	336.9	1,510.1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필지
		252-109	1,173.2				
		252-93	201.3				
		252-94	183.5	823.8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52-95	439.0				
		252-100	100.2	253.6	-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252-101	153.4				
E-2	구의동	252-41	162.3	1,117.9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52-42	162.3				
		252-43	199.0				
		252-44	289.7				
		252-90	304.6				
F	구의동	246-13	466.3	990.7	정비구역 (통합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6-104	524.4				
		246-15	773.9	1,242.6	존치정비구역 (통합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6-17	221.6				
		246-18	207.8				
		246-19	39.3				
		246-61	199.3	692.5	정비구역 (통합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6-62	199.3				
		246-63	293.9				
G	구의동	246-5	213.2	796.3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6-42	247.6				
		246-43	335.5				
		246-36	182.8	656.5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6-37	174.7				
		246-40	299.0				
		246-38	141.8	656.2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6-39	331.6				
		246-98	182.8				
		246-45	335.5	796.3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6-47	239.0				
		246-74	111.1				
		246-75	110.7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계	기정	변경	
H	구의동	243-8	240.7	820.2	정비구역 (통합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3-65	225.8				
		243-66	353.7				
		243-9	318.3	763.3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243-71	445.0				
		243-11	250.2	861.7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3-18	252.2				
		243-19	359.3				
		243-13	437.7	634.7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3-70	197.0				
		243-17	332.6	671.1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3-63	338.5				
		243-22	193.1	896.4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3-23	188.1				
		243-24	256.0				
		243-25	259.2	278.3	정비구역 (통합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공동개발
		243-36	130.2				
		243-37	148.1				
		243-56	155.0	438.3	-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243-57	141.5				
		243-58	141.8				
		243-59	176.2	671.1	정비구역 (통합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3-60	156.4				
		243-61	338.5				
L	자양동	627	379.1	567.7	-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627-28	188.6				
		627-1	346.2	769.2	-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627-2	423.0				
		627-20	184.2	1,236.1	-	공동개발(권장)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과소필 지, 부정형 필지로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필지
		627-21	659.9				
		627-22	201.2				
		627-24	190.8				
M	자양동	219-20	99.5	467.3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626-5	367.8				
N-1	자양동	219-12	289.6	795.4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필지
		219-13	505.8				
		219-18	531.7	812.6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19-37	280.9				
N-2	자양동	219-2	957.7	1,097.8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적정개발규모 유도 (과소필지)
		612-62	140.1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계	기정	변경	
L	자양동	627	379.1	567.7	-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627-28	188.6				
		627-1	346.2	769.2	-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627-2	423.0				
		627-20	184.2	1,236.1	-	공동개발(권장)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과소필 지, 부정형 필지로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필지
		627-21	659.9				
		627-22	201.2				
		627-24	190.8				
M	자양동	219-20	99.5	467.3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626-5	367.8				
N-1	자양동	219-12	289.6	795.4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필지
		219-13	505.8				
		219-18	531.7	812.6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19-37	280.9				
N-2	자양동	219-2	957.7	1,097.8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적정개발규모 유도 (과소필지)
		612-62	140.1				
N-3	자양동	219-3	264.1	1,248.9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간선가로 교차부 규모있는 계획 유 도가 필요한 필지
		219-17	229.1				
		219-25	755.7				
		219-4	15.2	1,400.5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과소필 지, 부정형 필지로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필지
		219-5	813.6				
		219-28	101.5				
		219-30	157.4				
		219-44	312.8				
O (^{주1})	구의동	244-14	364.0	964.7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4-15	501.5				
		244-51	99.2				
		244-17	74.0	1,102.8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44-18	102.5				
		244-19	406.0				
Q	자양동	216-10	550.5	1,101.7	정비구역 (통합개발)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216-19	551.2				
		216-12	45.7	478.1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도로 확보) 계획으 로 인해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
		216-21	432.4				
		680-9	111.7	360.0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680-10	248.3				
		680	210.1	515.7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기 공동개발
		680-84	151.5				
		680-85	9.6				
		680-1	144.5				

주1) 공동개발(권장)실현 시 민간운영지침 제2장제7조에서 제시하는 공공시설 확보 시 용도지역 상향(제3종→준주거)검토

주1) 공동개발(권장) 실현 시 민간운영지침 제2장제7조에서 제시하는 공공시설 확보 시 용도지역 상향(제3종→준주거)검토

■ 건축물에 관한 결정

①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불허용도 계획

구분	전층	
	기정	변경
일반 상업 지역 (A)	간 선 부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 발전시설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 단독주택 • 고시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텔, 소형호텔 제외)
	이 면 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군사시설	• 위락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준주거 지역 간선변 (B)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 발전시설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준주거 지역 이면부 (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군사시설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구분	전층	
	기정	변경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D)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 발전시설	좌 동

※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대지에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의 복합)은 불허함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 불허용도(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허용도 재설정 및 도시미관 저해용	• 불허용도의 현실화 및 지역활성화 저해용도를 추가하여 불허용도 지정

• 권장용도 계획

구분	전층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1)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운동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 판매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교육연구시설
준주거지역 간선변 (2)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준주거지역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3)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판매시설 중 상점 • 노유자시설
미가로 먹자골목 (4)	• 1,2종 근생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주)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 권장용도 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권장용도(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용도지역별 권장용도 추가 지정	• 간선가로 활성화 및 이면부 배후 주거지역 지원을 위한 권장용도 지정

②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건폐율 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위치		기정			변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30%	—	250%	250%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0%	300%	—	300%	360%	400%	
일반 상업지역	아차산로변	200%	500%	—	300%	630%	800%	
	자양로변	400%	600%	—	400%	660%	800%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용적률 10%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대지에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의 복합)은 불허함

주6)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β - 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	

주7)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주택연면적비율(%)	일반상업지역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36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390% 이하	650% 이하		
50 미만	400% 이하	660% 이하		

주8)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필지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하여 조정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적률 체계 정립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기 정

구 분		완화조건		완화용적률(%)	비 고
획지	공동개발(규제)	준수 시 (동일소유자필지제외)		기준용적률×a	• 2필지 : a=0.1 • 3~4필지 : a=0.2 • 5필지이상 : a=0.3
	공동개발(권장)	준수 시		기준용적률×0.5a	
	맞벽건축	맞벽건축 시		기준용적률×a	
	획지분할(합병)	토지교환에 따른 정형화		30	•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공원	조성 시		기준용적률× (추가조성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 a=1.0 • 지상형구조 : a=2.0 • 침상형구조 : a=3.0 • 설치의무면적 이외 추가 조성 시
	공개공지위치	준수 시		기준용적률×0.1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 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0.3	• 총연면적의 20%이상 시
보행 등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조성 시 등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2.0 • 공공보행통로: a=3.0 • 보차혼용통로: a=4.0 • 지정 외에 추가 조성시는 구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입체공공 보행통로	케노피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3.0	
			개방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4.0	
		지하철연결통로 (지하콘코스등)		80	
차량 등선 주차	공동주차장	설치 시		기준용적률×a	• 30M이상도로변:a=0.2 • 30M미만도로변:a=0.1
	공용주차장	설치 시		기준용적률×((대지내주차수-법정주 차대수)×a) ÷법정주차대수	

구 분		완화조건	완화용적률(%)	비 고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준수 시	기준용적률×(건축한계선 준수면적÷대지면적)×3.0	
	벽면한계선	준수 시	기준용적률×(벽면한계선 준수면적÷대지면적)×2.0	
건축물 관련	경사지붕	5층이하 건물에 설치 시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 시	40	• 5층이상 부분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 이 4분의1 이상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20	
	건 폐 율	40%이하로 건축 시	40	
환경 친화적	투수성 바닥처리	투수성재료(잔디포함)로 조성 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 조경공간 제외
	중수도	중수도시스템 설치 시	30	• 빗물이용시설 제외
	빗물이용1)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20	•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최초 1건, 차후는 그 기준에 따라 처리)
	광고물설치계획	광고물설치계획 반영 시	10	
	공공기여 리모델링	공공기여 시	20	• 변압기, 공공시설 등 •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 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옥상면적)×0.2	•서울시 보급형옥상녹화기법 적용 시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 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 ÷전체벽면면적)×0.5	•서울시 지침에 의거 조성 시
외부공간 환경	조경비	추가조경면적을 확보 시	기준용적률× (추가조경면적÷대지면적)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대지 처리시	잔여대지	인접필지가 공동으로 개발 시	20	
		인접필지가 매입하여 개발 시	30	
	전면수용대지	보상금액을 제공하여 개발 시	30	
	도시계획시설 협의매수구역	도시계획시설 협의매수 시	$[(1+0.3\beta)/(1-0.3\beta)]$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	$\beta:\text{협의매수율}=\text{협의매수면적}/$ 협의매수전전체대지면적

- 1) 빗물이용시설의 최초1건은 건대체육시설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사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개별건축허가 시 운영지침에 의거
이용계획수립
- 주) 1.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하며, 기준용적률과 완화용적률의 합
은 각각의 대지에 지정된 허용용적률의 이하가 되도록 함. 단, 협의매수구역은 예외로 함
2. 용적률 완화 시 대지 내 공지와 조경부분, 보행동선과 건축물배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변 경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친환경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 반드시 충족
3.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
5.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6. 공동개발 등으로 서로 다른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이 적용될 경우 전면도로가 넓은 필지의 인센티브 유형을 적용하며, 도로의 폭원,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리한 인센티브 유형을 적용한다.
7.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2기준 모두 1등급 만족 시 : 기준용적률 x 0.25이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1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용도지역	공간 특성	유형	건폐율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계획방향
일반 상업 지역	간선변 (자양로변)	D1	60%	400%	660%	•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건축물 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등
				300%	630%	
	간선변 (아차산로변)	D2	60%	400%	660%	•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건축물 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등
				300%	630%	
준주거 지역	이면부	D3	60%	300%	630%	•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건축물 용도, 공공보행통로, 공동주차출입구, 보행개선 등
				300%	360%	
		D4	60%	300%	630%	•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건축물 용도, 공공보행통로, 공동주차출입구, 보행개선 등
				300%	360%	
일반상업 지역	특별계획 가능구역	D7	60%	221%	461%	•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건축물 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등

- 인센티브 유형(D1)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간선변 (자양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400%/660%, 300%/63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α	• 2필지: $\alpha=0.27$ • 3필지: $\alpha=0.3$ • 4필지 이상: $\alpha=0.34$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α	• 2필지: $\alpha=0.13$ • 3필지 이상: $\alpha=0.17$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alpha=2.15$ • 피로티구조: $\alpha=1.07$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72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alpha=1.72$ • 피로티구조: $\alpha=0.86$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0.43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면적)×0.43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04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 치 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D2)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간선변 (자양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400%/660%, 300%/63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α	• 2필지 이상: $\alpha=0.27$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α	• 2필지 : $\alpha=0.22$ • 3필지 이상: $\alpha=0.26$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alpha=3$ 피로티구조: $\alpha=1.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72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alpha=1.72$ • 피로티구조: $\alpha=0.86$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0.8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0.8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 능한 구조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04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 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D3)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간선변 (아차산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630%,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공동주차출입구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alpha=0.33$ • 3필지: $\alpha=0.38$ • 4필지 이상: $\alpha=0.4$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alpha=0.17$ • 3필지 이상: $\alpha=0.22$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개방형구조: $\alpha=2.75$ • 피로티구조: $\alpha=1.37$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2$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개방형구조: $\alpha=2.2$ • 피로티구조: $\alpha=1.1$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text{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 \times 0.55$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연면적}) \times 0.55$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 $\times 0.05$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 시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1$	• 위치 준수 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D4)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간선변 (아차산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63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공동주차출입구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α	• 2필지 이상: $\alpha=0.33$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α	• 2필지: $\alpha=0.28$ • 3필지 이상: $\alpha=0.33$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alpha=3.0$ • 피로티구조: $\alpha=1.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2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alpha=2.2$ • 피로티구조: $\alpha=1.1$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1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1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 한 구조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 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05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 시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0.1	• 위치 준수 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D5)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건축물 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공동주차출입구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 획 유 도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α	• 2필지 : α=0.06 • 3필지 : α=0.07 • 4필지 이상: α=0.08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 α	• 2필지 : α=0.04 • 3필지 이상: α=0.05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α	• 2필지 : α=0.03 • 3필지 : α=0.04 • 4필지 이상 : α=0.05
	대 지 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α=0.5 • 피로티구조: α=0.2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4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α=0.4 • 피로티구조: α=0.2
	건 축 물 용 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0.1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면적)×0.1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 한 구조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보 행 개 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05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 시
주 차 계 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0.02	• 위치 준수 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D6)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공동주차출입구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α ●2필지 : $\alpha=0.05$ ●3필지 : $\alpha=0.06$ ●4필지 이상 : $\alpha=0.07$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개방형구조 : $\alpha=0.9$ ●피로티구조 : $\alpha=0.4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4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개방형구조 : $\alpha=0.4$ ●피로티구조 : $\alpha=0.2$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0.2
		특정층 (꼭대기층)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0.2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05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 시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0.02 ●위치 준수 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D7)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간선변 (아차산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221% / 461%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건축물 용도, 공공보행통로, 보행개선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8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2.8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0.8
		특정층 (꼭대기층)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0.8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보행 개선	지하철출입구	기준용적률×0.4 ●건물내부 설치 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지하철출입구·배기구·배전함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기준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 출입구 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 출입구 등의 연면적 / 건물연면적) 이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보행개선 항목과 중복 적용 불가

주)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적용 제외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기 정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개발에 따른 환경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면도로 사선제한 기준을 적용 - 건축물의 높이 = 전면도로폭 × 1.5					
건축물의 높이 완화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을 준수할 시에는 그 정도에 따라 높이를 완화적용 - 완화되어지는 높이 = 전면도로폭 × (1.5 + a_1 + a_2 + ...)					
	인센티브 항목		완화내용(a)	비 고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시(기부채납의 경우)		(a/A)×6.0	• A : 기존대지면적 • a : 기부채납면적 • b : 공개공지등 면적 • a : 각 인센티브 완화내용의 합 • 단, $1.5 + a \leq 3.0$, 6m미만의 도로에서는 $1.5 + a \leq 2.5$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준수 시		(a/A)×3.0			
	공개공지등 설치 시		b / A			
	공동개발 이행 시		0.3			
	대지분할가능권장선 이행 시		0.15			
	아케이드 조성 시		0.15			
	공공보행통로 개설 시		0.1			
	공동주차장 및 공동주차출입구 등 권장사항 이행 시		0.1			
최고높이 한도	• 가구(街區)별 건축할 수 있는 최고높이한도를 계획 • 간선도로변은 법정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높이한도를, 교차로변 및 지하철역사 인접지역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최고높이한도를 완화적용 • 이면도로변 및 가구(街區)내부는 용도지역별 사선제한계수를 적용하여 최고높이한도를 계획함으로써 주변 주거지역과의 상충을 완화하도록 계획 • 사선제한의 완화에 의하여 완화되어지는 높이는 최고높이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간선도로변 (15M이상도로변)	이 면 도 로 변			
			~6M	~8M	~10M	~12M
	일반주거	32M	20M	26M	32M	32M
	준 주 거	55M	24M	32M	40M	48M
	일반상업	70~100M	29M	39M	48M	58M

- 변 경

위치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100m이하	
	간선부	70m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57m이하	
	간선부	55m이하	
	이면부 (미가로 주변)	48m이하	
	자양로 이면부	24m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8m이하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전면도로 사선제한, 건축물의 높이완화, 최고높이 한도 → 최고높이 적용	• 기정 최고높이 한도 범위안에서 최고 높이계획으로 변경

③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변경)

- 기 정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3~5m	•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차선확폭 • 보행공간을 정비 • 정연한 가로경관을 형성 • 도로확폭예정지 3M 포함
	이면도로변	1~2m	• 도로의 기능향상
벽면한계선	자양로변	3m	• 건축선 지정이 부적합한 필지에 적용 • 건축물의 주벽면 또는 특정층의 벽면이 벽면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벽면선의 적용에 있어 특정층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층벽면을 그 대상으로 함 • 피로티구조 건축의 경우에는 피로티기둥을 제외한 건축외벽을 당해층의 벽면으로 봄 • 피로티구조 건축 시 피로티의 유효높이는 6m이상

- 변 경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3~5m(대지분할가능선 제외)	결정도 참조
	이면도로변	1~2m(대지분할가능선 제외)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이면부 건축한계선 변경 • 벽면한계선 폐지	•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이면부 건축한계선 변경 • 미관지구 내 지정된 벽면한계선을 폐지하고,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변경)

- 기 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형태	벽 면	전구역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됨 • 벽면에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외 벽	전구역	• 건축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됨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외 관	전구역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1층 서터	단독,다세대주택 이외	•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토록 권장
	1층바닥 마감높이	전구역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5cm이하로 권장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색채	건축물의 전면	전구역	• 활동감을 느낄 수 있는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
	건축물의 좌우배면,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전구역	•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토록 권장

- 변경

구분		계획내용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서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1층부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단,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외)
	개구부	• 신축건축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야함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이상 출입구 설치 금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벽면을 도로에 노출금지
	전면폭 및 형태	• 건축물 5층 이상의 전면폭은 50m이하로 한다. 부득이 건축물 5층이상의 전면폭을 50m 초과하여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형태 등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수 있음
외관	외벽면의 통일성	•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 조화를 유지하고,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측면 이격공지의 처리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 이격거리 3m미만 및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정으로 차폐
	야간 경관조명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증개축 시 야간조명 권장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금지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도시미관 저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탐상형 건축물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탐상형 권장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공지	공개공지	• 3개소	• 3개소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 : 3~5m • 이면도로변 : 1~2m	• 간선도로변 : 3~5m(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이면도로변 : 1~2m(차도부속형 전면공지)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보행통로	• 전구간 : 1개소(건축한계선)	• 전구간 : 3개소(건축한계선)	결정도 참조
	보차혼용통로	• 전구간 : 2개소(건축한계선)	• 보차혼용통로를 폐지하고 공공보행통로로 변경	결정도 참조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보행통로 신설 • 보차혼용통로 폐지	• 이면부의 활성화 및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 보차혼용통로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25m 이상)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기계설 또는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외)	• 간선도로변(25m 이상)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결정도 참조
공동주차 출입구	-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 필지 지정	
주차장 설치완화	• 보도가 설치된 도로 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된 도로에 접한 대지 (단,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공용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지)	• 차량출입구간으로 인해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필지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 구의동 246-17, -18, -19 - 구의동 246-104	

※ 인접필지와 공동개발로 주차출입이 가능할 경우 주차장 설치완화 및 설치비용 면제 미적용

- 주차장 설치완화 시 설치비용 면제 항목

항목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항목	• 하단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준수 시 주차장 설치비용 100% 면제하고, 2가지 준수 시 주차장 설치비용 50% 면제 (설치비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름) ① 간선변 1층부 지정용도 100% 도입 시(공용면적 제외) ② 간선변 건축한계선 1m이상 추가 확보 시 ③ 공개공지(쌍지형공지)설치 시 - 설치의무 대상인 경우 : 법적 설치기준의 50% 추가 설치 시 - 설치의무 비대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이상 또는 25㎡이상 중 큰면적으로 설치 시 ④ 개방화장실 설치 시(개방화장실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⑤ 대지 내 또는 건축물 내 가로지장물(분전반 등)수용 시	구의동 246-17, -18, -19 구의동 246-104

※ 상기 항목 중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준높이 완화항목과 중복계상 불가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보차혼용통로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함에 따라 이면부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일부 필지의 전면부 차량출입 허용
• 공동주차출입구 신설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차출입구 신설
• 주차장 설치완화 변경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지정으로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필지의 주차장설치완화

•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옥상녹화	-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	• '서울시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3의2」 (2016.7.28)을 적용할 것을 권장	
건축물외관	-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빗물이용시설	-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조명	-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구의1특별계획구역	구의동 246-15일대	3,887	감)3,887	-	

-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폐지	구의1특별계획구역	구의동 246-15일대	3,887	•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폐지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자양12특별계획가능구역	자양동 216-4일대	-	증)7,331.4	7,331.4	

-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자양12특별계획가능구역	자양동 216-4일대	7,331.4	• 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일부 통합개발 요청에 따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

■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자양12특별계획가능구역(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 자양동 216-6번지 일대	
면 적			• 7,331.4㎡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 221% 이하	
		허용	• 461% 이하	
		상한	• 589% 이하 － 기부채납 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α) · 가중치 :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 :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최고높이		• 100m 이하	
공공시설계획			• 순부담률 : 용도지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면적의 30%이상 설치(공공청사(우편집중국 토지)는 기존 국공유지로 미간주) － 용도지역 상향면적 3,854.8㎡ × 30% = 1,156.4㎡ • 공공시설 설치계획(조성후 기부채납, 지침도 참조) － 아차산로 5m 확폭 － 도로 외의 공공시설은 건축물로 기부채납(환산 시 494.44㎡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설치) • 지하철(구의역)출입구는 건축물 내부로 연결하는 계획 수립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5m • 대상지의 동측으로 건축물의 출입구 계획 시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서측 간선도로(아차산로)와 이면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효력기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의 효력 상실. 단, 주민요청(대상토지 면적의 1/2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년이내에서 연장 가능		

※ 용적률, 공공시설 순부담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추후 변경 후 용도지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6'의 '1-4-4 용적률 적용기준'에 의거 가중평균하여 적용

■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지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위치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동명	지번	필지	계		
R	3,280.1	자양동	216-7	403.3	403.3		
			216-23	369.9	369.9		
			216-24	396.7	856.5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216-6	459.8			
			216-4	290.1	290.1		
			216-3	282.3	561.3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216-2	279.0			
			216-16	266.1	266.1		
			216-15	268.8	532.9	공동개발 (지정)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필지
			216-1	264.1			

•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구분	불허용도	권장용도	비고
일반상업지역(간선부)	불허용도 분류표상A	권장용도 분류표상1	

•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	비고
일반상업지역(간선부)	60%이하	300% / 630% / 80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D3 유형 적용	70m이하	

•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3m	결정도 참조

• 대지 내 공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3m	결정도 참조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아차산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 참조
공동주차출입구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아차산로변 전면부 지상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씬지형공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4.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신설, 폐지 제외)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2) 자양9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자양9 존치관리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48,952.0	감)1,127.3	47,824.7	

○ 정비구역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8,952.0	감)1,127.3	47,824.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445.0	감)1,127.3	12,317.7	25.8%	-
	도 로	5,279.0	-	5,279.0	11.1%	
	공원	6,787.0	감)1,127.3	5,659.7	11.8%	
	광장	1,379.0	-	1,379.0	2.9%	-
택 지 (획 지)	소 계	35,507.0	-	35,507.0	74.2%	-
	획 지	35,507.0	-	35,507.0	74.2%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48,952.0	감)1,127.3	47,824.7	

■ 자양9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면 적		• 48,952.0㎡	
용도지역		• 1,2종일반주거지역 ※ 향후 축진구역 설정 시 준주거지역으로 재검토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구역내 (연장 51m, 면적 612㎡)	
공공시설계획		• 순수기부채납비율 : 27.5% 이상 ※ 재정비축진구역 지정 전 기초성하여 기부채납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향후 재정비축진구역 지정 후 용적률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주된 용도	• 업무	재정비축진구역 으로 지정변경 시 적용사항이며,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최대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높이	
건축물 용도별 지상연면적		• 향후 재정비축진구역 지정 시 재검토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향후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획지 내 지정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기존 건축물 관리 운용	• 존치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8장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를 따른다.	
	도시계획시설	• 향후 축진구역설정 시 정비계획(안)에서 제시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 자양9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면 적		• 47,824.7㎡	
용도지역		• 1,2종일반주거지역 ※ 향후 촉진구역 설정 시 준주거지역으로 재검토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구역내 (연장 51m, 면적 612㎡)	
공공시설계획		• 순수기부채납비율 : 25.8% 이상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전 기초성하여 기부채납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향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후 용적률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주된 용도	• 업무	재정비촉진구역 으로 지정변경 시 적용사항이며,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최대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높이	
건축물 용도별 지상연면적		• 향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시 재검토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향후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획지 내 지정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기존 건축물 관리 운용	• 존치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12장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를 따른다.	
	도시계획시설	• 향후 촉진구역 설정 시 정비계획(안)에서 제시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 촉진구역 설정 시 종로3-470호선에 대한 폭원 및 연장 재검토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44.6	-	385,344.6	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44.6	-	385,344.6	100.0
주거지역	소 계	314,120.6	증)5,844	319,964.6	83.0
	제1종일반주거지역	89,732.0	증)2,728	92,460.0	24.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53.0	-	2,953.0	0.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2,933.0	-	22,933.0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48.5	-	53,348.5	13.8
	준주거지역	145,154.1	증)3,116	148,270.1	38.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1,224.0	감)5,844	65,380.0	17.0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지정일	비고
기정	-	아차산로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교 ~ 잠실교 (자양동219-18 ~ 자양동779-7)	141,600 (4,560)	5,900 (190)	양측12	서고시 164호 (1982.4.22)	-
기정	-	자양로	중심지 미관지구	구의동220 ~ 구의동234 (자양동769-8 ~ 구의동246-15)	24,000 (16,260)	1,000 (동측535 서측820)	양측12	서고시 164호 (1982.4.22)	-
변경	-	아차산로	일반 미관지구	자양동 ~ 구의동 (구의동246-19 ~ 구의동 244-6)	67,200 (16,320)	1,400 (680)	양측12	서고시 164호 (1982.4.22)	-

※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 및 연장

※ 대로3-54호선(아차산로), 대로3-50호선(자양로) 완화차로 폐지에 따른 미관지구 선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77,333.1	증)3,854.8	181,187.9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변경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 일대	48,952.0	감)1,127.3	47,824.7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정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	55,151	-	55,151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변경)

•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377)	성동교 (자양동219-18)	자양동 강변 (자양동680-70)	1972.9.1	아차산로 자양로
기정	대로	3	90	29~38	보조간선 도로	1,650 (310)	모진동 (자양동779-7)	능동 (자양동769-8)	1971.4.7	자양로
변경	대로	3	90	29~38	보조간선 도로	1,650 (310)	모진동 (자양동779-7)	능동 (자양동769-8)		
기정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 도로	1,200 (675)	구의동 (자양동216-26)	광장동 (구의동244-6)	1966.6.21	아차산로
변경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 도로	1,200 (675)	구의동 (자양동216-26)	광장동 (구의동244-6)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 도로	575 (435)	자양동680-72 (자양동680-72)	구의동593-20 (구의동592-39)	서고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1	451	20	집산도로	423	구의동 592-39	자양동 781-1	서고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2	479	18	집산도로	434	자양동 716	구의동 591-29	서고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408	자양동 683-6	자양동 781-4	서고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3	470	12	국지도로	270	자양동 680-86	자양동 680-83	서고 제2009-225호 (2009.6.4)	
변경	중로	3	470	12	국지도로	147	자양동 680-87	자양동 680-83		
기정	소로	2	구의1	8	국지도로	170	자양동 779-2	자양동 779-24	서고 제2009-225호 (2009.6.4)	
폐지	소로	2	구의2	8	국지도로	70	구의동 246-104	구의동 246-25	서고 제2009-225호 (2009.6.4)	
폐지	소로	2	구의3	8	국지도로	70	구의동 246-63	구의동 246-8	서고 제2009-225호 (2009.6.4)	
폐지	소로	2	구의4	8	국지도로	72	구의동 246-3	구의동 246-1	서고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소로	3	구의1	6~8	국지도로	346	자양동 778-18	자양동 777-1	서고 제2009-225호 (2009.6.4)	

※ ()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 대로3-54호선(아차산로), 대로3-90호선(자양로) 완화차로 폐지에 따른 선형 변경

- 주차장(변경없음)
- 철도(변경없음)

■ 공간시설

- 광장(변경없음)
- 공원(변경)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	소공원	자양동 776-5 일대	862	-	862	서고제2009-225호 (2009.6.4)	-
변경	②	-	소공원	자양동 216-1 일대	1,772	감)1,516	256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③	-	소공원	자양동 781-3 일대	743	-	743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④	-	문화공원	자양동 680-81 일대	3,524	-	3,524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⑤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 일대	3,351	-	3,351	서고제2009-225호 (2009.6.4)	공원지하에 열공급 설비(3,000㎡) 중복결정

-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공공공지	구의동 246-16 일대	383	감)383	-	서고제2009-225호 (2009.6.4)	-
폐지	③	공공공지	구의동 246-10 일대	230	감)230	-	서고제2009-225호 (2009.6.4)	-
폐지	④	공공공지	구의동 243-6 일대	426	감)426	-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⑤	공공공지	구의동 244-4 일대	467	-	467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⑥	공공공지	자양동 776-25 일대	73	-	73	서고제2012-143호 (2012.5.31)	-

■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	자양동 680-65 일대	45,333	-	45,333	서고 제1985-847호 (1985.12.13)	우편집중국
	②	공공청사		자양동 680-81 일대	15,557	-	15,557		우정사업 정보센터
변경	③	공공청사	-	자양동 777 일대	14,318	증)93	14,411	-	광진구청

※ 자양로 원화차로 폐지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면적 확장

- 공공청사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 문화시설(변경없음)

바. 시민의 공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 02-450-769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144,507.7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구 분		주택수 (호)				인구수 (인)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촉 진 구 역	합 계	3,552	감) 6	3,546	100.0%	9,385	감) 16	9,369	100.0%	-
	임 대	840	증) 1	841	23.7%	2,219	증) 3	2,222	23.7%	-
	분양	소계	감) 7	2,705	76.3%	7,166	감) 19	7,147	76.3%	-
		60㎡ 이하	감) 1	996	28.1%	2,636	감) 4	2,632	28.2%	-
		60~85㎡ 이하	감) 9	1,615	45.5%	4,289	감) 22	4,267	45.5%	-
		85㎡ 초과	증) 3	94	2.7%	241	증) 7	248	2.6%	-

○ 변경사유 :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건설 세대수 변경사항 반영

-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 5) 교통계획 (변경없음)
 - 6) 경관계획 (변경없음)
 -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8)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 가)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주된용도	용적률 (%)	건폐율 (%)	층수(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기정	합 계	144,507.7	—	95,046.7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2F(4)/120m	50미만		
	1-3	8,407.0	—	5,767.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120m	50미만		
	1-4	58,340.9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8F(5)/130m	50미만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38F(5)/130m	50미만		
	1-13	27,060.0	—	17,229.8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99m	70미만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80이하	55이하	24F(4)/80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를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를 이상				구 분	전 용 면 적	세 대 수 (세 대)	비 율 (%)	비 고	
							합계		3,552	100.0	—	
							임대		840	23.6	—	
							분양	60㎡ 이하		997	28.1	—
								60 ~ 85㎡ 이하		1,624	45.7	—
			85㎡ 초과		91	2.6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 (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 추가 가능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는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로 공급 가능함)

나)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주된용도	용적률 (%)	건폐율 (%)	층수(지하)/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변경	합 계	144,507.7	-	95,046.7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2F(4)/120m	50미만
	1-3	8,407.0	-	5,767.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120m	50미만
	1-4	58,340.9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8F(5)/130m	50미만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38F(5)/130m	50미만
	1-13	27,060.0	-	17,229.8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99m	70미만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80이하	55이하	24F(4)/80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구 분	전 용 면 적	세 대 수 (세 대)	비 율 (%)	비 고
						합계		3,546 (갑 6)	100.0	-
						임대		841 (증 1)	23.7	-
						분양	60㎡ 이하	996 (갑 1)	28.1	-
							60 ~ 85㎡ 이하	1,615 (갑 9)	45.5	-
							85㎡ 초과	94 (증 3)	2.7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

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총수는 최고총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 (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 추가 가능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는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로 공급 가능함)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없음)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구 분	구 역 명	계획세대수 (세대)	분양주택 (세대)	임대주택 (세대)	비 고
기 정	합계	3,552	2,712	840	
변 경		3,546	2,705	841	
기 정	1-2	192	136	56	-
기 정	1-3	185	185	-	-
기 정	1-4	1,221	1,021	200	-
기 정	1-11	715	401	314	-
기 정	1-12	413	378	35	-
기 정	1-13	642	407	235	-
변 경		636	400	236	
기 정	1-14	184	184	-	-

○ 변경사유 :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건립 세대수 변경사항 반영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변경없음)

마.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결정 조서

- 가)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나)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다)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라)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마)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바)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계획 세대수 (세대)
기정	1-13	27,060.0	-	17,229.8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59이하	398이하	33F(4) /99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 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	비 율 (%)	비 고
						합계		642	100.0	
						임대	60㎡ 이하	235	36.6	
						분양	60㎡ 이하	68	10.6	
							60~85㎡ 이하	339	52.8	
							85㎡ 초과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변경	1-13	27,060.0	-	17,229.8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59이하	398이하	33F(4) /99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	비 율 (%)	비 고
						합계		636	100.0	
						임대	60㎡ 이하	236	37.1	
						분양	60㎡ 이하	67	10.5	
							60~85㎡ 이하	330	51.9	
							85㎡ 초과	3	0.5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
 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층수 조정
 5.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6.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7.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전체 연면적 20%의 임대주택
 추가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15% / 장기전세주택 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 의견사항(2017. 3. 14.)
 ○ 건축계획에 대한 다음사항을 건축심의시 검토
 - 주차대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임대주택 59형은 49형 및 39형 등으로 세분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탑상형 주동은 계단실 통풍을 개선할 것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기 정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증) 310	-	
변 경				증) 304	-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건 립 위 치	부지 면적(㎡)	동수 (동)	연면적 (㎡)	세대수 (세대)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기정	영등포동5가 32-8 일대 (영등포1-13구역 내)	-	-	-	235	40㎡ 이상	
변경				-	236	40㎡ 이상	

※ 주거연면적비를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126세대 / 장기전세주택 42세대)

사)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사. 광고물 관리 계획 (변경없음)

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자.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타.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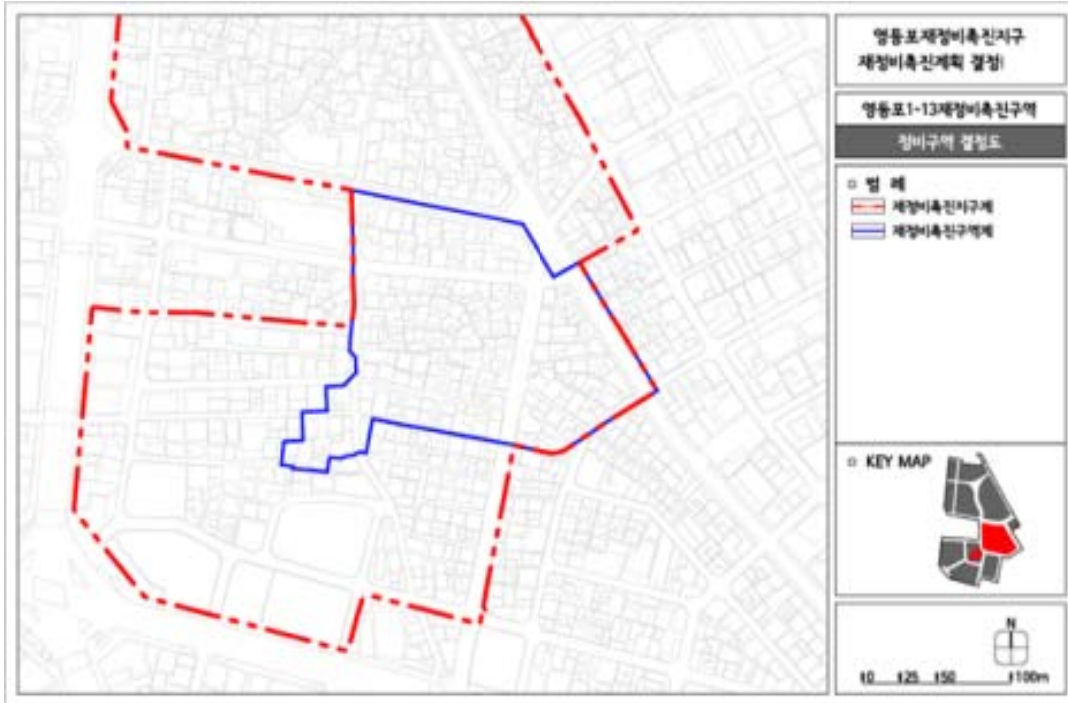
파.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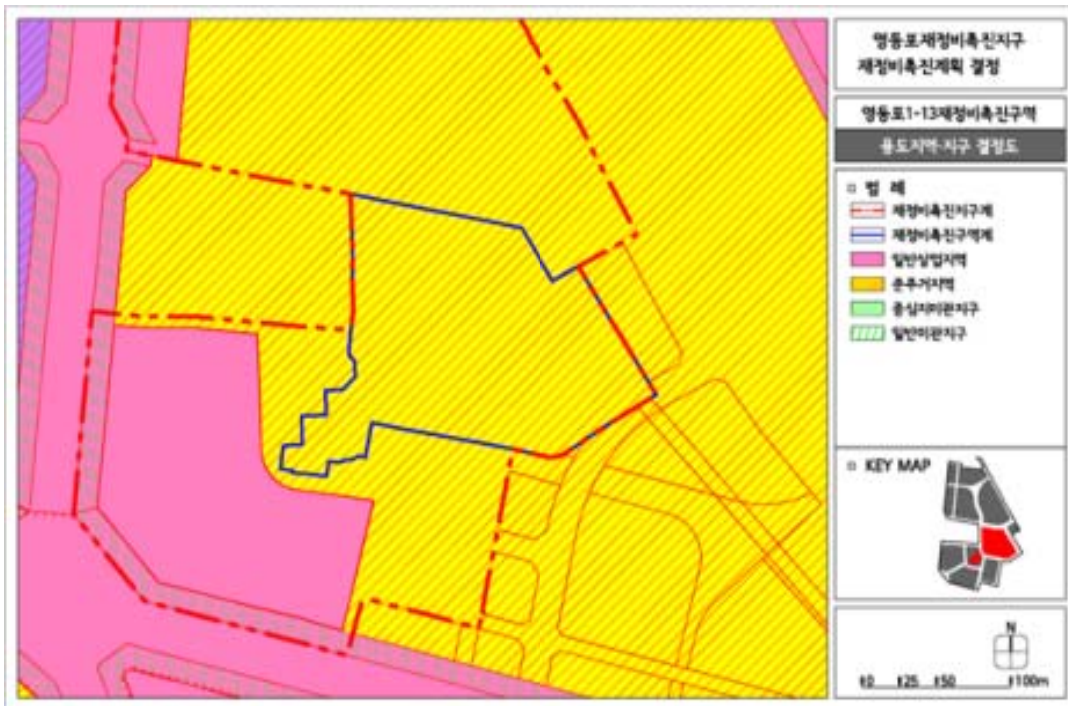
3.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4)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2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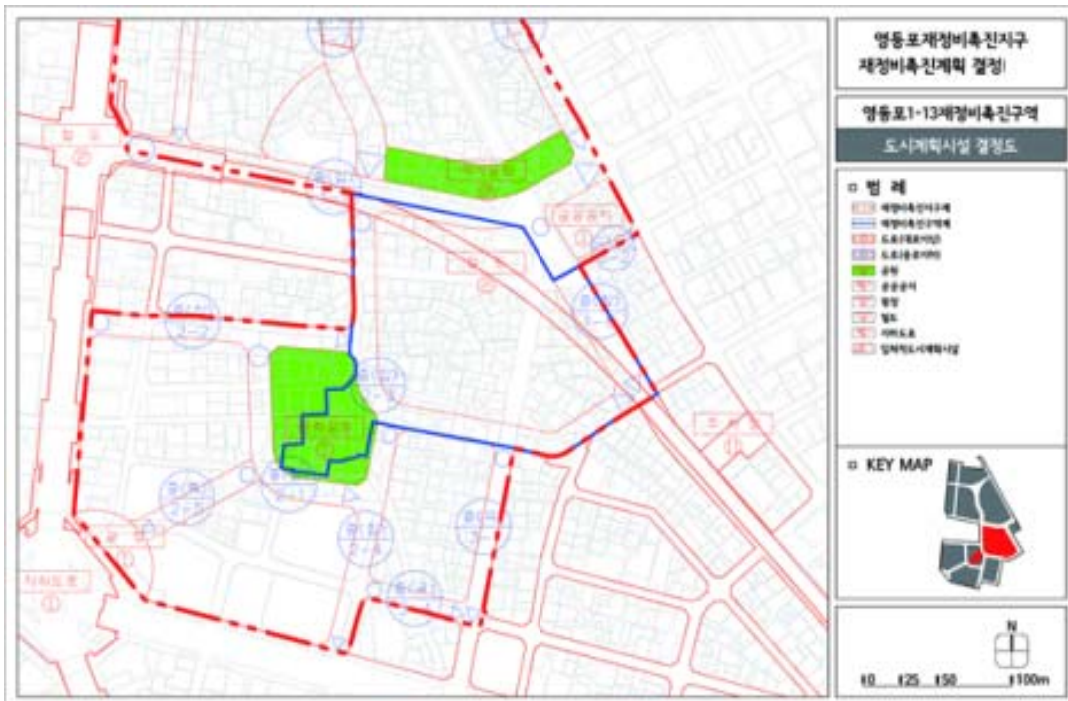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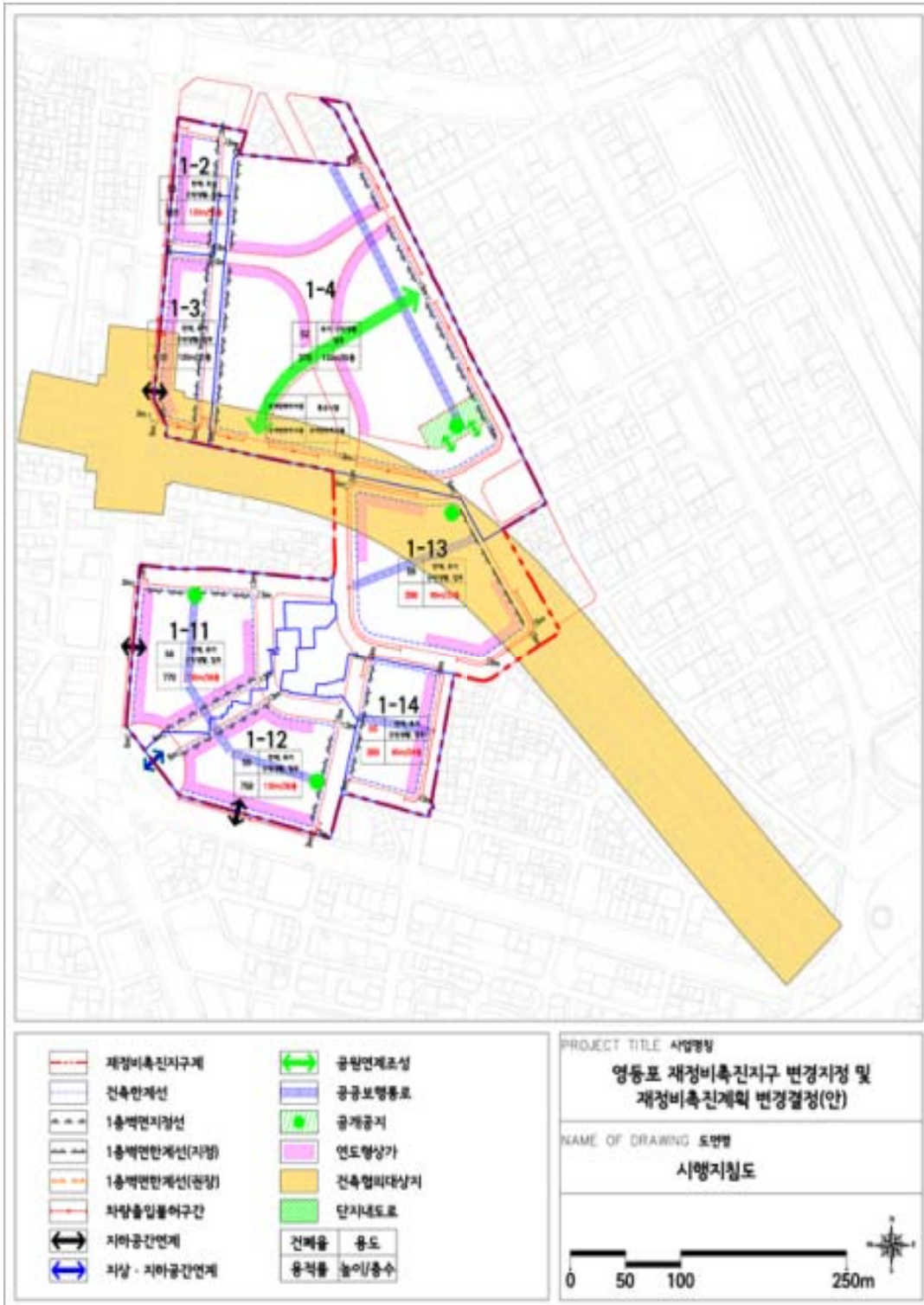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시행지침도 (변경없음)



■ 영등포1-13구역 건축배치도 (기정)



■ 영등포1-3구역 건축배치도 (변경)



■ 전체 건축배치계획도 (기정)



■ 전체 건축배치계획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 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2010.4.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2013.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호(2014.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1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2016.08.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준연도	목표연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1,469,460.7	-	1,469,460.7	2006	2017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9,460.7	—	1,469,460.7	10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503,415.2	증) 483.1	503,898.3	34.29
	공공청사	4,743.2	—	4,743.2	0.32
	문화/복지	9,869.5	—	9,869.5	0.67
	학교시설1)	105,619.2	증) 544.0	106,163.2	7.22
	공원녹지1)	142,750.1	감) 123.0	142,627.1	9.71
	공공공지	701.2	—	701.2	0.05
	주차장	676.3	—	676.3	0.05
	도 로2)	239,022.7	증) 62.14)	239,084.8	16.27
	철 도	33.0	—	33.0	0.0
주거 용지	소 계	773,327.4	감) 486.1	772,841.3	52.59
	공동주택1)	768,990.4	감) 486.1	768,504.3	52.29
	주상복합	4,337.0	—	4,337.0	0.30
상업/업무		135,739.3	—	135,739.3	9.24
기타 종교시설 등3)		56,978.8	증) 3.0	56,981.8	3.88

- 1)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학교구역(대영초·고교)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
- 2)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학교구역(대영초·고교)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조정, 면적변경 반영(중로3-71호선),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일부구간 선형조정 및 도로폭원 확폭(소로2-7호선)
- 3) 교통환경 개선(소로2-7호선)을 위한 일부구간 선형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면적변경
- 4)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나.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지역	개별주택	2,008	—	2,008	5,421	—	5,421	존치지역 등
	공동주택	2,621	—	2,621	7,076	—	7,076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 계	16,105	—	16,105	43,484	—	43,484	
	40㎡이하	1,148	—	1,148	3,099	—	3,099	
	40㎡ ~ 60㎡	5,962	—	5,962	16,098	—	16,098	
	60㎡ ~ 85㎡	6,657	—	6,657	17,974	—	17,974	
	85㎡ 초과	2,338	—	2,338	6,313	—	6,313	
계		20,734	—	20,734	55,981	—	55,981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	115,488.7	증)544.0	116,032.7	
교육 시설	소 계	7	105,619.2	증)544.0	106,163.2	
	초등학교	4	95,620.0	증)544.0	96,164.0	기설치 (대영중·고 면적 포함)
	중학교	2	9,999.2	－	9,999.2	1개소 신설, 1개소 기설치 (대영중은 대영초에 포함)
	고등학교	1	－	－	－	기설치 (대영고는 대영초에 포함)
문화 · 복지 시설	소 계	7	9,869.5	－	9,869.5	
	문화시설	2	2,235.6	－	2,235.6	신설
	도서관	1	2,300.3	－	2,300.3	신설 (구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4	5,333.6	－	5,333.6	2개소 신설

※ 대영초·고교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학교선형 조정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녹지 시설	소 계	62	140,944.4	감)123.0	140,821.4	
	근린공원	5	65,685.2	-	65,685.2	기 설치2개소, 3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3	7,078.0	-	7,078.0	기 설치 1개소, 2개소 신설
	소공원	18	31,359.4	감)127.7	31,231.7	18개소 신설
	녹 지	36	36,821.8	증)4.7	36,826.5	36개소 신설

※ 대영초·고교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학교선형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마. 교통계획 (변경없음)

바. 경관계획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합 계(16개구역)		892,542.7		기정
합 계(16개구역)		891,985.7		변경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일대	62,696.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7.3.30)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5-69일대	61,971.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4.12.11)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45-40일대	38,502.9	주택재개발사업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914-9일대	52,112.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4.12.11)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83-1일대	76,602.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	36,266.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39일대	93,728.6	주택재개발사업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63일대	32,287.3	주택재개발사업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40-16일대	73,698.6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590일대	32,234.0	주택재건축사업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29-94일대	50,759.3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일대	52,716.0	주택재개발사업	기정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일대	52,159.0	주택재개발사업	변경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0-1일대	15,120.0	주택재건축사업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7-50일대	27,844.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76-1일대	105,733.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5.5.21)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4-4일대	80,272.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4.7.3)

아.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1)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2) 신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3)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4) 신길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5) 신길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6)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7)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8) 신길8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9)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10)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변경없음)

11) 신길1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12) 신길1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비율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2,716	감) 557	52,159	100.0
주거지역	소 계	52,716	감) 557	52,159	100.0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515	증) 1 ¹⁾	516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52,201	감) 558 ²⁾	51,643	99.0

1) 구역 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증가(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 증가)

2) 측량오류(11㎡) 및 구역 제척(547㎡)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 558㎡ 감소)되며, 제척되는 토지(547㎡)는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13)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변경없음)

14)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15) 신길1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16) 신길1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자.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역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최고높이(m)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2 / 35	121	해제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18 / 25	91	해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1 / 32	11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18 / 31	109	해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9	94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 / 26	94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7	9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7	91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9	103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50%이하	- / 29	103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2%이하	60%이하	19 / 25	91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 / 29	103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 / 22	8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8	94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2 / 34	118	해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0 / 30	106	해제

※ 신길3, 5, 6, 7, 8, 12, 14구역의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가이드라인' 에 따름)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 분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2,696.0	14,996.0	996.0	6,394.0	-	7,606.0 (12.1%)	해제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971.0	15,101.0	4,056.0	3,698.0	-	7,347.0 (11.9%)	해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	7,723.0	1,070.40	1,313.04	-	5,339.56 (13.9%)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12.0	14,599.0	1,797.0	6,741.0	-	6,061.0 (11.6%)	해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02.0	17,136.4	207.9	1,576.0	-	15,352.5 (20.0%)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10,576.0	1,441.0	3,945.0	-	5,190.0 (14.3%)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6	21,524.0	0.0	3,830.0	4,199.7	13,494.3 (14.4%)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87.3	6,655.3	44.0	909.6	-	5,701.7 (17.7%)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3,698.6	20,308.2	4,348.9	7,110.1	-	8,849.2 (12.0%)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2,234.0	6,129.4	14.0	3,172.0	-	2,943.4 (9.1%)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	10,996.7	1,493.0	2,564.0	-	6,939.7 (13.7%)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716.0	14,727.3	655.19	4,372.41	-	9,699.7 (18.4%)	기정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59.0	14,656.4	644.2	4,273.4	-	9,738.8 (18.7%)	변경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5,120.0	2,569.0	247.0	547.0	-	1,775.0 (11.7%)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4.0	5,002.2	52.0	1,071.0	-	3,879.2 (13.9%)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5,733.0	23,417.0	3,867.0	6,792.0	-	12,758.0 (12.1%)	해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0,272.0	19,006.0	4,731.0	4,585.0	-	9,690.0 (12.1%)	해제
계	892,542.7	210,466.5	25,020.4	58,620.1	4,199.7	122,626.3 (13.7%)	기정
계	891,985.7	210,395.6	25,020.4	58,491.1	4,199.7	122,684.4 (13.8%)	변경

※ 신길12구역에 연접한 대영초 및 대영고교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구역계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면적변경 반영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임대주택수	2,723	-	2,723	

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대 상 지 역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사업구역	2007 ~ 2015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사업구역	2009 ~ 2016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3단계 사업구역	2011	2013.6 이후	2017.12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

※ 단계별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 운용방안은 영등포구에서 수립한 운용기준을 따름(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 내)

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거.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없음)

너.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구역별 정비계획

구 분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2,696.0	47,700.0	190	230	16.28	229.39	22 / 35	해제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971.0	45,565.0	190	230	20.35	229.83	18 / 25	해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	30,779.9	210	300	25이하	251.52이하	21 / 3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12.0	37,513.0	190	230	21.24	229.91	18 / 31	해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02.0	59,073.6	210	300	25이하	265이하	22 / 29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25,690.0	210	300	30.0이하	265.1이하	20 / 26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6	70,569.1	210	300	25이하	253.40이하	22 / 2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87.3	24,914.2	210	300	25이하	255.44이하	22 / 27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3,698.6	51,715.0	210	300	25이하	253.36이하	22 / 29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34.0	26,104.6	210	300	29.46	298.56	- / 29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	39,762.6	190	232	25이하	232이하	19 / 25	

구 분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716.0	35,921.6	210	300	25이하	263.12이하	20 / 29	기정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59.0	35,435.5	210	300	25이하	267이하	20 / 29	변경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120.0	12,551.0	210	250	20.84	248.61	- / 2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4.0	22,841.8	210	300	25이하	256.3이하	22 / 28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5,733.0	79,514.0	190	230	15.85	229.63	22 / 34	해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0,272.0	60,107.0	190	230	15.97	229.82	20 / 30	해제

※ 신길12구역에 연접한 대영초 및 대영고교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측량결과 반영

※ 신길3,5,6,7,8,9,12,14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가이드 라인' 에 따름)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변경없음)

구 분	합계	일반분양(전용면적)				임대주택(전용면적)				비고
		소계	85㎡ 초과	60~85 ㎡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50 ㎡	50~60 ㎡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85	806	292	394	120	179	74	74	31	해제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1	771	280	377	114	170	71	71	28	해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91	644	28	351	265	147	72	59	16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76	637	231	312	94	139	58	58	23	해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46	1,260	107	789	364	286	132	119	35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35	520	163	221	136	115	47	47	21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722	1,533	207	833	493	189	85	76	28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41	522	14	363	145	119	57	50	12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464	1,199	24	425	750	265	124	113	28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74	796	-	176	620	78	-	78	-	

구 분	합계	일반분양(전용면적)				임대주택(전용면적)				비고
		소계	85㎡ 초과	60~85 ㎡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50 ㎡	50~60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9	777	17	535	225	172	82	72	18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08	824	5	415	404	184	84	76	24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66	217	104	87	26	49	-	-	49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2	501	-	240	261	111	45	48	18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649	1,352	493	660	199	297	124	124	49	해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246	1,023	373	499	151	223	93	93	37	해제
합계	16,105	13,382	2,338	6,677	4,367	2,723	1,148	1,158	417	
비율	100.0	83.1	14.5	41.3	27.2	16.9	7.1	7.2	2.6	

3) 정비계획

- 가)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라)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마)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바)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사)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아)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자)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차)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카)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52,716.0	감) 557.0	52,159.0	-

※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학교구역(대영초·고교) 변경에 따른 구역계 조정 및 측량결과 반영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2,716.0	감) 557.0	52,159.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1,837.3	감) 70.9	11,766.4	22.6	-
	도 로	5,754.5	증) 52.1	5,806.6	11.1	무상귀속
	공 원	2,906.8	감) 127.7	2,779.1	5.4	
	녹 지	3,113.1	증) 4.7	3,117.8	6.0	
	공공공지	62.9	-	62.9	0.1	
택 지 (획 지)	소 계	40,878.7	감) 486.1	40,392.6	77.4	-
	12-1	35,921.6	감) 486.1	35,435.5	67.9	공동주택
	12-2	2,067.1	-	2,067.1	4.0	종교시설
	12-3	2,890.0	-	2,890.0	5.5	사회복지시설 (무상귀속)

※ 신길12구역 내 포함된 대영고교 학교시설(변전실) 이전을 위한 공간확보 및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 변경

※ 제척되는 부지는 학교용지(대영초·고교) 및 기타종교시설로 편입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14 (250)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7-268)	신길동 335-1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63	12~ 20	집산 도로	268 (20)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신길동 335-24)	일반 도로	-	서고683 (87.9.24)	-
기정	중로	3	71	12	집산 도로	471 (275)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39)	신길동 336-2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
변경	중로	3	71	12	집산 도로	472 (276)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39)	신길동 336-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321 (35)	신길동 253-318 (신길동 142-18)	신길동 337-255 (신길동 337-23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7	8	집산 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
변경	소로	2	7	8~ 10	집산 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	-	-

※ 연장 및 위치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71호선	중로 3-71호선	• 도로선형 조정 • 도로연장 조정 - L= 471(275)m → 472(276)m	• 대영고교내 학교시설(변전실) 이전을 위한 공간 확보 및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선형조정 •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소로 2-7호선	소로 2-7호선	• 도로폭 조정 - B= 8m → 8m ~ 10m	•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조정

②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신길 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신길동 425-31)	19,503.9 (255.9)	-	19,503.9 (255.9)	건고258 (82.7.12)	-
변경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650.9	감)127.7	2,523.2	서고445 (07.11.29)	-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	소공원	• 공원면적 감소 - 면적 : 2,650.9㎡ → 2,523.2㎡(감 127.7㎡)	•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학교선형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선형 및 면적조정

③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9 일대	282.7	증)15.4	298.1	서고445 (07.11.29)	-
변경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60.2	감)34.3	1,425.9	서고445 (07.11.29)	-
변경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787.6	감)15.9	771.7	서고445 (07.11.29)	-
변경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582.6	증)39.5	622.1	서고445 (07.11.29)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6	연결녹지	• 녹지면적 증가 - 면적 : 282.7㎡ → 298.1㎡(증 15.4㎡)	•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도로선형 조정 및 녹지폭원 확보(10m)에 따른 면적증가
27	연결녹지	• 녹지면적 감소 - 면적 : 1,460.2㎡ → 1,425.9㎡(감 34.3㎡)	•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토지이용계 획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28	연결녹지	• 녹지면적 감소 - 면적 : 787.6㎡ → 771.7㎡(감 15.9㎡)	•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토지이용계 획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29	연결녹지	• 녹지면적 증가 - 면적 : 582.6㎡ → 622.1㎡(증 39.5㎡)	•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토지이용계 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④ 공공공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

⑤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380 이상	-	380 이상	법적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함
	주민공동시설		1,500 이상	-	1,500 이상	
	문 고		200 이상	-	200 이상	
	보육시설		250 이상	-	250 이상	
	경로당		200 이상	-	200 이상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길12 재정비촉진구역	52,716.0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413	-	-	413	-	기정
신길12 재정비촉진구역	52,159.0 (감 557.0)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413	-	-	413	-	변경

※ 대영초교, 대영고교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구역계 조정 및 측량결과 반영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1)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정비계획 용적률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신길12 재정비 촉진구역	52,716.0	12-1	35,921.6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94,517.57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63.12 이하	20/29		
			12-2	2,067.1	영등포구 신길동 337-312번지 일대	4,134.2 이하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12-3	2,890.0	영등포구 신길동 339-36번지 일대	5,780 이하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임 대(전용면적)			
					소계	85㎡ 초과	60~85㎡	60㎡이하	소계	40㎡이하	40~50㎡	50~60㎡
			세대수	1,008	824	5	395	424	184	84	76	24
			비율	100.00	81.75	0.50	39.19	42.06	18.25	8.33	7.54	2.38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용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 ~ 50㎡이하		전용면적 50 ~ 60㎡이하			
			배분비	40 ~ 50%			40 ~ 50%		10 ~ 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17%이상 확보									
변경	신길12 재정비 촉진구역	52,172.9	12-1	35,435.5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94,517.57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67이하 (증3.88)	20/29		
			12-2	2,067.1	영등포구 신길동 337-312번지 일대	4,134.20이하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12-3	2,890.0	영등포구 신길동 339-36번지 일대	5,780이하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임 대(전용면적)			
					소계	85㎡ 초과	60~85㎡	60㎡이하	소계	40㎡이하	40~50㎡	50~60㎡
			세대수	1,008	824	5	395	424	184	84	76	24
			비율	100.00	81.75	0.50	39.19	42.06	18.25	8.33	7.54	2.38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용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 ~ 50㎡이하		전용면적 50 ~ 60㎡이하			
			배분비	40 ~ 50%			40 ~ 50%		10 ~ 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17%이상 확보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	-	-

(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구분	위 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12	40,878.7	감) 486.1	40,392.6	12-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35,921.6	감486.1	35,435.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766-3번지 일대	2,067.1	-	2,067.1	종교시설
				12-3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8번지 일대	2,890.0	-	2,890.0	사회복지시설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	-	-	12,412.87 이상	184세대	40㎡이하, 40~50㎡, 50㎡~60㎡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 기준용적률 20%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17% 이상 확보

※ 임대주택 평형배분 계획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 ~ 50㎡이하	전용면적 50 ~ 60㎡이하
배분비	40 ~ 50%	40 ~ 50%	10 ~ 20%

파)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하)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거)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너)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69,404.6	－	1,469,404.6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21,284.6	－	1,421,284.6	96.7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788.5	－	33,788.5	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2,752.0	증)547.0	223,299.0	15.2
		제2종일반주거지역	943,735.1	감)547.0	943,188.1	64.2
		제3종일반주거지역	183,732.0	－	183,732.0	12.5
	준주거지역		37,277.0	－	37,277.0	2.5
근린상업지역			48,120.0	－	48,120.0	3.3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면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547.0	당초 신길12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며 변경된 용도지역이 금번 구역계 조정으로 인해 촉진구역에서 제척되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54-7번지 일대	207,845	—	207,845	서고 제2011-258호 (2011.9.8)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53	35	간선 도로	1,550 (795)	문래동 광장 (신길동 363-6)	신길동 광장 (신길동 426)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도림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54	30	간선 도로	3,050 (710)	신길동 대로3-28	구로공단 (신길동 347-65)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가마산길
기정	대로	3	23	25	보조 간선	4,250	신길동 (대1-6)	구로동 (중1-220)	일반 도로		건고542 (71.9.13)	도신로
기정	대로	3	28	25~ 30	주간 선로	2,780 (1,203)	영등포동 (신길동 220-35)	신도림동 (신길동 3599-3)	일반 도로		건고177 (62.12.8)	신길로
기정	대로	3	134	25~ 30	간선 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 도로		서고378 (78.7.31)	신길9재촉구역 내 완화차로 확보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14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5-17	일반 도로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7	신길동 638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398	신길동 222-4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4	15~ 18	집산 도로	110	신길동 335-23	신길동 325-49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32	15	집산 도로	293	신길동 325-78	신길동 296-1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34	13.5 ~15	보조 간선	1,65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건고2493 (66.6.21)	
기정	중로	2	36	15	보조 간선	1,200 (310)	영등포동 634-1 (신길동 289-6)	신길동 321-13	일반 도로		건고177 (62.12.8)	
기정	중로	2	37	15	집산 도로	152	신길동 318-2	신길동 314-38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108	15	집산 도로	572	신길동 136	신길동 223-33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151	15	집산 도로	571	신길동 2099	신길동 3517	일반 도로		서고156 (91.5.31)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46	신길동 205-84	신길동 159-35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44	신길동 1795-31	신길동 209-9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3	12~ 14	집산 도로	280	신길동 2857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78	신길동 281-20	신길동 287-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291	신길동 621-5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112	신길동 625-3	신길동 626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63	12~20	집산도로	268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일반도로		서고683 (87.9.24)	
기정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1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	일반도로		서고105 (83.2.24)	
변경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2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52	12	집산도로	299	신길동 3183-28	신길동 242-14	일반도로		서고156 (91.5.31)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58	신길동 235-7	신길동 4902-5	일반도로		-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131	신길동 255-1	신길동 232-81	일반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221	신길동 287-42	신길동 298-28	일반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1	4	10	집산도로	269	신길동 329-57	신길동 263-5	일반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0	신길동 329-59	신길동 259-6	일반도로		서고56 (06.2.16)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22	신길동 232-65	신길동 254-5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1	44	10	집산도로	95	신길동 260-3	신길동 257-29	일반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5	10	집산도로	134	신길동 233-1	신길동 257-41	일반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7	10	집산도로	107	신길동 254-7	신길동 258-22	일반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8	10	집산도로	62	신길동 254-1	신길동 233-4	일반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65	10	집산도로	28	신길동 252-9	신길동 252-11	일반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356	신길동 209-112	신길동 196-24	일반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321	신길동 253-318	신길동 337-255	일반도로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205	신길동 260-5	신길동 319-6	일반도로		서고56 (06.2.16)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4	8	집산도로	159	신길동 4934-3	신길동 205-17	일반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6	8~10	집산도로	128	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일반도로		서고445 (07.11.2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7	8	집산 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변경	소로	2	7	8~10	집산 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	8	집산 도로	155	신길동 424-3	신길동 340-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9	8	집산 도로	54	신길동 162-19	신길동 155-6	일반 도로		서고7 (72.1.7)	신길1 생활권
기정	소로	2	12	8	집산 도로	180	신길동 237	신길동 242	일반 도로		서고51 (8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30	8	집산 도로	20	신길동 288-2	신길동 287-4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3	8	집산 도로	151	신길동 298-32	신길동 296-4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57	8	집산 도로	272	신길동 115-7	신길동 159-38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69	8~ 9.5	집산 도로	114	신길동 253-69	신길동 329-57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소로	2	106	8	집산 도로	86	신길동 117-1	신길동 117-19	일반 도로			신길1 생활권, 재정비촉진지 구내 기폐지 [서고445(07.1 1.29)]
기정	소로	2	109	8	집산 도로	341	신길동 4934-4	신길동 205-220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153	8	집산 도로	162	신길동 341-1	신길동 400-16	일반 도로		서고331 (90.9.28)	
기정	소로	3	1	4.5~ 6	집산 도로	208	신길동 355-535	신길동 294-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3	2	4	집산 도로	146	신길동 4934-8	신길동 201-6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소로	3	3	6	집산 도로	97	신길동 4903-21	신길동 232-1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3	4	6~8	집산 도로	110	신길동 2862	신길동 3580	일반 도로		서고228 (02.6.18)	
기정	소로	3	5	4	특수 도로	165	신길동 541	신길동 163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445 (07.11.29)	보행자전용 도로반영
기정	소로	3	6	6	집산 도로	36	신길동 347-295	신길동 324-18	일반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3	7	4	집산 도로	170	신길동 342-161	신길동 342-142	일반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3	11	6	집산 도로	35	신길동 4902-16	신길동 4902-14	일반 도로		서고51 (82.2.4)	신길지구 중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38	6	집산 도로	151	신길동 323-2	신길동 325-65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3	46	6	집산 도로	30	신길동 262-54	신길동 236-37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64	6	집산 도로	25	신길동 254-4	신길동 252-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70	6	집산 도로	32	신길동 252-9	신길동 253-126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102	6	집산 도로	47	신길동 197-6	신길동 196-6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3	104	6	집산 도로	40	신길동 160-28	신길동 159-6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 연장 및 위치내()는 축진지구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 대영초고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선형조정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71호선	중로 3-71호선	• 도로선형 조정 • 도로연장 조정 - L= 471m → 472m	• 대영초·고교내 학교시설(변전실) 이전을 위한 공간 확보 및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선형조정 •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소로 2-7호선	소로 2-7호선	• 도로폭 조정 - B= 8m → 8m~10m	•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조정

나) 철 도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7호선)	성동구 화양6일대	온수동 산2-1일대	-	43,760	-	서고77 (93.3.18)	7호선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신풍역)	신길동 3599 일대	6,623.5	-	6,623.5	서고77 (93.3.18)	신풍역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보라매역)	신길동 508 일대	8,317.6	-	8,317.6	서고77 (93.3.18)	보라매역

다) 주 차 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신길동 232-51 일원	2,977	-	2,977	영고51 (03.10.2)	지하 주차장
기정	2	주차장	신길동 236-10	676.3	-	676.3	서고258 (11.9.8)	

라) 공 원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메낙골	근린공원	신길동 895 일대	57,703.6	-	57,703.6	건고138 (77.7.9)	
기정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19,503.9	-	19,503.9	건고258 (82.7.12)	
기정	3	-	근린공원	신길동 223-17 일대	10,259.0	-	10,259.0	서고445 (07.11.29)	
기정	4	-	근린공원	신길동 243-58 일대	14,394.7	-	14,394.7	서고445 (07.11.29)	
기정	5	-	근린공원	신길동 314-33 일대	9,089.0	-	9,089.0	서고445 (07.11.29)	
기정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337-88	1,633.0	-	1,633.0	-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1,981.0	서고445 (07.11.29)	
기정	3	-	어린이 공원	신길동 281-6 일대	3,464.0	-	3,464.0	서고445 (07.11.29)	
기정	1	-	소공원	신길동 202-73 일대	5,901.0	-	5,901.0	서고445 (07.11.29)	
기정	2	-	소공원	신길동 205-63 일대	1,015.0	-	1,015.0	서고445 (07.11.29)	
기정	3	-	소공원	신길동 201-84 일대	513.0	-	513.0	서고445 (07.11.29)	
기정	4	-	소공원	신길동 4903-16 일대	1,188.0	-	1,188.0	서고445 (07.11.29)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79.9	-	1,479.9	서고445 (07.11.29)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636.2	-	1,636.2	서고445 (07.11.29)	
기정	7	-	소공원	신길동 2135 일대	1,024.1	-	1,024.1	서고445 (07.11.29)	
기정	8	-	소공원	신길동 3584 일대	4,046.3	-	4,046.3	서고445 (07.11.29)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9	-	소공원	신길동 3126 일대	2,348.5	-	2,348.5	서고445 (07.11.29)	
기정	10	-	소공원	신길동 3403 일대	2,133.8	-	2,133.8	서고445 (07.11.29)	
기정	11	-	소공원	신길동 3591 일대	527.0	-	527.0	서고445 (07.11.29)	
변경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650.9	감) 127.7	2,523.2	서고445 (07.11.29)	
기정	13	-	소공원	신길동 335-10 일대	1,661.4	-	1,661.4	서고445 (07.11.29)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1.3	-	2,001.3	서고445 (07.11.29)	
기정	15	-	소공원	신길동 285-9 일대	912.0	-	912.0	서고445 (07.11.29)	
기정	16	-	소공원	신길동 279-1 일대	1,279.0	-	1,27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	소공원	신길동 296-65 일대	331.0	-	331.0	서고258 (11.9.8)	
기정	18	-	소공원	신길동 159-35 일대	433.0	-	433.0	서고258 (11.9.8)	
기정	19	-	소공원	신길동 3599 일대	805.0	-	805.0	서고258 (11.9.8)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	소공원	• 공원면적 감소 - 면적 : 2,650.9㎡ → 2,523.2㎡(감 127.7㎡)	•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학교선형 조정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변경으로 선형 및 면적조정

마) 녹 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9-1 일대	1,004.0	-	1,004.0	서고445 (07.11.29)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5-163 일대	1,000.0	-	1,000.0	서고445 (07.11.29)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5-143 일대	803.0	-	803.0	서고445 (07.11.29)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9-31 일대	1,701.0	-	1,701.0	서고445 (07.11.29)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25 일대	614.0	-	614.0	서고445 (07.11.29)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20 일대	568.0	-	568.0	서고445 (07.11.29)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09 일대	726.3	-	726.3	서고445 (07.11.29)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18 일대	709.8	-	709.8	서고445 (07.11.29)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0-6 일대	1,274.3	-	1,274.3	서고445 (07.11.29)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2-9 일대	731.7	-	731.7	서고445 (07.11.29)	
기정	1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4921-1 일대	2,722.0	-	2,722.0	서고445 (07.11.29)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2,597.3	-	2,597.3	서고445 (07.11.29)	
기정	1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66 일대	830.0	-	830.0	서고445 (07.11.29)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1,404.0	-	1,404.0	서고445 (07.11.29)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847.2	-	847.2	서고445 (07.11.29)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335 일대	749.0	-	74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121 일대	1,226.6	-	1,226.6	서고445 (07.11.29)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1 일대	1,621.0	-	1,621.0	서고445 (07.11.29)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88 일대	1,210.7	-	1,210.7	서고445 (07.11.29)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35 일대	314.5	-	314.5	서고445 (07.11.29)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156 일대	811.2	-	811.2	서고445 (07.11.29)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516 일대	1,712.4	-	1,712.4	서고445 (07.11.29)	
기정	2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91 일대	535.0	-	535.0	서고445 (07.11.29)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94 일대	638.0	—	638.0	서고445 (07.11.29)	
기정	2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0-1 일대	1,602.0	—	1,602.0	서고445 (07.11.29)	
변경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 일대	282.7	증)15.4	298.1	서고445 (07.11.29)	
변경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60.2	감)34.3	1,425.9	서고445 (07.11.29)	
변경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787.6	감)15.9	771.7	서고445 (07.11.29)	
변경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582.6	증)39.5	622.1	서고445 (07.11.29)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6 일대	170.7	—	170.7	서고445 (07.11.29)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43 일대	250.0	—	250.0	서고445 (07.11.29)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50.4	—	1,250.4	서고445 (07.11.29)	
기정	3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94 일대	409.0	—	409.0	서고445 (07.11.29)	
기정	3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1-3 일대	1,250.0	—	1,250.0	서고445 (07.11.29)	
기정	3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 일대	664.0	—	664.0	서고445 (07.11.29)	
기정	3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68-3 일대	1,277.0	—	1,277.0	서고445 (07.11.29)	
기정	3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76-44 일대	920.0	—	920.0	서고445 (07.11.29)	
기정	3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20 일대	534.0	—	534.0	서고445 (07.11.29)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6	연결녹지	• 녹지면적 증가 - 면적 : 282.7㎡ → 298.1㎡(증 15.4㎡)	•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도로선형 조정 및 녹지폭원 확보(10m)에 따른 면적증가
27	연결녹지	• 녹지면적 감소 - 면적 : 1,460.2㎡ → 1,425.9㎡(감 34.3㎡)	•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 경에 따른 면적 감소
28	연결녹지	• 녹지면적 감소 - 면적 : 787.6㎡ → 771.7㎡(감 15.9㎡)	•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 경에 따른 면적 감소
29	연결녹지	• 녹지면적 증가 - 면적 : 582.6㎡ → 622.1㎡(증 39.5㎡)	•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 경에 따른 면적 증가

바)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공지	신길동 253-312 일대	153.0	-	153.0	-	신길5 주택건설사업
기정	14	공공공지	신길동 201-65	37.0	-	37.0	서고445 (07.11.29)	
기정	15	공공공지	신길동 202-28	382.0	-	382.0	서고445 (07.11.29)	
기정	16	공공공지	신길동 567 일대	269.0	-	26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사) 시 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5-9	2,580.0	-	2,580.0	서고370 (83.7.20)	신영 사러가
기정	2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9-4외 6	781.0	-	781.0	서고5 (83.1.7)	신동

아)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신길동 253-251	2,980.0	-	2,980.0	서고127 (97.11.10)	대림 (변전시설)

자)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	신길동 223-7 일대	1,444.0	-	1,444.0	서고445 (07.11.29)	신길4 동주민센터
기정	2	공공청사	-	신길동 302-5 일대	1,561.0	-	1,561.0	서고445 (07.11.29)	신길3 동주민센터
기정	3	공공청사	-	신길동 232-79 일대	163.0	-	163.0	서고445 (07.11.29)	파출소
기정	4	공공청사	-	신길동 340-4 일대	118.0	-	118.0	서고445 (07.11.29)	파출소
기정	5	공공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57.2	-	157.2	서고445 (07.11.29)	파출소

차) 학 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신길4동 210	21,940.0	-	21,940.0	서고373 (78.7.27)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22,273.0	-	22,273.0	서교위76 (88.12.21)	
변경	3	학교	초등학교	신길5동 341-1	32,344.0	증)544.0	32,888.0	서고683 (87.9.24)	
	4	학교	중학교	신길5동 342-49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5	학교	고등학교	신길5동 342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6 (85.7.10)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신길3동 285-1	19,063.0	-	19,063.0	서교위76 (88.12.21)	
기정	7	학교	중학교	신길동 2064 일대	9,999.2	-	9,999.2	서고445 (07.11.29)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초등학교	- 학교면적 증가 - 면적 : 32,344.0㎡ → 32,888.0㎡ (증 544.0㎡)	대영교내 학교시설(변전실) 이전을 위한 공간확보 및 대영초·대영고교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학교시설 정형화에 따른 면적 증가
4	중학교		
5	고등학교		

※ 학교시설변경(대영초·고교)을 위해 구역에서 제척되는 학교부지(544㎡)는 신길12조합에서 조성하여 학교에 제공

카) 문화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문화시설	-	신길동 158-20 일대	1,208.0	-	1,208.0	서고445 (07.11.29)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 일대	1,027.6	-	1,027.6	서고445 (07.11.29)	

타) 도 서 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신길동 252-11 일대	2,300.3	-	2,300.3	서고445 (07.11.29)	구립 도서관

파)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32-51 일원	873.0	-	873.0	영고51 (03.10.2)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24-24 일대	1,181.0	-	1,181.0	서고445 (07.11.29)	

러. 광고물관리계획 (변경없음)

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버. 방재계획 (변경없음)

서.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어. 에너지순환계획 (변경없음)

저.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처. 기타 (변경없음)

3. 신길1, 2, 4, 10, 15, 16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관련사항 및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되는 단독 주택지의 존치계획은 향후 신길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일괄 반영하여 고시 예정

4.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26~352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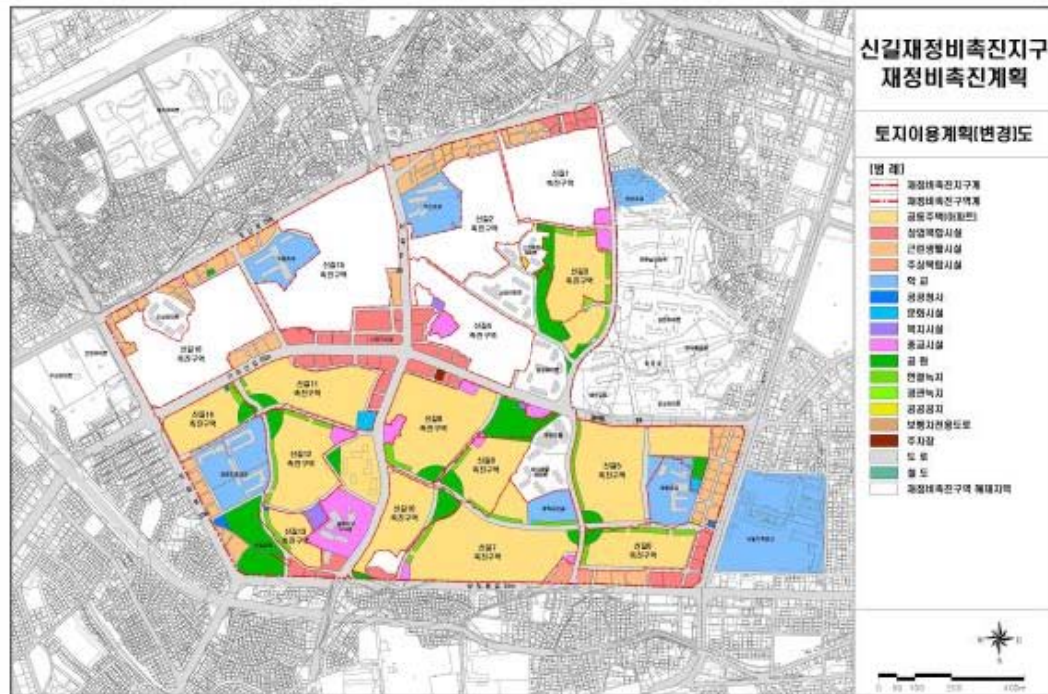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기정)도(신길12)]



[토지이용계획(변경)도(신길12)]



[토지이용계획도]



[지형도면고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0호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해제) 고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해제)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가. 버스전용차로 변경

○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 류	시행일
일반 도로	미동초교~세종로4	새문안로	1.2	중앙버스전용차로	2017.4.26 부터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 류	시행일
일반 도로	서대문R~ 세종로4	새문안로	1.1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2017.4.26 부터

○ 변경사항

구분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 류	운영 개시
당초	일반 도로	한강대교남단~이수교	현충로	2.5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93.8
변경	일반 도로	국립현충원R → 한강대교남단	현충로	1.9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93.8

나.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현황

전 일 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동작대로	사당역 ~ 과천시계	2.1	'93. 2
현 충 로	국립현충원R → 한강대교남단	1.9	'93. 8
노량진로	영등포R ~ 대방역3	1.1	'94. 8
종 로	세종로4 ~ 동대문R	2.8	'94. 5
퇴 계 로	회현역 ~ 광희동4	3.0	'94. 5
한 남 로	한남5 → 한남초교	0.6	'94. 5
망 우 로	청량리R → 시조사3	1.1	'94. 8
강남대로	영동1교남단 ~ 염곡4	1.0	'94.12
남대문로	광고R ~ 송례문교차로	1.5	'95. 4
사 평 로	강남성모병원3 ~ 반포IC	1.3	'95. 4
양 평 로	양평동4 ~ 영등포전화국4	1.5	'95. 4
압구정로	한양APT4 ~ 한남대교남단	2.5	'95. 4
남부순환로	시흥IC ~ 까치고개	7.3	'95. 4
올림픽로	삼성4 ~ 잠실역4	3.3	'95. 5
	축협풍납 ~ 올림픽회관	1.0	'99.12('07.8 전일제 변경)
대 학 로	이화R → 혜화R	1.5	'96. 8
	종로4가 → 이화R	0.6	'03. 7
창경궁로	종로4가 → 혜화R	0.5	'03. 7
관 악 로	봉천4 ~ 송실대3	2.0	'98. 2('07.1 전일제 변경)
영등포로	영등포R ~ 오목교	3.1	'95. 5('07.8 전일제 변경)
영동대로	영동대교남단 ~ 학여울역4	3.5	'95. 5('07.8 전일제 변경)
풍 납 로	천호4 ~ 축협풍납	1.2	'99.12('07.8 전일제 변경)
소 계	22개 구간	44.4	

시 간 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10시, 1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왕십리길	한양공고앞4 ~ 성동교북단	3.4	'93. 8
용 호 로	원효대교남단 ~ 여의교	1.0	'94.8('00.2 시간제 변경)
현 릉 로	염곡4 ~ 내곡IC	2.9	'95.4('00.2 시간제 변경)
등 촌 로	등촌3 ~ 목동역	2.9	'95.4('00.2 시간제 변경)
월 계 로	월계초교입구 ~ 을지병원4	2.0	'95.4('98.9 시간제 변경)
화 곡 로	화곡역4 ~ 양원초교앞	1.5	'96.8('03.2 시간제 변경)
	강서구청입구4 ~ 화곡역4	1.9	'95.5('07.8 시간제 변경)
원 효 로	원효대교북단 ~ 남영역	2.7	'96.8('00.2 시간제 변경)
동 일 로	수락파출소 ~ 망우로	10.2	'96.8('98.9 시간제 변경)
남부순환로	양재역4 ~ 학여울역4	3.7	'96.8('00.2 시간제 변경)
강 서 로	발산역4 ~ 화곡역4	2.1	'96.8('98.9 시간제 변경)
도산대로	신사역 4 ~ 안세병원 4	0.9	'98.2('07.1 구간축소)
종 암 로	종암경찰서 ~ 고대입구3	1.3	'99.12
성 산 로	성산1교 ~ 사천고가	1.5	'94. 5('07.8 시간제 변경)
은 평 로	서부세무서 ~ 녹번역3	0.7	'95. 5('07.8 시간제 변경)
올림픽로	올림픽회관 ~ 잠실4	1.5	'99.12('07.8 시간제 확장)
화 랑 로	월릉교 4 ~ 삼육대학교	4.4	'14.11
소 계	17개 구간	44.6	

24시간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0시~24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천호대로	신답R ~ 아차산역남측3	4.5	'96. 2
	신답철교 ~ 신답R	1.4	'03. 7
	천호4 ~ 상일I.C	5.1	'11. 3
하 정 로	신설동R ← 신답철교	1.7	'03. 7
	용두역(동대문구청역) → 신답철교	0.3	'05. 9
삼 일 로	퇴계로2가 ~ 종로2가	1.0	'04. 5
도 봉 로	의정부시계 ~ 미아4	10.0	'04. 7
미 아 로	미아4 ~ 해화R	4.0	'04. 7
창경궁로	해화R → 원남4	1.3	'04. 7
강남대로	신사역4 ~ 영동1교남단	4.8	'04. 7
수 색 로	고양시계 ~ 사천교	3.9	'04. 7
성 산 로	사천교 ~ 이대후문	2.9	'04. 7
경 인 로	영등포R ~ 오류IC	4.4	'05. 7
망 우 로	망우역4 → 청량리R	4.9	'05. 7
	시조사3 → 망우역4	3.3	'05. 7
	망우역4 ~ 구리시계	2.2	'10. 8
왕 산 로	동대문R ~ 청량리R	3.4	'11.12
시흥대로	대림3 ~ 기아대교 앞	6.5	'05.12
대 방 로	대림아파트 앞(대방동 383) ~ 대림3	2.5	'05.12
마 포 로	마포대교북단 ~ 충정로삼거리	3.4	'06.12
충 정 로	충정로삼거리 ~ 미동초교	0.5	'14.11
한 강 로	한강대교노들섬 ~ 서울역남단	4.1	'06.12
	서울역남단 ~ 서울역북단	0.5	'09. 7
송파대로	잠실대교 남단 ~ 성남시계	6.3	'08. 1
통일·의주로	고양시계 ~ 박석고개	2.4	'08.10
	박석고개~녹번역삼거리	3.3	'10.12
	녹번역3 ~ 서소문4	5.4	'11.12
공 항 로	등촌중학교 ~ 양화교	2.5	'09. 4
	발산역4 ~ 등촌중학교	2.3	'10. 8
	김포공항입구 ~ 공항전화국	1.0	'12.12
	강서구청입구4(북단)	0.1	'15. 4
	발산역4 ~ 공항전화국	1.8	'15. 8
노량진로	대방역3 ~ 한강대교남단	2.8	'09. 5
신반포로	이수교차로 ~ 논현역4	3.5	'09. 6
남대문로	송례문교차로 → 서울역북단	0.5	'09. 7
동작대로	사당역 ~ 이수교차로	2.7	'09.11
신 촌 로	신촌R ~ 아현교회	1.2	'09.12
양 화 로	양화대교 ~ 신촌R	4.0	'09.12
새문안로	미동초교 ~ 세종로4	1.2	'17. 4
소 계	38개 구간	117.6	

기 타 구 간 (중앙버스전용차로-경부고속도로)

□ 운영시간

○ 평일, 토요일·공휴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21:00까지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다음날 01:00까지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 서초IC	2.6	'04. 7 : 최초 시행 '08. 7 : 평일 확대 시행 '08.10 : 운영시간 변경 '11. 1 : 운영시간 변경
	서초IC ~ 한남대교 남단	4.2	'08. 7 : 최초 시행 '08.10 : 운영시간 변경 '11. 1 : 운영시간 변경
소 계	1개 구간	6.8	

다. 전 체 구 간

구 분	운영구간	거 리(km)
전일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22	44.4
시간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17	44.6
중앙버스전용차로	38	117.6
경부고속도로	1	6.8
합계	78	21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 BRT팀(2133-24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서울역 정거장의 누락된 시설물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 동자동 제2도시환경정비구역 내로 12번 출입구 등 철도시설을 이설하여 주변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코자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폭 (m)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4호선 서울역 정거장)	용산구 동자동 43-53	22	206	5,100	1981.07.30. (서고 287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4호선 서울역 정거장)	용산구 동자동 14-200	22~28	286	8,978		- 현황반영 : 증) 3,347㎡ 12번 출입구 및 환기구, 엘리베이터 이설 면적 : 증) 531.0㎡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	- 연장 : 206m→286m (증 80m) - 면적 : 5,100㎡→8,978㎡ (증 3,878㎡) - 당초 누락된 시설물 등 현황반영 : 3,347㎡ - 12번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부분 면적 : 531.0㎡	- 기 결정된 철도(정거장)중 누락된 시설물 현황 반영을 통한 원활한 시설 유지관리 도모 - 동자동 제2도시환경정비구역 전면 도로 확장에 따른 서울역 12번 출입구 및 환기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설 부분 면적 반영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철도	용산구 동자동 17-19	길이	-	23.00m~30.61m	23.00m~30.61m	-	•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12번 출입구 및 환기구, 엘리베이터 이설 부분 (360.7㎡)
			폭	-	5.32m~9.25m	5.32m~9.25m		
			높이 (해수면기준)	-	15.51m~32.23m	15.51m~32.23m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	• 동자동 제2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철도)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360.7㎡)	• 지하철 서울역 12번 출입구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로 이설함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입체적 결정을 하는 사항임.

3. 지형도면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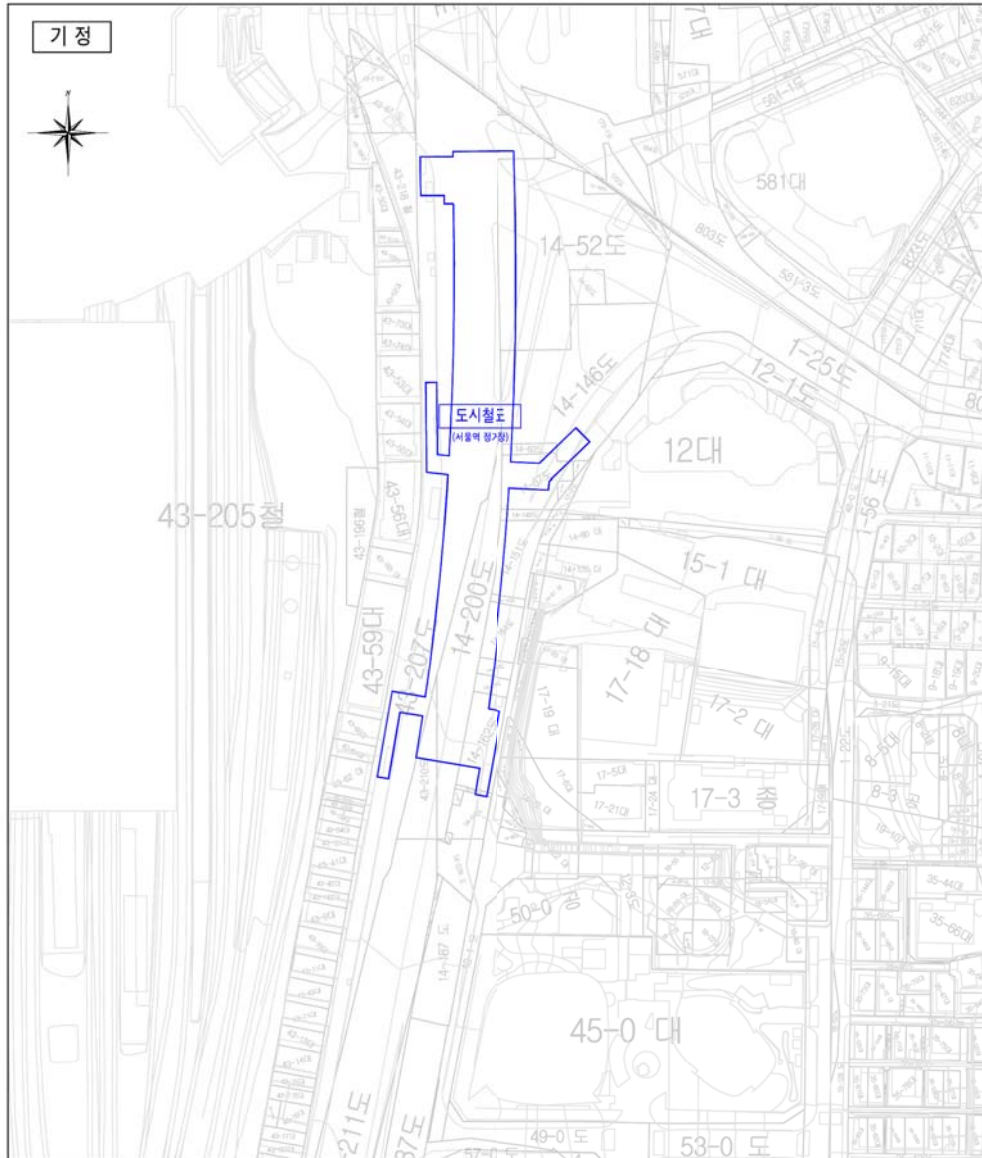
※ 게재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및 지형도면(기정)



범례

기정

S = 1 : 1,000
0 10 25 50m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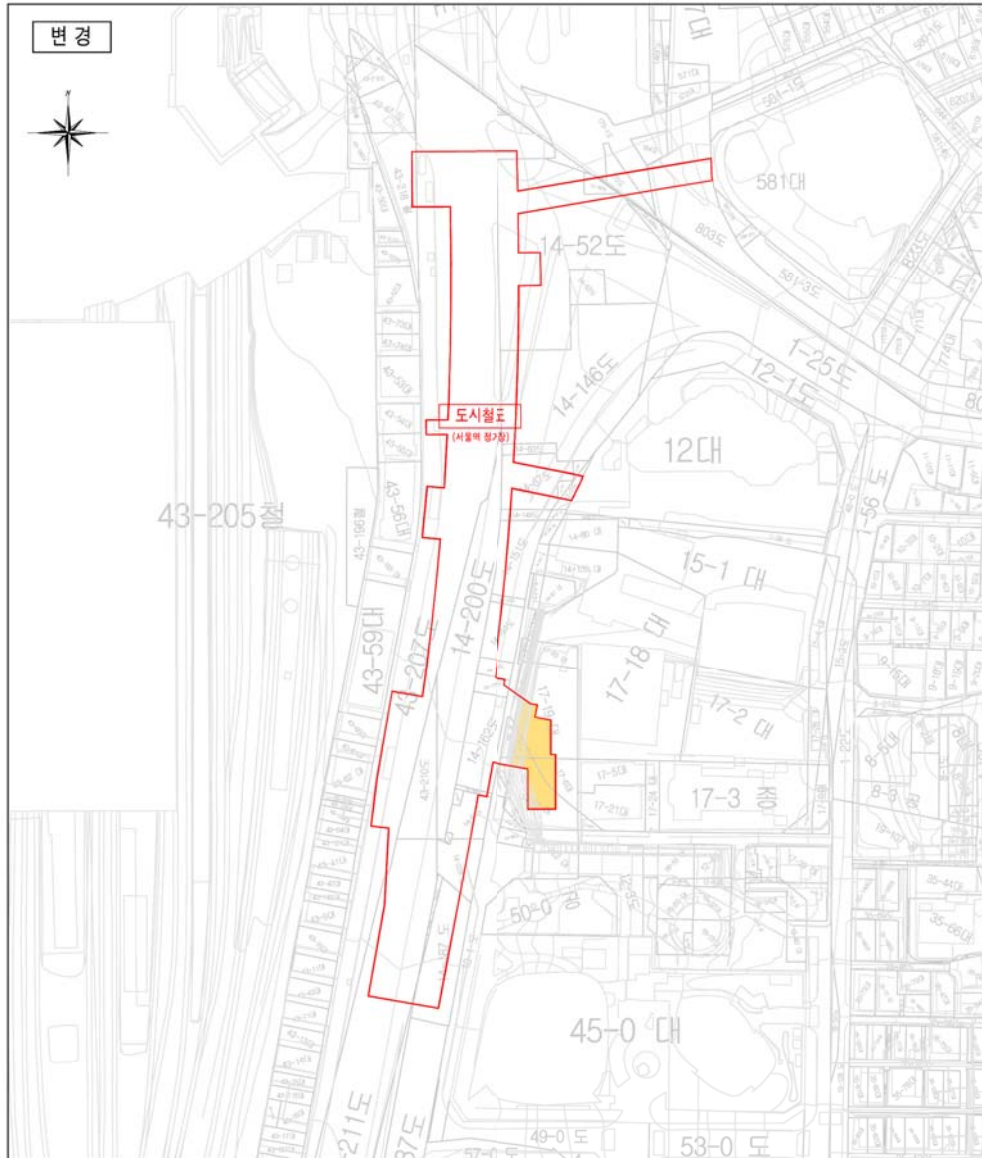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면적(㎡)	최소면적(㎡)	비고
기정	도시철도 (정거장)	도시철도 (4호선 서울역)	종로구 동자동 43-53	22	206	5,100 (1981.7.30)	
변경	도시철도 (정거장)	도시철도 (4호선 서울역)	종로구 동자동 14-200	22-28	286	8,978 (1981.7.30)	- (현행명: 종) 3,347㎡ - 2번 출입구 및 환기구, 엘리베이터 시설: 종) 531.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소면적(㎡)	비고
인입	도시철도 (정거장)	종로구 동자동 17-19	지	지	지	지	지	
			면적	-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높이	-	5.33m ~9.25m	5.33m ~9.25m	5.33m ~9.25m	
			높이 (해수면기준)	-	15.51m ~32.23m	15.51m ~32.23m	15.51m ~32.23m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	작성	작성
소속	작성	작성
지명	작성	작성
주요	작성	작성
성명	작성	작성
확인인	작성	작성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범례



S = 1 : 1,000
0 10 25 50m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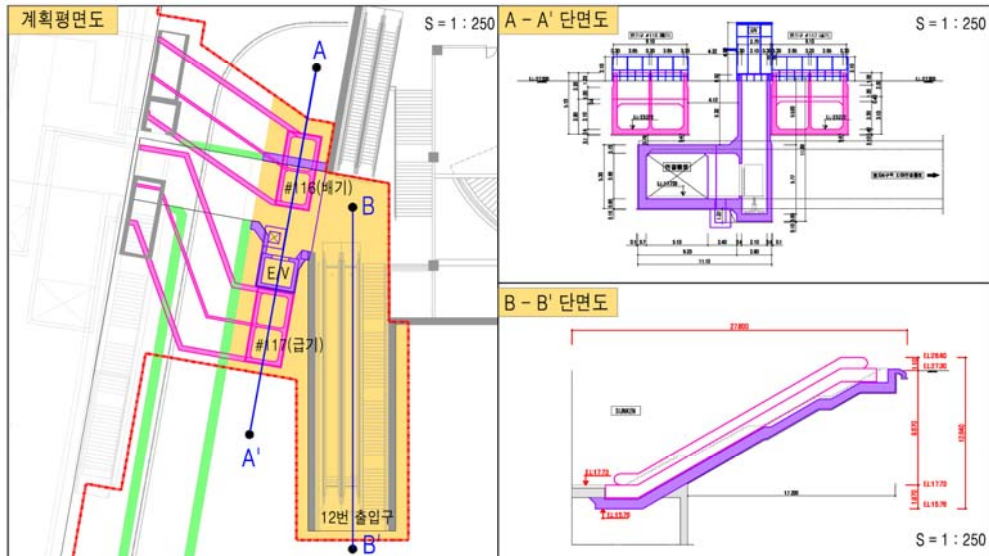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연면적(㎡)	면적(㎡)	제정명일	비고
철도	도시철도	통산구 동차량	43-53	22	205	5,100	제2287호 (1981.7.30)	
변경	도시철도	통산구 동차량	14-200	22-28	286	8,978	제2287호 (1981.7.30)	- (합면적: 중) 3,347㎡ - 2면 통산구 및 통산구, 평리제이리 시설: 중) 531.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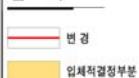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성	변경	변경후	제정명일	비고
철도	도시철도	통산구 동차량	17-19	제	-	23.00m ~30.61m	23.00m ~30.61m	
입체	도시철도	통산구 동차량	17-19	제	-	5.33m ~9.25m	5.33m ~9.25m	
입체	도시철도	통산구 동차량	17-19	제	-	15.51m ~32.23m	15.51m ~32.23m	

구분	입 전 과		결 정 전 과		
	작성 과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통 산 구	통 산 구	통 산 구	시 설 시	시 설 시
지 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직 명	지방시설 주 사 보	지방시설 주 사 보	지방시설 사무 관	지방시설 주 사	지방시설 사무 관
성 명	김홍수	김영국	박상순	장기철	윤본선
확인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및 지형도면(신설)



범례



S = 1 : 1,000
0 10 25 50m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면적(㎡)	최소결정면적	비고
철도	도시철도	종로구 동자동 43-53	22	205	5,100	제2287호 (1981.7.30)
기타	(정거장) (4호선 서울역)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형	변경	변경후	최소결정면적	비고
입체	철도	종로구 동자동 17-19	면적	-	23.00㎡	23.00㎡	5,100	제2287호 (1981.7.30)
			높이	-	5.33m ~ 9.25m	5.33m ~ 9.25m		
			높이	-	15.51m ~ 32.23m	15.51m ~ 32.23m		

구분	입안원자	결정원자
작성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종로구	종로구
직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직명	주사	주사
성명	김홍준	김홍준
확인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2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2호(2010.3.1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1호(2011.1.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45호(2011.10.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4-67(2014.5.29.)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6-128호(2017.01.05)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2017. 2. 21)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나.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2) 면적 : 1,146,098.7㎡

구 분	합 계	1주구	2주구	3주구	4주구	5주구	6주구
변경전	1,120,803.7㎡	150,779.0㎡	141,032.6㎡	144,454.9㎡	204,015.7㎡	231,979.7㎡	248,541.8㎡
변경후	1,146,098.7㎡	151,192.0㎡	142,506.6㎡	144,454.9㎡	227,423.7㎡	231,979.7㎡	248,541.8㎡

※ 변경사유 : 반포아파트지구 1,2,4주구 변경에 따른 아파트지구 면적 변경(증 25,295㎡)

2. 주요 변경내용(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1,2,4주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가. 한강변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한강연결체계 개선(뿔개공원, 지하차도 설치)을 위해 올림픽대로일부 정비구역 편입하여 구역면적 변경

나. 통합재건축을 위해 2주구와4주구사이 도로 일부 축소

다.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폭(신반포로20m → 23.5m) 및 가감속차로 추가조성

라. 주구중심과 주택용지사이 15m도로 신설 및 학교 및 공공청사 출입구 신설

마. 증가세대수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 신설

바. 한강변 활성화를 위해 당초 단지내공원 한강변으로 위치변경 및 공원내 시설 도입

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구반포역 부근에 공공청사 설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 공공서비스 제공

3.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계		1,120,803.7	100.00	1,146,098.7	100.00	증)25,295.0㎡
주거용지	주택용지	800,899.8	71.46	772,948.4	67.44	감)27,951.4㎡
중심시설	지구중심	-	-	-	-	변경 없음
	주구중심	41,103.3	3.67	42,886.5	3.74	증) 1,783.2㎡
	분구중심	-	-	-	-	변경 없음
도시계획 시 설	도로용지	87,930.5	7.84	89,045.8	7.77	증) 1,115.3㎡
	도로 및 공공공지	3,532.2	0.32	3,532.2	0.31	변경 없음
	공원용지	54,090.8	4.82	87,064.7	7.60	증)32,973.9㎡
	녹 지	19,163.0	1.71	12,221.0	1.06	감) 6,942.0㎡
	학교용지	104,563.1	9.33	127,669.1	11.14	증)23,106.0㎡
	공공청사	5,961.0	0.53	7,171.0	0.63	증) 1,210.0㎡
	시 장	3,560.0	0.32	3,560.0	0.31	변경 없음

2) 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반포 아파트지구 (반포지구2)	○ 구역계 변경 : 1,120,803.7㎡ → 1,146,098.7㎡ (증 25,295.0㎡)	○ 한강 연결성 증진 및 다양한 여가·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공원(뚝개공원) 조성구간 및 지하차도 설치구간을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 (증 25,295.0㎡)
	○ 주택용지 변경 : 800,899.8㎡ → 772,948.4㎡ (감 27,951.4㎡)	○ 통합재건축에 따른 계획 변경
	○ 주구중심 변경 : 41,103.3㎡ → 42,886.5㎡ (증 1,783.2㎡)	○ 통합재건축에 따른 계획 변경
	○ 도로용지 변경 : 87,930.5㎡ → 89,045.8㎡ (증 1,115.3㎡)	○ 통합재건축에 따른 일부 도로 폐지 및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하차도 설치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완화차로(가감속차로) 추가조성
	○ 공원용지 변경 : 54,090.8㎡ → 87,064.7㎡ (증 32,973.9㎡)	○ '한강변관리기본계획' 과의 정합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 ○ 한강 연결 보행 동선체계 강화 및 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올림픽대로 뚝개공원 설치
	○ 공공청사 신설 : 5,961.0㎡ → 7,171.0㎡ (증 1,210.0㎡)	○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 104,563.1㎡ → 127,669.1㎡ (증 23,106.0㎡)	○ 증가되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 신설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1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150,779.0	100.00	151,192.0	100.00	증) 413.0㎡
주거 용지	소계	116,309.6	77.14	96,405.0	63.76	감) 19,904.6㎡
	주택용지	116,309.6	77.14	96,405.0	63.76	감) 19,904.6㎡
중심 시설	소계	4,910.0	3.26	3,218.0	2.13	감) 1,692.0㎡
	지구중심	-	-	-	-	변경 없음
	주구중심	4,910.0	3.26	3,218.0	2.13	감) 1,692.0㎡
	분구중심	-	-	-	-	변경 없음
도시 계획 시설	소계	29,559.4	19.60	51,569.0	34.11	증) 22,009.6㎡
	도로용지	7,401.4	4.91	11,515.0	7.62	증) 4,123.6㎡
	도로 및 공공공지	-	-	-	-	변경 없음
	공원용지	10,724.0	7.11	4,847.0	3.21	감) 5,877.0㎡
	녹 지	7,973.0	5.28	7,420.0	4.91	감) 553.0㎡
	학교용지	-	-	23,106.0	15.28	증) 23,106.0㎡
	공공청사	3,461.0	2.30	4,671.0	3.09	증) 1,210.0㎡
	시 장	-	-	-	-	변경 없음

- 2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141,032.6	100.00	142,506.6	100.0	증) 1,474.0㎡
주거 용지	소계	98,639.1	69.94	92,410.0	64.85	감) 6,229.1㎡
	주택용지	98,639.1	69.94	92,410.0	64.85	감) 6,229.1㎡
중심 시설	소계	7,874.0	5.58	16,500.0	11.58	증) 8,626.0㎡
	지구중심	-	-	-	-	변경 없음
	주구중심	7,874.0	5.58	16,500.0	11.58	증) 8,626.0㎡
	분구중심	-	-	-	-	변경 없음
도시 계획 시설	소계	34,519.5	24.48	33,596.6	23.57	감) 922.9㎡
	도로용지	20,389.2	14.46	21,081.6	14.79	증) 692.4㎡
	도로 및 공공공지	-	-	-	-	변경 없음
	공원용지	5,641.3	4.01	4,154.0	2.91	감) 1,487.3㎡
	녹 지	4,929.0	3.49	4,801.0	3.37	감) 128.0㎡
	학교용지	-	-	-	-	변경 없음
	공공청사	-	-	-	-	변경 없음
	시 장	3,560.0	2.52	3,560.0	2.50	변경 없음

- 3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 4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204,015.7	100.00	227,423.7	100.00	증) 23,408.0㎡
주거 용지	소계	144,949.8	71.41	143,132.1	62.94	감) 1,817.7㎡
	주택용지	144,949.8	71.41	143,132.1	62.94	감) 1,817.7㎡
중심 시설	소계	5,150.8	2.50	-	-	감) 5,150.8㎡
	지구중심	-	-	-	-	변경 없음
	주구중심	5,150.8	2.50	-	-	감) 5,150.8㎡
	분구중심	-	-	-	-	변경 없음
도시 계획 시설	소계	53,915.1	25.76	84,291.6	37.06	증) 30,376.5㎡
	도로용지	16,237.9	7.87	12,537.2	5.51	감) 3,700.7㎡
	도로 및 공공공지	3,532.2	1.72	3,532.2	1.55	변경 없음
	공원용지	8,397.0	4.00	48,735.2	21.43	증) 40,338.2㎡
	녹 지	6,261.0	3.04	-	-	감) 6,261.0㎡
	학교용지	19,487.0	9.46	19,487.0	8.57	변경 없음
	공공청사	-	-	-	-	변경 없음
	시 장	-	-	-	-	변경 없음

- 5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 6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다. 건축물 규제계획 : 변경

1) 용도 : 변경 없음

구 분	건 축 범 위	
	기 정	변 경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변경 없음
지구중심	-	변경 없음
주구중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제외), 복지시설(아동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변경 없음
분구중심	-	변경 없음
학교용지	학교시설	변경 없음
공원용지	공원시설	변경 없음
도로용지	도로시설	변경 없음
공용청사	공공청사시설	변경 없음
시 장	기존시설로 관련법령에 의함	변경 없음

※ 주 1) 상기 건축물의 용도규제사항은 해당 용도지역의 관련법규 상 허용하는 용도범위 내에서 적용

2)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3) 금회 변경고시한 반포1,2,4주구는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따름

2) 건축선의 지정 : 변경

- 1주구,2주구,4주구(변경)
 - ▶ 건축한계선
 - 한강변 : 6~10m 이격
 - 그 외 :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m 이격
 - ▶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 신반포로3길 : 10m 이격
- 3주구,5주구,6주구(변경 없음)

3) 건폐율 규제 : 변경 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연 립 주 택	40 % 이하	
저 층 아 파 트	30 % 이하	
중 층 아 파 트	25 % 이하	
고 층 아 파 트	20 % 이하	
기 타 건 축 물	50 % 이하	

※ 주 1) 금회 변경고시한 반포1,2,4주구는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에 따름

4) 주택용지 용적률 : 변경 없음

- 용적률 : 270%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 15% 이내
 - ※ 공공용지 주민부담률에 따라 15% 이내 차등 적용
 - ※ 공공용지 주민부담률 : 기존 주택용지에 대한 신설 공공용지 확보 비율

5) 세대밀도 : 변경 없음

구 분	세대밀도(세대수/10,000㎡)	비 고
연 립 주 택	60 ~ 150	주택용지+중심시설
저 층 아 파 트	70 ~ 250	
중 층 아 파 트	100 ~ 300	
고 층 아 파 트	200 ~ 400	

6) 건축물의 높이 : 변경 없음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연 립 주 택	4층 이하	
저 층 아 파 트	5 내지 7층 이하	
중 층 아 파 트	8 내지 12층 이하	
고 층 아 파 트	13층 이상	
기 타 건 축 물	5층 이하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심의결과에 따름

- 7)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변경 없음
- 주구중심내 건축물은 공동주택과의 거리를 30m 이상 이격 (단,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주택간의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 8) 주택용지안의 녹지 확보 : 변경 없음
- 주택단지면적의 4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식재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 9)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 변경 없음
- 지구전체 건립세대수의 30%이상을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으로 건립 또는
 - 지구전체 건립세대수의 20%이상을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으로 건립하고, 추가로 지구전체 건립세대수의 3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의 평형으로 건립 중 사업계획승인 단위별로 선택

라. 중심시설 건축계획 : 변경

- 1) 주구중심 : 변경
- 주구중심 구분 및 면적

구 분	계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변경전	13	41,103.3	2	4,910	2	7,874	3	10,422.8	
변경후	11	42,886.5	1	3,218	2	16,500	3	10,422.8	
비고	감)2개소	증)1,783.2	감)1개소	감)1,692	-	증)8,626	변경 없음		

구 분	4주구		5주구		6주구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변경전	1	5,150.8	2	6,088.5	3	6,657.2	
변경후	-	-	2	6,088.5	3	6,657.2	
비고	감)1개소	감)5,150.8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변경사유

구 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주구중심	반포아파트지구 1,2,4주구	- 면적 변경 : 17,934.8㎡→19,718.0㎡ 증)1,783.2㎡	- 가로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중심시 설유지 집중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 층수 : 5층 이하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법적용적률(조례)이하

마. 공급처리시설 계획 : 변경 없음

바. 기존건축물 처리계획 : 변경 없음

사.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345,301.0	증)25,295.0	370,596.0	

나.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용도지역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5,301.0	증)25,295.0	370,596.0	100.0	-
주거지역	소계	345,301.0	-	345,301.0	93.2	-
	제1종일반주거지역	39,072.0	증) 1,221.0	40,581.0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증) 23,106.0	23,106.0	6.2	
	제3종일반주거지역	306,229.0	감) 24,327.0	281,614.0	76.0	
녹지지역	소계	-	증) 25,295.0	25,295.0	6.8	
	자연녹지지역	-	증) 25,295.0	25,295.0	6.8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총괄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45,301.0	증)25,295.0	370,596.0	100.0	-
정 비 기 반 시 설	도 로	23,249.7	증) 1,115.3	24,365.0	6.6	-
	공 원	19,909.1	증)32,973.9	52,883.0	14.3	-
	녹 지	19,163.0	감) 6,942.0	12,221.0	3.3	-
	소 계	62,321.0	증)27,148.0	89,469.0	24.2	-
획 지	주택용지	261,583.4	감)27,951.4	233,632.0	63.0	-
	주구중심	17,934.8	증) 1,783.2	19,718.0	5.3	-
	학교	-	증)23,106.0	23,106.0	6.2	-
	공공청사	3,461.0	증) 1,210.0	4,671.0	1.3	-
	소 계	282,979.2	감) 1,852.2	281,127.0	75.8	-

※ 상지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유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 업구역	○ 구역계 변경 : 345,301㎡ → 370,596.0㎡ (증 25,295.0㎡)	○ 한강 연결성 증진 및 다양한 여가·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공원(뚝배기공원) 조성구간 및 지하철도 설치구간을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 (증 25,295.0㎡)
	○ 주택용지 변경 : 261,583.4㎡ → 233,632.0㎡ (감 27,951.4㎡)	○ 통합재건축에 따른 계획 변경
	○ 주구중심 변경 : 17,934.8㎡ → 19,718.0㎡ (증 1,783.2㎡)	○ 통합재건축에 따른 계획 변경
	○ 도로용지 변경 : 23,249.7㎡ → 24,365.0㎡ (증 1,115.3㎡)	○ 통합재건축에 따른 일부 도로 폐지 및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하철도 설치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완화차로(가감속차로) 추가조성
	○ 공원용지 변경 : 19,909.1㎡ → 52,883.0㎡ (증 32,973.9㎡)	○ '한강변관리기본계획' 과의 정합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 ○ 한강 연결 보행 동선체계 강화 및 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올림픽대로 뚝배기공원 설치
	○ 공공청사 신설 : 1,210.0㎡	○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 23,106.0㎡	○ 증가되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 신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67	34.6~44.8	주 간선도로	16,647 (117)	방화 874	반포 115-1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169 (91.6.10)	공원중복 결정 : 11,189㎡
기정	대로	2	29	35 ~ 40	주 간선도로	1,550 (525)	반포동 752	반포동 125-1	일반 도로	-	건고503 (69.8.27)	-
변경	대로	2	29	37 ~ 43.5	주 간선도로	1,550 (525)	반포동 752	반포동 125-1	일반 도로	-	건고282 (69.8.27)	-
기정	중로	1	145	20	집산도로	400	중로 1-136	대로 2-29	일반 도로	-	건고282 (72.7.11)	-
변경	중로	1	145	23.5~43.5	집산도로	400	중로 1-136	대로 2-29	일반 도로	-	건고282 (72.7.11)	공원중복 결정 : 288.0㎡
폐지	중로	3	81	12	집산도로	411	중로 1-136	대로 2-29	일반 도로	-	건고282 (72.7.11)	-
폐지	중로	2	-	15	국지도로	230	반포동 752	반포동 815	일반 도로	-	서고397 (02.11.11)	-
신설	중로	2	515	15	국지도로	363	반포동 1155	반포동8 15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1	466	23.5	집산도로	85	반포동 1166	반포동 115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1	467	20	집산도로	86	반포동 1190	반포동 1179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516	15 ~ 26	국지도로	90	반포동 815	반포동 824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6	국지도로	85	반포동 752	반포동 119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6	국지도로	55	반포동 1192	반포동 1192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14	집산도로	280	대로 1-67	중로 1-145	지하 도로	-	-	도로중복결정 대로 1-67 중로 1-145

※ ()는 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대로 2-29호선	대로 2-29호선	확폭	- 신반포로 교통용량 증대를 위해 확폭 및 회전구간의 시거확보를 위해 선형 개선
중로 1-145호선	중로 1-145호선	확폭	-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확폭 - 한강변 버스나들목 지하차도 신설 위한 확폭(중로 3 호선 중복결정)
중로 3-11호선	-	폐지	- 주거환경보호 위해 이용효율 낮은 도로 폐지 및 공공보행통로 지정으로 보행연결성 유지
중로 2-호선	-	폐지	- 주택용지와 중심시설용지간 도로 신설 위해 기존도로 폐지
-	중로 2-515호선	신설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택용지와 중심시설용지간 도로 신설
-	중로 1-466호선	신설	- 신반포로에서 단지 진출입시 교통영향 최소화 위한 신설
-	중로 1-467호선	신설	- 한신상가와 주구중심 사이도로 20m로 도로 신설
-	중로 2-516호선	신설	- 신설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청사의 진출입로 신설
-	소로 3-호선	신설	- 기존 상가 진출입 도로 신설
-	소로 3-호선	신설	
-	중로 3-호선	신설	- 순환버스 운영 위한 한강변 버스나들목 지하차도 신설

-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9호선)	도시철도 (9호선본선)	강서구 과해동 83-1	강남구 역삼동 800-1	김포공항, 당산역, 여의도역, 노량진역, 동작역, 고속터미널역,	26,185 (164)	325,289 (2,059)	서고 제2002-5호 (‘02.1.9)	-
기정	②	철도 (9호선)	도시철도 (921 정거장)	반포동 752			-	7,749 (638)	서고 제2002-5호 (‘02.1.9)	-

※ ()는 구역내 사항임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①	문화공원1	문화공원	반포동 1214 일대	-	증) 5,288	5,288	-	도로중복결정 : 288㎡
신 설	②	문화공원2	문화공원	반포동 1335-3 일대	-	증) 45,396	45,396	-	도로중복결정 : 11,189㎡
신 설	①	소공원1	소공원	반포동 1200 일대	-	증) 2,199	2,199	-	-
폐 지	①	근린공원1	근린공원	반포동 1278 일대	10,724	감) 10,724	-	-	-
폐 지	②	근린공원2	근린공원	반포동 773 일대	4,155	증) 4,155	-	-	-
변 경	③	근린공원3	근린공원	반포동 2-1 일대	8,241 (3,544)	감) 3,544	4,697 (-)	-	-

※ ()는 구역내 사항임

※ 문화공원1은 신반포로3길과 연계되는 지하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수직동선(승강기) 확보

※ 문화공원2 중 덮개공원은 사업시행인가 전 관련부서와 시공관리, 설치비용 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검토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유
①	문화공원1	- 신설 - 면적 : 5,300㎡	- 구반포역으로부터 한강연결 주보행축상에 문화공원 신설, 문화·복지 시설 조성
②	문화공원2	- 신설 - 면적 : 45,396㎡	- 한강변 기본계획상 조망점 부근에 덮개공원 신설 - 한강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원내 문화시설 등 조성
①	소공원1	- 신설 - 면적 : 2,199㎡	- 대상지 서측 그린네트워크 연계 위한 소공원 신설
①	근린공원1	- 폐지	- 단지내 공원 폐지
②	근린공원2	- 폐지	- 단지내 공원 폐지
③	근린공원3	- 구역내 폐지 - 면적 감소 : 8,241㎡ → 4,697㎡ (감 3,544㎡)	- 구역내 문화공원 신설 위한 폐지

-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서초구 잠원동 IC ~ 경부고속국도시점 47호 광장	223,064 (19,163)	감) 6,942	216,122 (12,221)	-	신반포로3길로 단절되는 완충녹지 부분은 입체적으로 연계하고, 둔덕의 지반고는 +21.0m 이하로 조성

※ ()는 구역내 사항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지	- 면적 변경 19,163㎡→12,221㎡ (감 6,942㎡)	- 한강변 다양한 문화활동 유도를 위해 일부 공원으로 변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①	학 교	초등학교	반포동 1300 일대	-	증) 12,439	12,439	-	병설유치원 포함
신 설	②	학 교	중학교	반포동 1305 일대	-	증) 10,667	10,667	-	-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학교	면적 : 12,439㎡	- 증가되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신설
②	학교	면적 : 10,667㎡	- 증가되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중학교 신설

○ 학교 건축범위 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①	학 교	12,439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②	학 교	10,667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반포동 751 일대	3,461	-	3,461	-	기존 시설
신 설	②	공공청사	공공청사	반포동 821 일대	-	증) 1,210	1,210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공공청사	면적 : 1,210㎡	-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구반포역 인근에 공공청사(1,210㎡) 설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②	공공청사	1,210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기준근거	기준(㎡)	계획(㎡)	비고
부대시설	관리 사무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 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 로 설치 가능	295㎡ 이상	600.0㎡	
주민공동시설 (실내)	총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1.25배한 면적 - 포함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14,995.0㎡ 이상	27,587.9㎡	주민공동시설 (건축물) 전체면적
	경로당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500㎡ 이상	500㎡ 이상	625㎡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725㎡ 이상	725㎡ 이상	4,350.0㎡	200인 (1개소) 300인 (1개소)
	작은 도서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298㎡ 이상	298㎡ 이상	1,668.0㎡	
	기타 주민공동시설	-	-	14,344.9㎡	공공개방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실내 운동시설 (피트니스)	-	-	6,600.0㎡	
주민공동시설 (실외)	어린이 놀이터	-	4,236.6㎡	4,578.7㎡	옥외
	주민 운동시설	-	4,523.6㎡	4,530.0㎡	옥외

- 주) 1.공공개방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로 계획
 2.공공개방시설에 대한 상세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반포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 역	370,596.0	-	-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82	-	-	82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정비 계획	예정법적 상한	
변경	반포 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370,596.0	A-1	96,405.0	반포동 129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85 이하	299.95 이하	110m이하 /35층 이하 [한강연접 첫주동 48m이하/ 10~15층이하] (피로티 포함)
			A-2	137,227.0	반포동 779일대					
			B-1	3,218.0	반포동 817일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상 주구중심용도	50 이하	250 이하	-	29.5m이하 /5층 이하 (피로티 포함)
			B-2	706.0	반포동 1190일대					
			B-3	15,794.0	반포동 1184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1,522세대 (임대 230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85㎡ : 1,933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2,293세대							
심의완화 사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한강변 : 6~10m 이격 － 그 외 :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m 이격 ▶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 신반포로3길 : 10m 이격							
기타사항			▶ 공공보행통로 － 한강연결 보행축 및 한강변 여가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지정 (폭원 6m ~ 20m 이상) － 주민커뮤니티 증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지정 (최소 폭원 3m이상) － 이용형태에 따라 직선형, 굴곡형, 다선형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형태 조정 가능 ▶ 입체공공보행통로 － 도로(신반포로3길)로 단절된 단지를 입체보행통로로 연결 － 높이 : 4.5m 이상 ~ 6.0m 이하 － 폭원 : 6.0m 이상 ~ 10.0m 이하 ▶ 대지조성계획 － 단지내부의 대지레벨은 +17.5m ~ +19.0m로 조성 － 반포천변은 +16.0m로 조성							

주) 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 건축계획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다)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환산부지면적
토지이용계획	370,596.0㎡	233,632.0㎡	117,246.0㎡	91,955.0㎡	-	12,233.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 = 25,291㎡(토지, 10.11%) + 12,233.3㎡(건축물 토지환산, 4.89%) = 37,524.3㎡(15.00%)					
건축물 기부채납검토	■ 뚝개공원(별도부지 + 건축물) - 부속토지 : 24,523㎡ / 연면적 : 10,000㎡ - 환산부지면적 : 5,662.5㎡ → 뚝개공원 공사비(한강사업본부 시설부, “망원초록길 조성” 사업비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9,966,000 × 10,000 ÷ 17,600,000 ■ 공원내 문화시설(평생체육학습,세미나,전시실) - 연면적 : 800.0㎡ - 환산부지면적 : 142.9㎡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전시박물관/문화집회시설 : 3,000㎡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3,145,000 × 800 ÷ 17,600,000 ■ 공원내 문화시설(주거역사박물관) - 연면적 : 3,000㎡ - 환산부지면적 : 455.6㎡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전시박물관/문화집회시설 : 3,000㎡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2,673,000 × 3,000 ÷ 17,600,000 ■ 대지내 문화시설(나눔센터) - 연면적 : 350.0㎡ - 환산부지면적 : 138.74㎡(대지지분 73.2㎡ 포함)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전시박물관/문화집회시설 : 3,000㎡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3,145,000 × 350 ÷ 17,600,000 ■ 공공청사(별도부지+건축물) - 부속토지 : 1,210㎡ / 연면적 : 5,000.0㎡ - 환산부지면적 : 668.18㎡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동청사/업무시설 : 1,500㎡ ~ 2,000㎡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2,432,000 × 5,000 ÷ 17,600,000 ■ 신설 초등학교(별도부지+건축물) - 부속토지 : 12,439㎡ / 연면적 : 10,150.0㎡ - 환산부지면적 : 1,003.82㎡ → 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초등학교) × 연면적 ÷ 부지가액 = 1,740,626 × 10,150 ÷ 17,600,000 ■ 신설 중학교(별도부지+건축물) - 부속토지 : 10,667㎡ / 연면적 : 10,029.0㎡ - 환산부지면적 : 1,004.66㎡ → 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중학교) × 연면적 ÷ 부지가액 = 1,763,069 × 10,029 ÷ 17,600,000 ■ 반포 초등학교(건축물) - 연면적 : 9,201.0㎡ - 환산부지면적 : 909.92㎡ → 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초등학교) × 연면적 ÷ 부지가액 = 1,740,626 × 9,201 ÷ 17,600,000 ■ 반포 중학교(건축물) - 연면적 : 9,051.0㎡ - 환산부지면적 : 906.7㎡ → 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중학교) × 연면적 ÷ 부지가액 = 1,763,069 × 9,051 ÷ 17,600,000 ■ 지하차도 - 연장 : 280m, 2차로 - 환산부지면적 : 1,004.66㎡ → 서울특별시,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m당 공사비 평균값 × 연장길이 ÷ 부지가액 = 83,000,000 × 280 ÷ 17,600,000 1) 환산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2) 부지가액 : 기존 공시지가가 가중평균 2배 적용(8,800,000원 × 2 = 17,600,000원) 3)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등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사업면적	주택용지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	무상양도면적	건축물제공 (건축물공사비토지환산)
	370,596.0	233,632.0	117,246.0	91,955.0	12,233.3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70.0%(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 기준(허용)용적률(%) + 공공용지부담율 = 270.0% + 15.0% = 285%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95%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 299.95%)				

주) 1.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한강변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서울시 경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관계획 수립		
환경보전	자연환경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면적 확보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 계획구역의 입지상 한강변에 위치하나 기존 제방시설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음. 그러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 해당사항 없음	
	화재	·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사업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현 황 : 2,120세대 ○ 계 획 : 5,748세대 증) 3,628세대	6:4재건축 적용

주) 1. 세대수는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범위		내용	비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안마원) 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절대 정화구역	·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학교보건법 제6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 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상대 정화구역	· 설정기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 호텔, 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 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합계		253,350.0	－	253,350.0	－
획지	A-1	96,405.0	반포동1292일대	96,405.0	주택용지
획지	A-2	137,227.0	반포동779일대	137,227.0	주택용지
획지	B-1	3,218.0	반포동817일대	3,218.0	주구중심
획지	B-2	706.0	반포동1190일대	706.0	주구중심
획지	B-3	15,794.0	반포동1184일대	15,794.0	주구중심

10)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연면적)
			전용	공급	
공동주택용지	233,632.0㎡	230세대	59.95㎡	76.22㎡	계획 : 17,530.6㎡ (기준 : 17,475.7㎡ 이상)

주)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재건축소형주택계획의 세대수 및 세대규모 등 건축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인가 시 변경가능

5.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사항

1. 대상지 북측 완충녹지는 북측 공공보행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하게 조성하고, 금회 상정(안)과 같은 방음식재를 계획하되, 한강조망이 가능한 지점을 조성할 것.
2. 준공 이후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 대로에 연결한 주동은 방음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하여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고, 준공단계에서 충족여부를 확인할 것.
3. 건축·교통심의시 다음 사항을 반영
 - 3-1.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대상지 북측 공공개방시설계획은 주동 하부 피로티계획(6.2m~9.3m)과 연계하여 배치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건축계획 지침을 부여할 것.
 - 3-2. 한강변 대규모 단지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경관창출 측면에서 지붕 형태 등의 특화 필요성 검토.
 - 3-3. 입체공공보행통로계획(2개소)은 지상1층 레벨에서의 보행 연계성(횡단보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고려한 위치 적정성 등을 검토
 - 3-4. 단지내 비상 차량동선계획은 단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접근로를 추가하고, 건축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소방차의 회차가 가능하도록 유효한 동선계획으로 조정할 것.
4. 향후 공공개방시설계획의 일반시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금회 상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위탁운영 관련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합(입주자대표회의)간의 구체적인 협약 등 추가 마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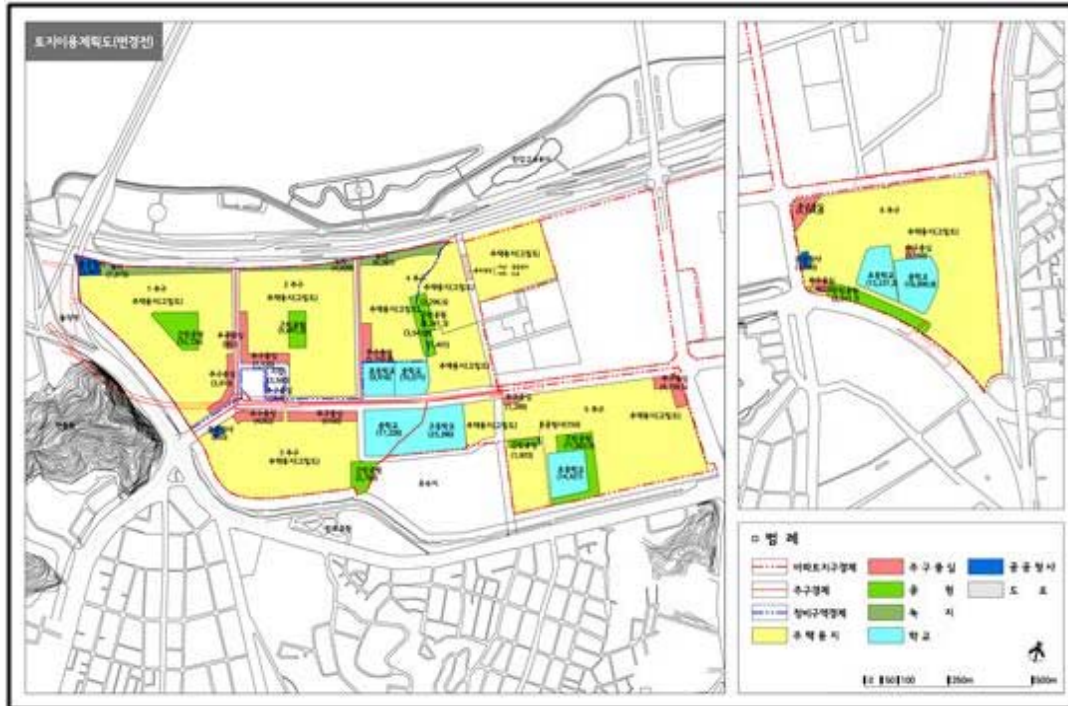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전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뚝개공원은 국제현상설계 수준의 설계와 시공을 할 것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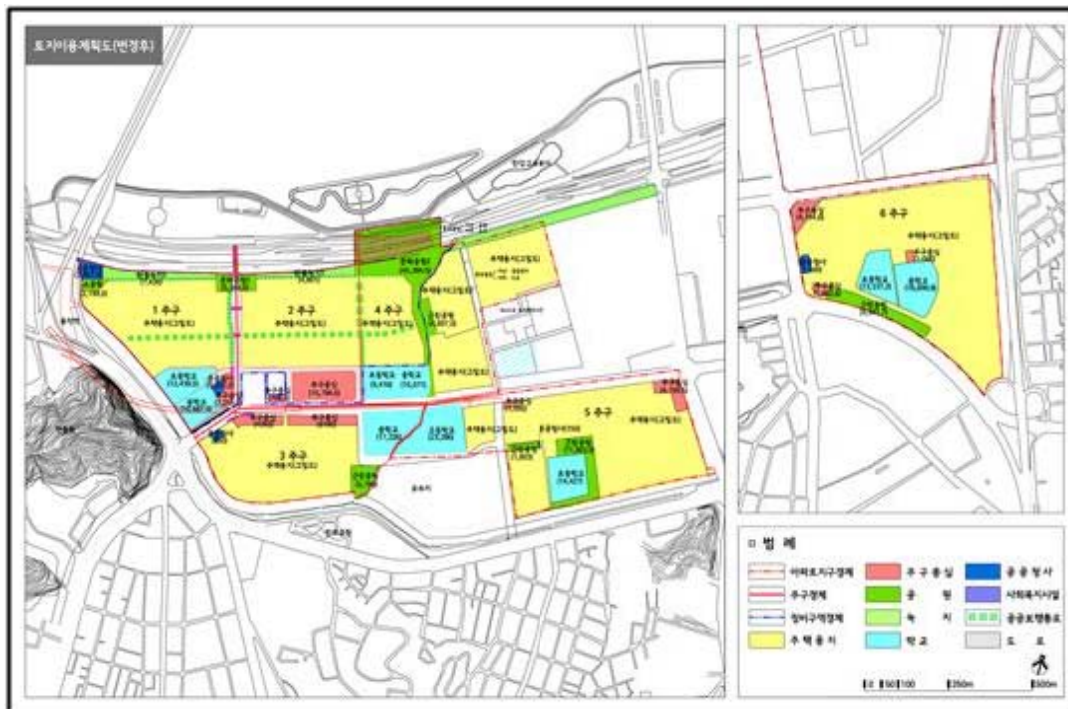
7.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33-734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기정)]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3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 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2004.12.27)로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2017. 2. 21)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반포 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28,426.5㎡	증) 20,498.1㎡	1,548,960.6㎡	

2. 주요 변경내용

가. 한강변 공공성 강화 및 보행환경개선(지하도로 3개소 설치)을 위해 반포대로, 올림픽대로 및 완충녹지 일부 정비구역 편입하여 구역면적 변경

나. 통합재건축에 따른 주택용지 변경 및 서울반포우체국 이전 설치를 위해 주택용지 일부를 주구중심 용지로, 서울반포우체국 이전부지에 남서울교회 선교관 시설설치를 위해 공공청사용지 일부를 종교용지로 용도변경

다. 통합재건축에 따른 일부 도로 폐지 및 기정 완충녹지와 통합하여 일부 완충녹지로 변경

라.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폭(15m→20m) 및 가·감속차로 추가조성

마. 반포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소공원 통합하여 위치변경

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신반포로 변에 공공청사 설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써 공공서비스 제공

사. 가로활성화, 지역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3.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면적표

(단위 : m²)

구분	합계	1주구	2주구	3주구
변경 전	1,528,426.5m ²	217,992.8m ²	388,886.8m ²	921,546.9m ²
변경 후	1,548,960.6m ²	238,490.9m ²	388,886.8m ²	921,546.9m ²
비고	증) 20,498.1m ²	증) 20,498.1m ²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합계		1,528,426.5	100.0	1,548,924.6	100.0	증) 27,498.1m ²
주거 용지	소계	942,268.4	61.6	941,198.5	60.8	감) 1,069.9m ²
	주택용지	942,268.4	61.6	941,198.5	60.8	감) 1,069.9m ²
중심 시설	소계	94,798.6	6.2	95,852.3	6.2	증) 1,053.7m ²
	지구중심	37,698.5	2.5	37,698.5	2.4	변경 없음
	주구중심	22,912.1	1.5	23,965.8	1.5	증) 1,053.7m ²
	분구중심	34,188.0	2.2	34,188.0	2.2	변경 없음
도시 계획 시설	소계	481,157.9	31.5	501,024.5	32.3	증) 19,866.6m ²
	도로용지	224,066.9	14.7	227,634.1	14.7	증) 3,567.2m ²
	공원용지	56,568.5	3.7	56,568.5	3.7	변경 없음
	녹 지	59,551.2	3.9	72,962.9	4.7	증) 13,411.7m ²
	광 장	972.9	0.1	972.9	0.1	변경 없음
	학교용지	131,617.6	8.6	131,617.6	8.5	변경 없음
	공공청사	8,380.8	0.5	8,944.4	0.6	증) 563.6m ²
	문화시설	—	—	2,324.1	0.2	증) 2,324.1m ²
기타	소계	10,201.6	0.7	10,849.3	0.7	증) 647.7m ²
	종교용지	10,201.6	0.7	10,849.3	0.7	증) 647.7m ²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1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217,992.8	100.0%	238,490.9	100.0%	증) 20,498.1㎡
주거 용지	소계	128,181.4	58.8%	127,111.5	53.3%	감) 1,069.9㎡
	주택용지	128,181.4	58.8%	127,111.5	53.3%	감) 1,069.9㎡
중심 시설	소계	14,761.9	6.8%	15,815.6	6.6%	증) 1,053.7㎡
	지구중심	-	-	-	-	변경 없음
	주구중심	7,391.5	3.4%	8,445.2	3.5%	증) 1,053.7㎡
	분구중심	7,370.4	3.4%	7,370.4	3.1%	변경 없음
도시 계획 시설	소계	70,649.9	32.4%	90,516.5	38.0%	증) 19,866.6㎡
	도로용지	22,157.2	10.2%	25,724.4	10.8%	증) 3,567.2
	공원용지	8,127.4	3.7%	8,127.4	3.4%	변경 없음
	녹 지	-	-	13,411.7	5.6%	증) 13,411.7㎡
	학교용지	39,167.0	18.0%	39,167.0	16.4%	변경 없음
	공공청사	1,198.3	0.5%	1,761.9	0.7%	증) 563.6㎡
	문화시설	-	-	2,324.1	1.0%	증) 2,324.1㎡
기타	소계	4,399.6	2.0%	5,047.3	2.1%	증) 647.7㎡
	종교용지	4,399.6	2.0%	5,047.3	2.1%	증) 647.7㎡

- 2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 3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나. 건축물 규제사항 : 변경

1) 용도규제 : 변경

구 분	건 축 범 위	
	기 정	변 경
지 구 중 심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변경 없음
주 구 중 심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변경 없음
분 구 중 심	·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변경 없음

구 분	건 축 범 위	
	기 정	변 경
주 택 용 지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변경 없음
학 교 용 지	· 학교시설	변경 없음
공 원 용 지	· 공원시설	변경 없음
도 로 용 지	· 도로시설	변경 없음
녹 지	· 녹지관련시설	변경 없음
광 장	· 광장관련시설	변경 없음
공 공 청 사	· 공공청사	변경 없음
종 교 시 설	· 종교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변경 없음
문 화 시 설	-	· 문화시설

- ※ 주 1) 상기 건축물의 용도규제사항은 해당 용도지역의 관련법규 상 허용하는 용도범위 내에서 적용
 2)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2) 건축선의 지정 : 변경

- 1지구(변경)
 - ▶ 건축한계선
 - 반포대로변 : 6m 이격
 - 신반포로19길변 : 6m 이격
 - 북측 완충녹지변 : 6m 이격
 - 그 외 :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m 이격
- 2지구(변경 없음)
- 3지구(변경 없음)

3) 건폐율 규제 : 변경 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연 립 주 택	40 % 이하	
저 층 아 파 트	30 % 이하	
중 층 아 파 트	25 % 이하	
고 층 아 파 트	20 % 이하	
기 타 건 축 물	50 % 이하	

4) 용적률 규제 : 변경 없음

- 기준(허용)용적률 : 230%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 사업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완화 차등적용
- ※ 정비계획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text{정비계획용적률(\%)} = \text{기준(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alpha)$$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5) 세대밀도 : 변경 없음

구 분	세대밀도(세대수/10,000㎡)	비 고
연 립 주 택	60 ~ 150	주택용지+중심시설
저 층 아 파 트	70 ~ 250	
중 층 아 파 트	100 ~ 300	
고 층 아 파 트	200 ~ 400	

6) 건축물의 높이 : 변경 없음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연 립 주 택	4층 이하	
저 층 아 파 트	5~7층 이하	
중 층 아 파 트	8~12층 이하	
고 층 아 파 트	13층 이상	
기 타 건 축 물	5층 이하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심의결과에 따름

7)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변경 없음

- 지구중심 내 건축물은 공동주택과의 거리를 30m 이상 이격(단,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 변경 없음

- 주택용지면적의 40% 이상의 녹지면적확보
- 단지 내 녹도(기부채납대상이 아님)는 지정된 위치에서 30m 범위 내에서 공원등과 연결 되도록 폭 6m이상의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녹도형태(보행+녹지)로 조성
- 도로변 시설녹지(경관녹지)는 가로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조성하되, 불가피하게 단지 내 차량진출입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차량출입 허용구간에 한해 차량진출입부(최대 2개소) 설치가능

9)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 변경 없음

- 각 시행단위별 건립세대수중 소형평형의 건립비율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지침 등 관련법 규정에 따름

다.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계획 : 변경

1) 지구중심 : 변경 없음

- 구분 및 면적

구 분	반포지구 중심
위 치	지구의 공간적 중심인 2주구 근린주구 구역 내
면적 (㎡)	37,698.5

- 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층수 : 5층 이하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법적용적률(조례)이하

- 이격거리 : 공동주택과 30m 이상 이격

단,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구중심 : 변경

- 주구중심 구분 및 면적

구 분	계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변경전	4	22,912.1	1	7,391.5	2	7,277.5	1	8,243.1	
변경후	6	23,965.8	3	8,445.2	2	7,277.5	1	8,243.1	
비고	증)2개소	증)1,053.7	증)2개소	증)1,053.7	-	-	-	-	

- 변경사유

구 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주구중심	반포동 1-24번지	508.3	- 현황용도인 남서울교회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용지에서 주구중심으로 변경
주구중심	반포동 1-55번지	545.4	- 현재 남서울교회 비전선교센터 부지에 우체국 용도의 이전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용지에서 주구중심으로 변경

- 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 층수 : 5층 이하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법정용적률(조례)이하

3) 분구중심 : 변경 없음

- 분구중심 구분 및 면적

구 분	분구중심	1주구	2주구	3주구
개 소	5	1	-	4
면적 (㎡)	34,188.0	7,370.4		26,817.6

- 용도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 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 층수 : 5층 이하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법정용적률(조례)이하

4) 기타건축물

구 분	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공공청사	8,944.4	5	50%이하	해당용도지역 법정용적률(조례)이하	변경 (면적변경 및 1개소 신설)
종교시설	10,849.3	5	50%이하	해당용도지역 법정용적률(조례)이하	변경 (면적변경)
문화시설	2,324.1	5	50%이하	해당용도지역 법정용적률(조례)이하	신설

라.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완화차로 설치 등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며, 다만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지정된 위치에서 30m 범위 내에서 설치가능

마. 경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한강변 연접아파트는 시각통로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형태를 탑상형으로 권장

바.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개발잔여지 및 기존건축물은 관련 법·규정 및 개발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처리
- 개발기본계획에서 주택용지로 계획된 경우 부지정형화 및 적정규모개발을 위해 다음의 권장사항에 부합되도록 처리
- 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 연결된 개발잔여지가 있을 경우, 가급적 공동 개발을 원칙으로 함
- 중·소규모 개발잔여지 단독 개발 시 연결필지와 공동건축을 통해 연립주택, 아파트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격배치 권장
- 개발기본계획에서 주구중심, 분구중심 등 중심시설로 계획된 개발잔여지는 중심시설 계획에 부합되도록 처리하되, 소규모 필지인 경우 부지규모와 형태의 적합성이 유지되도록 인접필지와 공동건축 유도

사. 사업시행계획 : 변경 없음

1) 주택용지 개발시행계획 : 변경 없음

- 반포아파트 지구 내 총 59개 아파트 단지 중 개발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1년까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상의 재건축년한규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31개 단지에 대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 개발기본계획 변경내용에 따라 주택용지 내 29개 존치단지는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발잔여지는 부지정형화 및 연결필지 공동건축을 통한 적정규모 개발 추진

2) 중심시설용지 개발시행계획 : 변경 없음

- 개발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된 지구중심, 주구중심, 분구중심 중 필지분할이 되지 않은 중심시설은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 별도획지로 분할된 중심시설은 단독으로 개발 사업 시행

3) 공공투자계획 : 변경 없음

-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단지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이와 별개로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와의 연결통로 신설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보완적인 공공투자사업은 단계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시행

4) 기타사항 : 변경 없음

-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정비사업 대상 단지는 사업 시행 시 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수립과 관련하여 진행된 교통, 환경, 인구영향평가 등의 심의결과 이행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147,969.5	증)20,498.1	168,467.6	

나.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7,969.5	증)20,498.1	168,467.6	100.0	구역확장으로 인한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47,969.5	증)19,124.4	167,093.9	99.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1,373.7	1,373.7	0.8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7,969.5	증)20,498.1	168,467.6	100	－ 한강변 공공성 강화 및 보행환경개선(지하 보도 설치)을 위해 반포대로, 올림픽대로 일부 및 완충녹지 일부(13,411.7㎡) 정비 구역 편입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20,298.4	증)16,978.9	37,277.3	22.1	－
	도로용지	16,359.3	증)3,567.2	19,926.5	11.8	－ 통합재건축에 따른 일부 도로 폐지(감 5,770.3㎡) 및 기정 완충녹지와 통합하여 일부 완충녹지로 변경(감 2,518.3㎡) －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 로 확폭(15m → 20m) － 가감속차로 추가조성(1,782.6㎡)
	공원용지	3,939.1	－	3,939.1	2.3	－ 반포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소공원 통 합하여 위치변경
	녹 지	－	증)13,411.7	13,411.7	8.0	－ 한강변 공공성 강화 및 보행환경 개선(지 하보도 설치)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 편입 (13,411.7㎡)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획지	소 계	127,671.1	증)3,519.2	131,190.3	77.9	-
	주택용지	120,300.7	감)1,069.9	119,230.8	70.8	- 통합재건축에 따른 주택용지 변경 및 우체국 이전 설치를 위해 주택용지 일부를 주구중심 용지로 용도변경
	분구중심	7,370.4	-	7,370.4	4.4	-
	주구중심	-	증)1,053.7	1,053.7	0.6	- 우체국 이전 설치를 위해 주택용지 일부를 주구중심용지로 용도변경(증 1,053.7㎡)
	문화시설 용지	-	증)2,324.1	2,324.1	1.4	-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2,324.1㎡) 설치(가로활성화, 지역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
	공공청사 용지	-	증)1,211.3	1,211.3	0.7	-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신반포로변에 공공청사(1,211.3㎡) 설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35	40 ~ 44	주간선 도로	6,600 (483)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	일반 도로	-	2010.04.22	반포대로
변경	광로	3	35	40 ~ 44	주간선 도로	6,600 (483)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	일반 도로	-	2010.04.22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 시설) 중복결정(면적:356.2㎡)
기정	대로	2	29	30	주간선 도로	3,500 (123)	서초구 반포동 (이수교차로)	서초구 반포동 (강남대로)	일반 도로	-	1984.11.07	신반포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대로	2	29	30	주간선 도로	3,500 (123)	서초구 반포동 (이수교차로)	서초구 반포동 (강남대로)	일반 도로	-	1984.11.07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 (면적:122.3㎡)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466 (466)	반포동 1-21	반포동 116-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신반포로19길
변경	중로	1	A	20	집산 도로	475 (475)	반포동 1-21	반포동 116-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기정	중로	3	5	12	국지 도로	253 (253)	반포동 4-14	반포동 1-1	일반 도로	-		
폐지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200 (200)	반포동 1-5	반포동 1-8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기정	중로	3	16	10	국지 도로	247 (247)	반포동 2-8	반포동 1-1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1	17	10	국지 도로	340 (340)	반포동 1-8	반포동 116-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폐지	소로	2	24	8	국지 도로	108 (108)	반포동 1-8	반포동 1-13	특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2	25	8	국지 도로	198 (198)	반포동 2-1	반포동 1-8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신설	중로	1	A	20	특수 도로	103 (103)	반포동 1-13	반포동 115-2	지하 도로	-		광로3-35(356.2㎡), 소공원⑤(1,585.5㎡)완충녹 지①(53.8㎡)와 중복결정
신설	중로	1	B	20	특수 도로	92 (92)	반포동 115-4	반포동 115-6	지하 도로	-		완충녹지①(617.3㎡)와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7.5	특수 도로	17 (17)	반포동 1-11	반포동 1-12	지하 도로	-		대로2-29(122.3㎡)와 중복결정

※ ()는 구역 내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광로 3-35호선	광로 3-35호선	확폭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완화차로(가감속차로) 추가조성(1,782.6㎡) - 광로3-35호선 :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중로1-A 중복결정(356.2㎡) - 대로2-29호선 :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소로3- 중복결정(122.3㎡)
대로 2-29호선	대로 2-29호선	확폭	
중로 2-10호선	중로 1-A호선	확폭	- 단지 진 · 출입로 확보를 위해 확폭(15m → 20m)
중로 3-11호선	-	폐지	- 통합재건축에 따른 일부 도로 폐지(감 5,770.3㎡)
소로 1-17호선	-	폐지	
소로 2-24호선	-	폐지	- 통합재건축에 따라 차량진출입 기능이 불필요한 소로2-25 및 현재 일부 녹지공간으로 사용 중인 소로2-24를 폐지하고 기정 완충녹지와 통합하여 완충녹지로 변경(감 2,518.3㎡)
소로 2-25호선	-	폐지	
-	중로 1-A호선	신설	- 한강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를 설치
-	중로 1-B호선	신설	
-	소로 3-호선	신설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⑤	1-1	소공원	반포동 1-1	1,500.0	증)2,439.1	3,939.1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소공원1-2와 통합 및 위치변경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 설) 중로1-A 중복결정 (면적1,585.5㎡)
폐지	⑥	1-2	소공원	반포동 1-8	2,439.1	감)2,439.1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소공원1-1과 통합 및 위치변경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⑤	소공원 1-1	- 소공원 1-2와 통합 후 위치 변경 - 면적 증가 : 1,500.0㎡ → 3,939.1㎡ (증 2,439.1㎡)	- 반포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소공원1-1과 소공원 1-2를 통합하여(3,939.1㎡) 북동측 각각부로 위치변경
⑥	소공원 1-2	- 폐지	

-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반포동 115-4	-	증)13,411.7	13,411.7	-	- 완충녹지는 북측 공공보행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하게 조 성하며, 둔덕의 지반고는 +21.0 이하로 조성 -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중로 1-A 중복결정(면적53.8㎡) -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중로 1-B 중복결정(면적617.3㎡)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지	- 면적 변경 0㎡ → 13,411.7㎡ (증 13,411.7㎡)	- '한강변관리기본계획' 과의 정합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해 완충녹지 일 부 편입(증 10,893.4㎡) - 통합재건축에 따라 차량진출입 기능이 불필요한 소로2-25 및 현재 일 부 녹지공간으로 사용 중인 소로2-24를 폐지하고 기정 완충녹지와 통 합하여 완충녹지로 변경(증 2,518.3㎡)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③	공공청사	공공청사	반포동 1-23	-	증) 1,211.3㎡	1,211.3㎡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공공청사	면적 : 1,211.3㎡	-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신반포로변에 공공청사(1,211.3㎡) 설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③	공공청사	1,211.3㎡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반포동 1-1	-	증) 2,324.1	2,324.1	-	-

○ 문화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 면적 : 2,324.1㎡	-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 문화시설 건축범위 결정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면 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①	문화시설	2,324.1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예정법정상한		
기정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47,969.5	A-1	63,824.5	반포동 1-1 일대	A	20 이하	230 이하	-	-	13층 이상	신반포3차
			A-2	47,343.1	반포동 1-8 일대	A	20 이하	230 이하	-	-	13층 이상	신반포경남
			A-3	5,825.4	반포동 1-19일대	A	20 이하	230 이하	-	-	13층 이상	신반포 23차
			A-4	1,015.0	반포동 1-23	A	20 이하	230 이하	-	-	13층 이상	우정예썬르 1차
			A-5	1,239.0	반포동 1-26	A	20 이하	230 이하	-	-	13층 이상	우정예썬르 2차
			A-6	508.3	반포동 1-24	A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남서울교회 어린이집
			A-7	545.4	반포동 1-55	A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B-1	7,370.4	반포동 1-11일대	B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경남상가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예정법정 상한		
변경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68,467.6	A-1	119,230.8	반포동 1-1 일대	A	20 이하	230 이하	281.34 이하	300 이하	35층(110m) 이하 [한강연접 첫 주동 높이 10~15층(48m) 이하] (필로티 포함)	
			B-1	7,370.4	반포동 1-26 일대	B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경남상가
			C-2	508.3	반포동 1-24 일대	C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남서울교회 어린이집
			C-3	545.4	반포동 1-55 일대	C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우체국 이전예정)
			D-1	2,324.1	반포동 1-19 일대	관련 법규에 따름					5층 이하	신설
			E-2	1,211.3	반포동 1-23 일대	관련 법규에 따름					5층 이하	신설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심의결과에 따름

○ 건축물 용도규제

구분	건축범위	
	기정	변경
지구중심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변경 없음
주구중심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변경 없음
분구중심	·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변경 없음
주택용지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변경 없음
학교용지	· 학교시설	변경 없음
공원용지	· 공원시설	변경 없음
도로용지	· 도로시설	변경 없음
녹지	· 녹지관련시설	변경 없음
광장	· 광장관련시설	변경 없음
공공청사	· 공공청사	변경 없음
종교시설	· 종교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변경 없음
문화시설	-	· 문화시설

※ 주 1) 상기 건축물의 용도규제사항은 해당 용도지역의 관련법규 상 허용하는 용도범위 내에서 적용
2)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기준군거	기준(㎡)	계획(㎡)	비고
부대시설	관리 사무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 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 로 설치 가능	157.3㎡ 이상	226.6㎡	
	총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1.25배한 면적 - 포함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8,115㎡ 이상	14,967.1㎡	주민공동시설 (건축물) 전체면적
주민 공동 시설 (실내)	경로당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500㎡ 이상	500㎡ 이상	526.5㎡	-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725㎡ 이상	725㎡ 이상	3,625.0㎡	200인 (1개소) 300인 (1개소)
	작은 도서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298㎡ 이상	298㎡ 이상	1,437.0㎡	-
	기타 주민 공동시설	-	-	4,951.5㎡	공공개방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실내 운동시설 (피트니스)	-	-	4,427.1㎡	
	주민 공공 시설 (실외)	-	-	-	-
주민 공공 시설 (실외)	어린이 놀이터	-	2,597.2	2,600.0㎡	옥외
	주민 운동시설	-	-	2,200.0㎡	옥외

- 주) 1.공공개방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로 계획
2.공공개방시설에 대한 상세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	소계	144,380.4	-	127,671.1	-	32	-	-	32	-	
기정	신반포3차 아파트	72,585.3	A-1	63,824.5	반포동 1-1 일대	15	-	-	15	-	
기정	경남아파트	55,125.2	A-2	47,343.1	반포동 1-8 일대	11	-	-	11	-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반포23차 아파트	5,935.6	A-3	5,825.4	반포동 1-19 일대	1	-	-	1	-	
기정	우정예셰르 1차	1,071.2	A-4	1,015.0	반포동 1-23	1	-	-	1	-	
기정	우정예셰르 2차	1,239.0	A-5	1,239.0	반포동 1-26	1	-	-	1	-	
기정	남서울교회 어린이집	508.3	A-6	508.3	반포동 1-24	1	-	-	1	-	
기정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545.4	A-7	545.4	반포동 1-55	1	-	-	1	-	
기정	반포경남 상가	7,370.4	B-1	7,370.4	반포동 1-11일대	1	-	-	1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고 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8,467.6	주택 용지	119,230.8	반포동 1-1번지 일원	공동주택	19.86	299.95	110.0m	35층 (필로티 포함)
			분구 중심	7,370.4	반포동 1-23번지 일원	분구중심	49.98	249.90	29.5m	5층 이하 (필로티 포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 632세대 (임대 135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85㎡ : 1,254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 초과 : 1,110세대								
심의완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반포대로변 : 6m 이격 - 신반포로19길변 : 6m 이격 - 북측 완충녹지변 : 6m 이격 - 그 외 :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m 이격								
기타사항		▶ 공개공지 - 공개공지(침상형) 1개소 지정(위치지정)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중앙부 동서방향 지상형 1개소 지정 - 대상지 북측 완충녹지변 지상형 1개소 지정 - 신반포로19길변 남북방향 지상형 1개소 지정 - 반포대로변 공공보행통로(지상·지하통로형) 1개소 지정 - 지정된 위치에서 30m 범위 내에서 폭 6m 이상의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조성 ▶ 대지조성계획 - 단지 내부의 대지레벨은 +13.3m ~ +18.0m로 조성 - 대상지 서측 도로(신반포로19길) 경계부는 단지(+15.0m ~ +18.0m)와 도로(+11.6m ~ +13.3m)간의 단차에 따른 옹벽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공개방시설의 미배치 구간은 대지레벨을 완만하게 조성할 것								

주) 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7)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사업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환산부지면적
	168,467.6㎡	119,230.8㎡	40,812.7㎡	23,605.2	-	3,274.4㎡
건축물 기부채납검토	■ 환산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공공청사(별도부지 + 건축물) - 부속토지 : 1,211.3㎡ / 연면적 : 5,040㎡ - 환산부지면적 : 595.23㎡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동청사(주민자치센터) : 2,000㎡ 초과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2,352,000 × 5,040(지하2층~지상5층) ÷ 19,915,129 ■ 지역예술교육센터(문화시설) (별도부지 + 건축물) - 부속토지 : 2,324.1㎡ / 연면적 : 7,070㎡ - 환산부지면적 : 978.04㎡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시설 : 4,000~10,000㎡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2,755,000 × 7,070(지하2층~지상5층) ÷ 19,915,129 ■ 지하도로_반포대로변 (공공시설) - 연면적 : 1,995.6㎡ - 환산부지면적 : 250.51㎡ → 개착공법(2016년 문정컬처밸리 임시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산정) × 1식 ÷ 부지가액 = 2,500,000 × 1,995.6 ÷ 19,915,129 ■ 지하도로_신반포로19길 (공공시설) - 연면적 : 1,425.0㎡ - 환산부지면적 : 1,431.07㎡ → 비개착공법(한강공원 나들목 낙천정, 신청담 평균공사비 기준 산정) × 1식 ÷ 부지가액 = 20,000,000 × 1,425.0 ÷ 19,915,129 ■ 지하도로_고투몰 연결통로 (공공시설) - 연면적 : 156.0㎡ - 환산부지면적 : 19.58㎡ → 개착공법(2016년 문정컬처밸리 임시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산정) × 1식 ÷ 부지가액 = 2,500,000 × 156.0 ÷ 19,915,129 ※ 부지가액 : 2016년 기준 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9,957,564.5원 × 2 = 19,915,129원)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17,207.5㎡(토지, 12.61%) + 3,274.4㎡(건축물 토지환산, 2.40%) = 20,481.9㎡(15.01%)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사업면적	주택용지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	무상양도면적	건축물제공 (건축물공사비토지환산)	
	168,467.6	119,230.8	40,812.7	-	3,274.4	
예정법정상한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30.0%(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 기준(허용)용적률(%) × (1+1.3×α)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281.34%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 300.00%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 299.95%)					

8) 재건축 소형주택(중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연면적)
			전용	공급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로19길10 (반포동1-1)일원	119,230.8㎡	135	59.98㎡	82.48㎡	계획 : 11,134.8㎡ (기준 : 11,124.2㎡ 이상)

주) 재건축소형주택계획의 동수 및 세대수는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시 변경가능

9)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적용산식	비고
정비계획 용적률	281.34%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300.0%	
용적률 차이의 50%	$(\text{예정법적상한용적률} - \text{상한용적률}) \times 50\%$ $= (300.0\% - 281.34\%) \times 50\% = 9.3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3
연면적 환산	$\{(\text{예정법적상한용적률} - \text{상한용적률}) \times 50\% \} \times \text{순 사업부지 면적}$ $= \{ (300.0\% - 281.34\%) \times 50\% \} \times 119,230.8 = 11,124.2\text{㎡}$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연면적 = $82.48\text{㎡} \times 135\text{세대}$ = 11,134.8㎡	

10)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사업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2,433세대 계획 : 2,996세대 (증) 563세대	6:4재건축 적용

※ 주구중심(C-2, C-3)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별도로 개발사업 시행

5.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사항

1. 대상지 북측 완충녹지는 북측 공공보행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하게 조성하고, 금회 상정(안)과 같은 방음식재를 계획하되, 한강조망이 가능한 지점을 조성할 것.
2. 준공 이후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 대로에 연결한 주동은 방음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하여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고, 준공단계에서 충족여부를 확인할 것.
3. 대상지 서측 도로(신반포로19길) 경계부는 단지(+15.0m~+18.0m)와 도로(+11.6m~+13.3m)간의 단차에 따른 옹벽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공개방시설의 미배치구간은 대지레벨을 완만하게 조성할 것
4. 향후 건축·교통심의 시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계획은 회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효한 동선계획으로 조정할 것
5. 향후 공공개방시설계획의 일반시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금회 상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위탁운영 관련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합(입주자대표회의)간의 구체적인 협약 등 추가 마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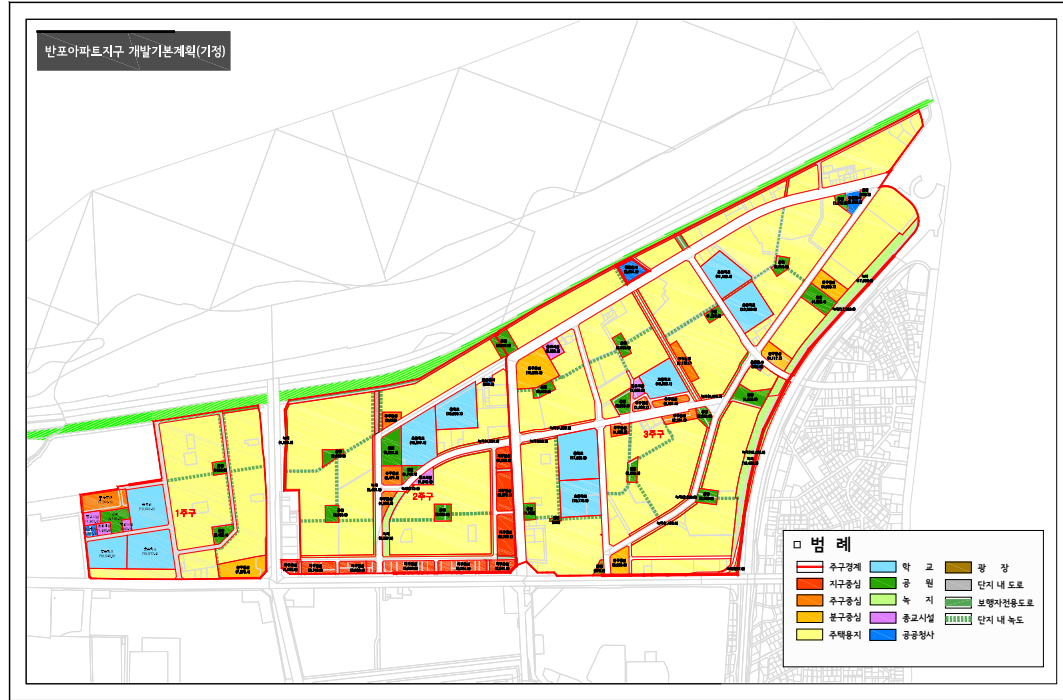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전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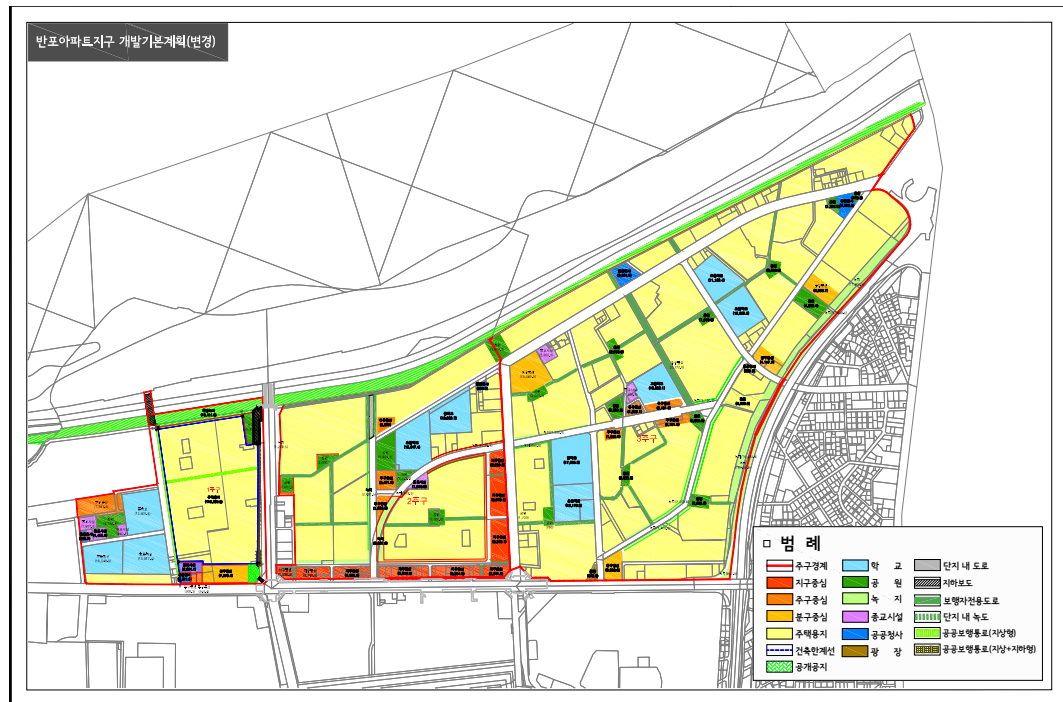
7.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와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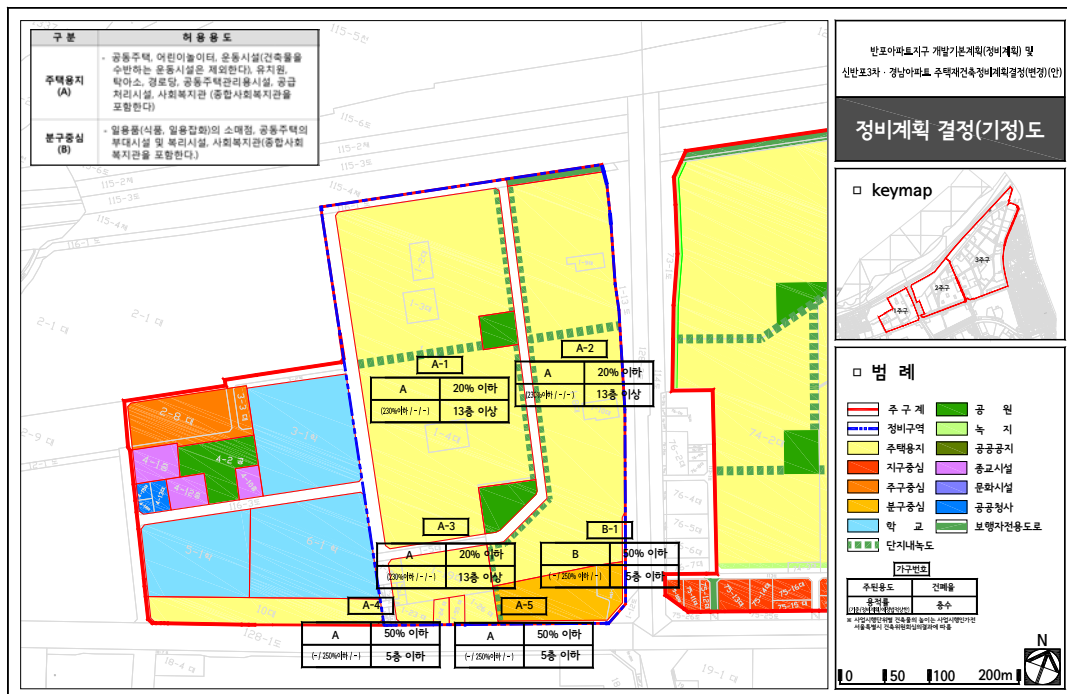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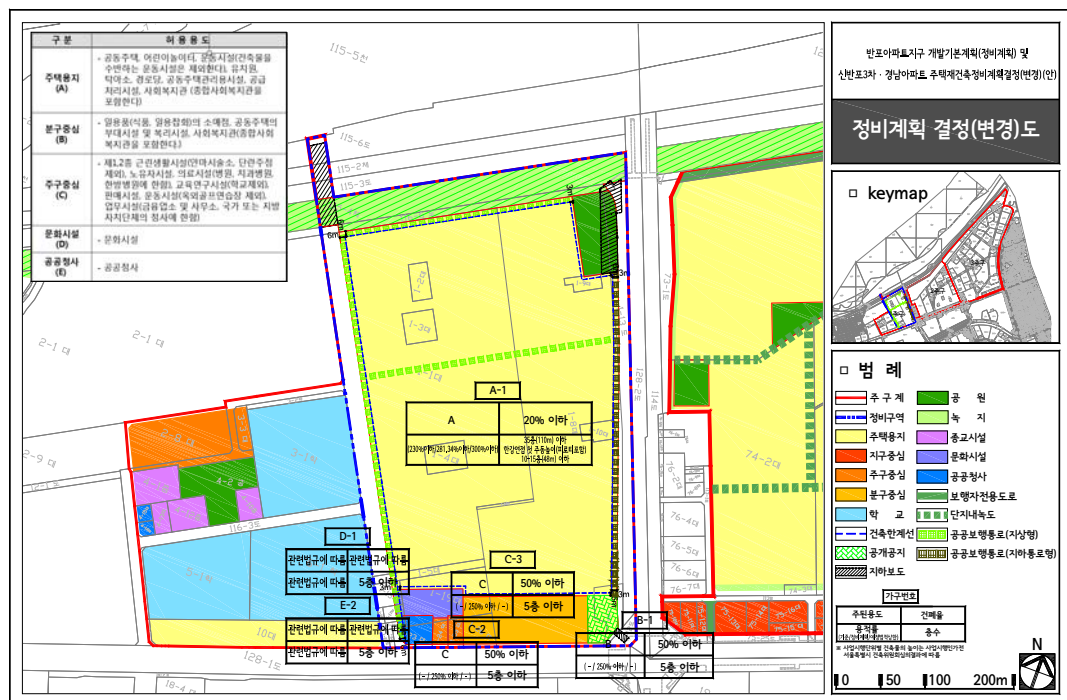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결정(기정)도]



[정비계획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6호(2010.04.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1617호(2010.09.16.)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84호(2010.11.0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94호(2011.12.22.) 및 제2013-18호(2013.01.24.)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04호(2017.03.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시흥IC~관악구 봉천동 낙성대 입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 왕복 4차로
- 연장 : 5,58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착수일로부터 ~ 2017.12.31.
- 변 경 : 착수일로부터 ~ 2021.09.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입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관악구 신림동]															
1	기 정	1707-1	공	43,026.3	3,430.4	공원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4.9 ~20.6	-1.10 ~20.60	1	
	변 경	1707-1	공	43,026.3	3,473.6	공원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6.74 ~22.4	-2.94 ~18.76		
2	기 정	1707-1	공	43,026.3	102	공원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4.9 ~20.6	-1.10 ~20.60	1-1	
	변 경	1707-1	공	43,026.3	96	공원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25.6 ~41.3	-3.18 ~18.52		
3	기 정	1707-1	공	43,026.3	301.4	공원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4.9 ~20.6	-1.10 ~20.60	1-2	
	변 경	1707-1	공	43,026.3	301.4	공원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18.7 ~34.4	-3.78 ~17.92		
4	기 정	1707	공	5,769.7	806	박물관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7 ~22.7	-0.80 ~20.90	2	
	변 경	1707	공	5,769.7	802	박물관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10.8 ~26.5	-3.24 ~18.46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5	기정	1707	공	5,769.7	912.1	박물관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7 ~22.7	-0.80 ~20.90	2-1
	변경	1707	공	5,769.7	911.8	박물관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10.6 ~26.3	-3.24 ~18.46	
6	기정	1707-3	공	52.8	52.1	박물관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7 ~22.7	-0.75 ~20.96	3
	변경	1707-3	공	52.8	52.1	박물관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10.0 ~25.7	-3.31 ~18.39	
7	기정	1572-12	대	193.4	11.5	임야	이은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2-12				6.3 ~22	-0.71 ~20.98	4
	변경	1572-12	대	193.4	11.5	대지	이은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2-12				9.2 ~24.9	-3.39 ~18.31	
8	기정	1572-13	대	263	18.2	임야	권태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2-13				6.2 ~21.9	-0.70 ~20.99	5
	변경	1572-13	대	263	18.2	대지	인대숙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28-6				9.2 ~24.9	-3.38 ~18.32	
							천금성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12 초원A. 101-1705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면적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9	기 정	1572-14	대	105.5	103.8	임야	유순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2-14				6.4 ~22.1	-0.70 ~20.99	6
	변 경	1572-14	대	105.5	103.8	대지	유순심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52(신림동)				9.2 ~24.9	-3.38 ~18.32	
10	기 정	1572-15	대	151.6	49.5	임야	이행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2-15	(주)한국주 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신림동지점)	근저당권	6.3 ~22	-0.67 ~21.04	7
	변 경	1572-15	대	151.6	49.5	대지	이행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2-15	(주)국민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신림남부지점)	근저당권	10.3 ~26.0	-3.41 ~18.29	
11	기 정	1642-4	도	4,177.7	237.6	임야	공	관악구청				6.1 ~21.8	-0.71 ~20.98	8
	변 경	1642-4	도	4,177.7	237.6	임야	공	관악구청				9.2 ~24.9	-3.39 ~18.31	
12	기 정	1690	학	55,974.3	5,823.8	학교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16 ~31.7	-0.31 ~21.30	9
	변 경	1690	학	55,974.3	5,823.8	학교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19.9 ~35.6	-3.83 ~17.87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13	기 정	1690	학	55,974.3	66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16 ~31.7	-0.31 ~21.30	9-1	
	변 경	1690	학	55,974.3	66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19.3 ~35.0	-3.71 ~17.99		
14	기 정	산191-16	임	32,017	1,724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32.4 ~48.1	0.18 ~21.89	10	
	변 경	산191-16	임	32,017	1,724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57.6 ~73.3	-4.21 ~17.49		
15	기 정	산191-16	임	32,017	1,961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32.4 ~48.1	0.18 ~21.89	10-1	
	변 경	산191-16	임	32,017	1,961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49.8 ~65.5	-4.42 ~17.28		
16	기 정	산181-8	임	1,094	64	임야	김상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A.205-802						11	
							나운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41 푸른마을 푸르지오 A. 109-1201				64.5 ~80.2	0.65 ~22.35		
							하진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41 푸른마을 푸르지오 A. 109-1201							
	변 경	산181-8	임	1,094	64	임야	김상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A.205-802							
							나운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41 푸른마을 푸르지오 A. 109-1201				67.9 ~83.6	-4.72 ~16.98		
							하진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41 푸른마을 푸르지오 A. 109-120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17	기 정	산181-5	임	17,110	2,198	임야	남상주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5-12 청천빌라101호				49.2 ~64.9	0.92 ~22.63	12
							신창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7 대림A.103-1102						
							이은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88-108 현대A.1-1309						
	변 경	산181-5	임	17,110	2,198	임야	신창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7 대림A.103-1102				62.0 ~77.7	-5.05 ~16.65	12
							이은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88-108 현대A.1-1309						
							남윤우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43길 11, 101호(반포동, 청천빌라)						
							남연우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43길 11, 201호(반포동, 청천빌라)				49.2 ~64.9	0.92 ~22.63	12-1
							남연화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43길 51-4, 303호(반포동, 신구아트빌라)						
18	기 정	산181-5	임	17,110	1,460	임야	남상주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5-12 청천빌라101호						
							신창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7 대림A.103-1102				49.2 ~64.9	0.92 ~22.63	12-1
							이은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88-108 현대A.1-1309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변경	산181-5	임	17,110	1,460	임야	신창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7 대림A.103-1102						12-1	-4.88 ~16.82
							이은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88-108 현대A.1-1309							
							남윤우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43길 11, 101호(반포동, 창천빌라)							
							남연우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43길 11, 201호(반포동, 창천빌라)							
							남연화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43길 51-4, 303호(반포동, 신구아트빌라)							
19	기정	산159-5	임	29,855	4,666	임야	박남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4 푸른마을 403-703				39.3 ~55	1.32 ~23.03	13	-5.44 ~16.26
	변경	산159-5	임	29,855	4,666	임야	(주)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62.6 ~78.3			
20	기정	산159-5	임	29,855	121	임야	박남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4 푸른마을 403-703				39.3 ~55	1.32 ~23.03	13-1	-5.20 ~16.50
	변경	산159-5	임	29,855	121	임야	(주)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60.8 ~76.5			
21	기정	산159-33	도	781	102	임야	공	관악구청				49.9 ~65.6	1.59 ~23.29	14	-5.59 ~16.11
	변경	산159-33	도	781	102	임야	공	관악구청				66.3 ~82.0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22	기 정	산159-33	도	781	128	임야	공	관악구청				49.9 ~65.6	1.59 ~23.29	14-1
	변 경	산159-33	도	781	128	임야	공	관악구청				59.3 ~75.0	-5.76 ~15.94	
23	기 정	산159-40	도	246	1	임야	공	관악구청				49.9 ~65.6	1.67 ~23.38	15
	변 경	산159-40	도	246	1	임야	공	관악구청				61.3 ~77.0	-5.74 ~15.96	
24	기 정	1690-1	도	310.8	37.5	임야	공	관악구청				5.8 ~21.5	-0.66 ~21.04	16
	변 경	1690-1	도	310.8	37.5	임야	공	관악구청				11.5 ~27.2	-3.46 ~18.24	
25	기 정	1707-2	공	1,255.1	155.3	공원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17 ~32.7	-0.64 ~21.07	17
	변 경	1707-2	공	1,255.1	155.3	공원	재단법인성보 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7				18.8 ~34.5	-3.38 ~18.32	
26	기 정	산191-17	임	2,449	395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지상권	36.1 ~51.8	0.38 ~22.09	18
	변 경	산191-17	임	2,449	395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지상권	48.0 ~63.7	-4.46 ~17.24	
27	기 정	산191-13	임	4,675	822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지상권	38 ~53.7	0.44 ~22.15	19
	변 경	산191-13	임	4,675	822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지상권	45.6 ~61.3	-4.52 ~17.18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28	기 정	산191-13	임	4,675	65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지상권	38 ~53.7	0.44 ~22.15	19-1
	변 경	산191-13	임	4,675	65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지상권	55.9 ~71.6	-4.64 ~17.06	
29	기 정	산191-15	임	7,627	323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44.7 ~60.4	0.62 ~22.30	20
	변 경	산191-15	임	7,627	323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70.2 ~85.9	-4.69 ~17.01	
30	기 정	산191-15	임	7,627	1,256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44.7 ~60.4	0.62 ~22.30	20-1
	변 경	산191-15	임	7,627	1,256	임야	학교법인 성보학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73.2 ~88.9	-4.70 ~17.00	
31	기 정	산159-38	도	1,263	47	임야	공	관악구청				50.7 ~66.4	1.88 ~23.60	21
	변 경	산159-38	도	1,263	47	임야	공	관악구청				63.7 ~79.4	-6.01 ~15.69	
32	기 정	산159-34	임	33,481	6,646	임야	박남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4 푸른마을 403-703				50.8 ~66.5	2.03 ~23.74	22
	변 경	산159-34	임	33,481	6,646	임야	(주)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85.0 ~100.7	-6.05 ~15.65	
33	기 정	산159-34	임	33,481	66	임야	박남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4 푸른마을 403-703				50.8 ~66.5	2.03 ~23.74	22-1
	변 경	산159-34	임	33,481	66	임야	(주)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85.0 ~100.7	-6.05 ~15.65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34	기 정	산160-43	임	10,472	1,068	임야	장형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8 호자촌 610-901	김종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63-3	근저당권			
							송정모	서울시 동작구 본동 452-83						
							장호영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9-17						
							심만식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520-2 우성A 203-1009						
							조옥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20 우성A. 102-1006						
							고광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5-5 성지A. 105-206						
							심대섭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09-1 영동빌라 401				77.6 ~93.3	2.39 ~24.09	23
							심인섭	강원도 동해시 목호진동 2-32						
							심창섭	강원도 동해시 목호진동 2-32						
							심준섭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숙소 에이-220						
							장여진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A. 1-801						
							유영애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A. 1-801						
							장지훈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A. 1-80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변경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산160-43	임	10,472	1,068	임야	장형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62 610-901(서현동, 효자촌)	김종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56-3	근저당권			
								이시우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26, 102-209(산도동, 건영아파트)	김종국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18 성북삼가 씨동 305호	근저당권			
								장호영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9-17	정종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A. 1-1307				
								심만식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520-2 우성A. 203-1009						
								조옥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20 우성A. 102-1006						
								고광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5-5 성지A. 105-206						
								심대섭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09-1 영동빌라 401				107.2 ~122.9	-6.52 ~15.18	23
								소대섭	충북 청주시 흥덕구 호국로37번길 38, 304호(사직동, 삼영맨션)						
								하미양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5-2403(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심준섭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숙소 에이-220						
								장려진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A. 1-801						
								유영애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A. 1-801						
								장지훈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A. 1-80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35	기 정	산160-43	임	10,472	537	임야	장형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8 효자촌 610-901	김종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63-3	권리종류 및 내역 근저당권			
							송정모	서울시 동작구 본동 452-83						
							장호영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9-17						
							심만식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520-2 우성 A 203-1009						
							조옥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20 우성 A 102-1006						
							고광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5-5 성지 A 105-206						
							심대설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09-1 영동빌라 401				77.6 ~93.3	2.39 ~24.09	23
							심인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2-32						
							심창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2-32						
							심준섭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속소 에이-220						
							장여진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 A 1-801						
							유영애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 A 1-801						
							장지훈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 A 1-80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변경	산160-43	임	10,472	537	임야	장형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62 610-901(서현동, 효자촌)	김종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56-3	근저당권			
							이시우	서울시 동작구 민양로 26, 102-209(상도동, 건영아파트)	김종국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18 성북상가 씨동 305호	근저당권			
							장호영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9-17	정종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A. 1-1307				
							심만식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520-2 우성A. 203-1009						
							조옥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20 우성A. 102-1006						
							고광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5-5 성지A. 105-206						
							심대섭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09-1 영동빌라 401				109.3 ~125.0	-6.41 ~15.29	23
							소대섭	충북 청주시 흥덕구 호국로37번길 38, 304호(사직동, 삼영맨션)						
							하미양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5-2403(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심준섭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숙소 에이-220						
							장려진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A. 1-801						
							유영애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A. 1-801						
							장지훈	전남 목포시 용해동 400-1 라이프A. 1-80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36	기 정	산156-1	임	70,376	11,924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19.9 ~35.6	4.11 ~24.82	24
	변 경	산156-1	임	70,376	11,924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54.2 ~69.9	-6.36 ~15.34	
37	기 정	산156-1	임	70,376	66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19.9 ~35.6	4.11 ~24.82	24-1
	변 경	산156-1	임	70,376	66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85.4 ~101.1	-5.34 ~16.36	
38	기 정	산156-1	임	70,376	121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19.9 ~35.6	4.11 ~24.82	24-2
	변 경	산156-1	임	70,376	121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54.6 ~70.3	-6.58 ~15.12	
39	기 정	산156-2	임	2,579	550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16.9 ~32.6	4.08 ~26.03	25
	변 경	산156-2	임	2,579	550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28.62 ~44.32	-7.64 ~14.31	
40	기 정	산156-2	임	2,579	234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16.9 ~32.6	4.08 ~26.03	25-1
	변 경	산156-2	임	2,579	234	임야	전주이씨 근녕군 파종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57-3 근영빌딩601호				28.62 ~44.32	-7.64 ~14.31	
41	기 정	830	도	555	115	도로	국	국토교통부				16.9 ~32.6	4.13 ~26.06	26
	변 경	830	도	555	115	도로	국	국토교통부				28.62 ~44.32	-7.59 ~14.34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2	기 정	394-17	대	278	3	대지	이선숙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94-17					15.5 ~31.2	4.13 ~26.06	27
	변 경	394-17	대	278	3	대지	이선숙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94-17					27.22 ~42.92	-7.59 ~14.34	
43	기 정	394-19	대	169	54	대지	이근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49-19					13.6 ~29.3	4.13 ~26.06	28
	변 경	394-19	대	169	54	대지	이근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49-19					25.32 ~41.02	-7.59 ~14.34	
44	기 정	394-20	대	162	113	대지	조은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93-111					13.6 ~29.3	4.16 ~26.09	29
	변 경	394-20	대	162	113	대지	조은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93-111					25.32 ~41.02	-7.56 ~14.37	
45	기 정	394-21	대	155	149	대지	윤봉섭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94-21					12.8 ~28.5	4.19 ~26.13	30
	변 경	394-21	대	155	149	대지	윤봉섭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94-21					24.52 ~40.22	-7.53 ~14.41	
46	기 정	394-24	대	195	2	대지	윤만상	서울시 도봉구 창동 820 신도브레뉴A.101-402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12.8 ~28.5	4.21 ~26.14	31
	변 경	394-24	대	195	2	대지	윤만상	서울시 도봉구 창동 820 신도브레뉴A.101-402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24.52 ~40.22	-7.51 ~14.42	
47	기 정	394-26	대	182	126	대지	이혁범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1길 20, 204-1406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12.8 ~28.5	4.23 ~26.17	32
	변 경	394-26	대	182	126	대지	이혁범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1길 20, 204-1406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24.52 ~40.22	-7.49 ~14.45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편의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48	기정	394-27	대	115	12	대지	대지	배인숙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96-43				12.8 ~28.5	4.26 ~26.20	33	
	변경	394-27	대	115	12	대지	대지	배인숙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96-43				24.52 ~40.22	-7.46 ~14.48		
49	기정	808-494	천	3,490	298	하천	하천	국	국토교통부				12.1 ~27.8	4.29 ~26.23	34	
	변경	808-494	천	3,490	298	하천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82 ~39.52	-7.43 ~14.51		
50	기정	808-494	천	3,490	292	하천	하천	국	국토교통부				12.1 ~27.8	4.29 ~26.23	34-1	
	변경	808-494	천	3,490	292	하천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82 ~39.52	-7.43 ~14.51		
51	기정	808-540	대	124	58	대지	대지	공	서울특별시				11 ~26.7	4.37 ~26.31	35	
	변경	808-540	대	124	58	대지	대지	공	서울특별시				22.72 ~38.42	-7.35 ~14.59		
52	기정	1513	대	194.7	29.1	대지	대지	공	서울특별시				11.7 ~27.4	4.38 ~26.32	36	
	변경	1513	대	194.7	29.1	대지	대지	공	서울특별시				24.02 ~39.72	-7.94~ 14		
53	기정	808-416	천	404	81	하천	하천	국	국토교통부				11 ~26.7	4.40 ~26.33	37	
	변경	808-416	천	404	81	하천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32 ~39.02	-7.92 ~15.0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54	기정	289-3	도	2,688	1,587	도로	공	관악구청					12 ~27.7	4.66 ~26.60	38
	변경	289-3	도	2,688	1,671	도로	공	관악구청					24.32 ~40.02	-7.66 ~14.28	
55	기정	289-3	도	2,688	19	도로	공	관악구청					12 ~27.7	4.66 ~26.60	38-1
	변경	289-3	도	2,688	19	도로	공	관악구청					24.32 ~40.02	-7.66 ~14.28	
56	기정	808-1	천	4,403	582	하천	국	국토교통부					10.9 ~26.6	4.51 ~26.46	39
	변경	808-1	천	4,403	582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22 ~38.92	-7.81 ~14.14	
57	기정	289-5	도	219	129	도로	공	서울특별시					10.9 ~26.6	4.52 ~26.46	40
	변경	289-5	도	219	129	도로	공	서울특별시					23.22 ~38.92	-7.80 ~14.14	
58	기정	288-7	도	174	1	도로	공	서울특별시					10.9 ~26.6	4.58 ~26.52	41
	변경	288-7	도	174	1	도로	공	서울특별시					23.22 ~38.92	-7.74 ~14.20	
59	기정	808-404	천	601	443	하천	국	국토교통부					11.8 ~27.5	4.78 ~26.73	42
	변경	808-404	천	601	443	하천	국	국토교통부					24.12 ~39.82	-7.94 ~14.0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 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0	기정	116-5	도	2,303	1,453	도로	공	서울특별시					12.1 ~27.8	5.01 ~26.96	43
	변경	116-5	도	2,303	1,453	도로	공	서울특별시					24.82 ~40.52	-7.71 ~14.24	
61	기정	116-26	대	337	14	대지	김장운	서울시 관악구 장군봉2길 24(봉천동)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12.1 ~27.8	4.97 ~26.91	44
	변경	116-26	대	337	14	대지	김장운	서울시 관악구 장군봉2길 24(봉천동)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24.82 ~40.52	-7.75 ~14.19	
62	기정	116-18	도	427	12	도로	공	관악구청					12.1 ~27.8	4.99 ~26.93	45
	변경	116-18	도	427	12	도로	공	관악구청					24.82 ~40.52	-7.4 ~14.54	
63	기정	116-13	대	331	35	대지	김운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16-13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84(신림남부지점)	근저당권	12 ~27.7	5.02 ~26.97	46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84(신림동지점)	근저당권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84(신림남부지점)	근저당권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84(신림동지점)	근저당권	24.39 ~40.09	-7.37 ~14.58		
									서울특별시 신길6동세마 을금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086	구분지상권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64	기정	116-12	대	331	29	대지	김성완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1267 벽산한성아파트808-902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12.2 ~27.9	5.09 ~27.00	47
	변경	116-12	대	331	29	대지	김성완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1267 벽산한성아파트808-902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24.59 ~40.29	-7.3 ~14.6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 명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65	기 정	116-11	대	331	16	대지	한명규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12(신림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신림본동지점, 신림역지점)	근저당권	12.3 ~28.0	5.12 ~27.05	48	48
	변 경	116-11	대	331	16	대지	한명규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12(신림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신림본동지점, 신림역지점)	근저당권 구분지상권	24.69 ~40.39	-7.27 ~14.66		
66	기 정	116-35	천	325	103	하천	공	서울특별시				12.4 ~28.1	5.21 ~27.15	49	49
	변 경	116-35	천	325	103	하천	공	서울특별시				24.79 ~40.49	-7.18 ~14.76		
67	기 정	116-35	천	325	7	하천	공	서울특별시				12.4 ~28.1	5.21 ~27.15	49-1	49-1
	변 경	116-35	천	325	7	하천	공	서울특별시				24.79 ~40.49	-7.18 ~14.76		
68	기 정	116-10	대	296.0	4	대지	이종언	서울시 중구 퇴계로 447, 비동 1703호	서울특별시			12.4 ~28.1	5.15 ~27.09	50	50
	변 경	116-10	대	296.0	4	대지	이종언	서울시 중구 퇴계로 447, 비동 1703호	서울특별시			24.79 ~40.49	-7.24 ~14.7		
69	기 정	116-29	대	13	9	대지	공	관악구청				12.4 ~28.1	5.21 ~27.15	51	51
	변 경	116-29	대	13	9	대지	공	관악구청				24.79 ~40.49	-7.18 ~14.76		
70	기 정	838-21	도	109	105	도로	국	국토교통부				12.6 ~28.3	5.27 ~27.21	52	52
	변 경	838-21	도	109	105	도로	국	국토교통부				24.99 ~50.69	-7.12 ~14.82		
71	기 정	117-10	도	397	321	도로	공	서울특별시				12.7 ~28.4	5.36 ~27.30	53	53
	변 경	117-10	도	397	321	도로	공	서울특별시				24.03 ~39.43	-5.97 ~15.97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72	기 정	808-406	천	1,844	1,839	하천	국	국토교통부				13.8 ~29.5	5.63 ~27.57	54
	변 경	808-406	천	1,844	1,839	하천	국	국토교통부				25.13 ~40.83	-5.7 ~16.24	
73	기 정	838-10	도	11	7	도로	국	국토교통부				10 ~25.7	5.44 ~27.39	55
	변 경	838-10	도	11	7	도로	국	국토교통부				21.33 ~37.03	-5.89 ~16.06	
74	기 정	118-5	도	2,216	368	도로	공	관악구청				13.3 ~29.0	5.56 ~27.51	53
	변 경	118-11	도	522	398	도로	공	관악구청				24.6 ~40.33	-5.77 ~16.18	
75	기 정	808-134	천	9,099	2,058	하천	국	국토교통부				12.6 ~28.3	5.56 ~27.51	57
	변 경	808-134	천	9,099	2,058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93 ~39.63	-5.77 ~16.18	
76	기 정	808-134	천	9,099	62	하천	국	국토교통부				12.6 ~28.3	5.56 ~27.51	57-1
	변 경	808-134	천	9,099	62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93 ~39.63	-5.77 ~16.18	
77	기 정	808-134	천	9,099	108	하천	국	국토교통부				12.6 ~28.3	5.56 ~27.51	57-2
	변 경	808-134	천	9,099	95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93 ~39.63	-5.77 ~16.18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78	기정	816-11	구	5	1	도로	국	국토교통부					13.8 ~29.5	5.66 ~27.60	58
	변경	816-11	구	5	1	도로	국	국토교통부					23.55 ~39.25	-4.09 ~17.85	
79	기정	815-8	도	105	80	도로	국	국토교통부					13.8 ~29.5	5.74 ~27.69	59
	변경	815-8	도	105	80	도로	국	국토교통부					23.55 ~39.25	-4.11 ~17.94	
80	기정	131-35	도	1,844	9	도로	공	서울특별시					13.8 ~29.5	5.71 ~27.66	60
	변경	131-35	도	1,844	9	도로	공	서울특별시					23.55 ~39.25	-4.04 ~17.91	
81	기정	239-4	도	1,153	758	도로	공	관악구청					14.2 ~29.9	5.74 ~27.69	61
	변경	239-4	도	1,153	776	도로	공	관악구청					23.95 ~39.65	-4.01 ~17.94	
82	기정	815-2	도	140	123	도로	국	국토교통부					14.5 ~30.2	5.95 ~27.90	62
	변경	815-2	도	140	123	도로	국	국토교통부					22.64 ~38.34	-2.19 ~19.76	
83	기정	131-15	도	17	13	도로	공	관악구청					14.5 ~30.2	5.95 ~27.90	63
	변경	131-15	도	17	13	도로	공	관악구청					22.64 ~38.34	-2.19 ~19.76	
84	기정	131-7	도	910	893	도로	공	관악구청					15.2 ~30.9	6.40 ~28.35	64
	변경	131-7	도	910	893	도로	공	관악구청					23.44 ~39.04	-1.74 ~20.2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경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관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면적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85	기	정	131-13	전	33	22	대지	백상규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7				14.7 ~30.4	6.04 ~27.94	65
								박정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1길 13, 1층동101호						
								백운수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1길 13, 1층동101호						
								월리암창수백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129 산디아고시 사타나스 스트리트 14836						
								조성률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20 201호						
								데미안성준조	미합중국 뉴저지주 서머셋 리비아가 8						
								리상미	미합중국 매릴랜드주 하거스타운 세인트 클레인가 1021						
								조성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20 201호						
								백홍진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52-7						
								송영자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60 강선마을 905-404						
								박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60 강선마을 905-404						
								이신원	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헤이스팅우드 5030						
								박정애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41(불광동)						
								백명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76						
								백명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1 한양3차A 104-113						
								백인진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16-503						
								경진백김	미합중국 매릴랜드주 포트맥시 르 하브르가 11524						
								은진백김머만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주 브린미워시 케네디가 125						
								송명식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52-1						
								송민자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96						
								송문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5, 501호						
								송미경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						
								송호식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가길 26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86	기정	808-386	천	249	179	하천	국	국토교통부					14.9 ~30.6	6.11 ~28.04	66
	변경	808-386	천	249	179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04 ~38.74	-2.03 ~19.9	
87	기정	131-21	대	675	34	대지	김응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3-306					14.7 ~30.4	6.11 ~28.04	67
							이혜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3-306							
	변경	131-21	대	675	34	대지	김응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3-306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22.84 ~38.54	-2.03 ~19.9	68
							이혜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3-306							
88	기정	808-128	천	7,800	1,304	하천	국	국토교통부					14.7 ~30.4	6.47 ~28.41	68
	변경	808-128	천	7,800	1,304	하천	국	국토교통부					22.84 ~38.54	-1.67 ~20.27	
89	기정	808-128	천	7,800	42	하천	국	국토교통부					14.7 ~30.4	6.47 ~28.41	68-1
	변경	808-128	천	7,800	52	하천	국	국토교통부					22.84 ~38.54	-1.67 ~20.27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90	기 정	808-128	천	7,800	1,183	하천	국	국토교통부					14.7 ~30.4	6.47 ~28.41	68-2
	변 경	808-128	천	7,800	1,232	하천	국	국토교통부					22.84 ~38.54	-1.67 ~20.27	
91	기 정	131-18	대	129	12	대지	김영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40-1		관악구청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462	입류	14.9 ~30.6	6.13 ~28.07	69
	변 경	131-18	대	129	12	대지	신종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3동 1104호		서울특별시 금천세무서 관악구청 양주시		입류			
							김성균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 507-303		서울특별시 금천세무서 관악구청		입류	23.04 ~38.74	-2.01 ~19.93	
							김재균	일본국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니시노야초 114-20 힐사이드아파트 1층		금천세무서 고양세무서 서초세무서		입류			
							김성희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5-502 까치산아파트 비-301		서울시		구분지상권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관리종류 및 내역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번호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2	기정	131-27	대	317	61	대지	김태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1길 53				14.9 ~30.6	6.13 ~28.07	70
							황연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60-6						
							김재형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1길 53						
	변경	131-27	대	317	61	대지	김태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1길 53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23.04 ~38.74	-0.4 ~21.54	
							황연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60-6						71
							김재형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1길 53				14.9 ~30.6	4.16 ~26.09	
93	기정	393-22	대	142	8	대지	임재학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93-22				26.62 ~42.32	-2.37 ~19.56	72
	변경	393-22	대	142	8	대지	양복희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1가길 11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94	기정	393-21	대	188	143	대지	송병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93-21	관악농업협동 조합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51(신림지점)	근저당권	14.9 ~30.6	4.16 ~26.09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75길 34, 비동601호	관악구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51(신림지점)	압류			
	변경	393-21	대	188	143	대지	김정규		유수경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368-1 서초NH4단지 401-302	가압류			73
									권민정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씨동 404호	가압류	26.62 ~42.32	-2.37 ~19.56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1, 1807-1004	강현구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신우길 11	근저당권 압류			
							박상훈		(주)우리은행 (신림2동지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95	기정	393-32	도	107	16	도로	공	관악구청				13.1 ~28.8	4.17 ~26.10	73
	변경	393-32	도	107	16	도로	공	관악구청				24.82 ~40.52	-7.55 ~14.38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구분지상권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96	기정	393-1	대	175	19	대지	서종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93-1				12.8 ~28.5	4.16 ~26.09	74
	변경	393-1	대	175	19	대지	서종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93-1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24.52 ~40.22	-7.54 ~14.37	
97	기정	393-20	대	185	149	대지	박금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93-20				13.1 ~28.8	4.18 ~26.13	75
	변경	393-20	대	185	149	대지	박금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55 화원엄립 203호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24.82 ~40.52	-7.56~ 14.41	
98	기정	393-19	대	165	143	대지	김덕향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93-19				12.1 ~27.8	4.22 ~26.16	76
	변경	393-19	대	165	143	대지	이주현	서울시 관악구 양지길 8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23.82 ~39.5	-7.5 ~14.44	
							김희진	서울시 관악구 양지길 8						77
99	기정	393-18	도	199	82	도로	공	관악구청				12.1 ~27.8	4.25 ~26.18	
	변경	393-18	도	199	82	도로	공	관악구청				23.82 ~39.5	-7.47 ~14.46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구분지상권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100	기정	393-31	대	97	29	대지	박희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78 백조아파트 비 102				12.1 ~27.8	4.28 ~26.21	78
							김영복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93-31						
							김미숙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8 서광A.101-1802						
	변경	393-31	대	97	29	대지	김용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54						
							안영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54						
							송강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54-57	서울특별시					
							김미숙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8 서광A.101-1802				구분지상권	-7.44 ~14.49	
							박경화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26길 97						79
							김병만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55, 231동 1102호						
101	기정	808-117	천	4,107	98	하천	국	국토교통부				12.1 ~27.8	4.34 ~26.28	79
	변경	808-117	천	4,107	98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82 ~39.5	-7.38 ~14.56	
102	기정	808-117	천	4,107	102	하천	국	국토교통부				12.1 ~27.8	4.34 ~26.28	79-1
	변경	808-117	천	4,107	102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82 ~39.5	-7.38 ~14.56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관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103	기정	808-418	천	2,977	125	하천	국	국토교통부				11 ~26.7	4.37 ~26.31	80
	변경	808-418	천	2,977	125	하천	국	국토교통부				22.72 ~38.42	-7.35 ~14.59	
104	기정	808-418	천	2,977	114	하천	국	국토교통부				11 ~26.7	4.37 ~26.31	80-1
	변경	808-418	천	2,977	114	하천	국	국토교통부				22.72 ~38.42	-7.35 ~14.59	
105	기정	1513-7	대	495.8	189.2	대지	김상기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14						81
							박종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A. 110-301						
							박종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13-7						
							김호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14						
							박옥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26-11						
	변경	1513-7	대	495.8	189.2	대지	김상기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14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박종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A. 110-301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박종진	서울시 관악구 원신길 11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김호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14						
							박옥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26-11						
							박유철	충천시 후석로 325, 105-806						
							조혜영	충천시 후석로 325, 105-806						
							황지영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208-701				23.62 ~39.32	-7.92 ~14.02	
							박유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8-70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106	기정	1513-1	대	849.9	391	대지	김성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0-1파크힐 3층-304	(주)푸른이상호 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1-11 (잠실지점)	근저당권	11.9 ~27.6	4.46 ~26.40	82
							김성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A. 509-602	(주)현대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권			
							김성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6 보라매삼성채르빌 805						
	변경	1513-1	대	849.9	391	대지	김성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0-1파크힐 3층-304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김성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A. 509-602						
							김성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6 보라매삼성채르빌 805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24.22 ~39.92	-7.86 ~14.08	82-1
							박애자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136						
							김영원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136						
							김효정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136						
							김혜원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136						
107	기정	1513-1	대	849.9	50	대지	김성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0-1파크힐 3층-304	(주)푸른이상호 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1-11 (잠실지점)	근저당권	11.9 ~27.6	4.46 ~26.40	
							김성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A. 509-602	(주)현대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권			
							김성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6 보라매삼성채르빌 805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변경	1513-1	대	849.9	50	대지	김성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0-1파크힐 3층-304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김성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A. 509-602							
							김성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6 보라매삼성세르빌 805	(주)하나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박애자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136					24.22 ~39.92	-7.86 ~14.08	82-1
							김영원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136							
							김효정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136							
							김혜원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136							
108	기정	1513-2	대	666.7	225.4	대지	정희숙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4-8 대리이크로빌 2105호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양천지점)	근저당권	12.2 ~27.9	4.48 ~26.42	
	변경	1513-2	대	666.7	225.4	대지	정희숙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97 2105호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양천지점)	근저당권	24.52 ~40.22	-7.84 ~14.2	83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109	기정	289-4	도	5	1	도로	공	서울특별시				10.9 ~26.6	4.58 ~26.52	84
	변경	289-4	도	5	1	도로	공	서울특별시				23.62 ~39.32	-8.14 ~13.8	
110	기정	1514	대	665.3	113.2	대지	조용안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14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울업무지원센터)	근저당권	12 ~27.7	4.67 ~26.70	85
	변경	1514	대	665.3	113.2	대지	조용안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31, 2402호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울업무지원센터)	근저당권 구분지상 권	24.72 ~40.42	-8.05 ~13.98	
111	기정	286-24	도	816	187	도로	공	서울특별시				12 ~27.7	4.88 ~26.82	86
	변경	286-24	도	816	187	도로	공	서울특별시				24.72 ~40.42	-7.84 ~14.1	
112	기정	1514-1	주	497.1	65.7	대지	이대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14-1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림남부지점)	근저당권	11.9 ~27.6	4.73 ~26.67	87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816, 510-2003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림남부지점)	근저당권		-7.99 ~13.95	
	변경	1514-1	주	497.1	65.7	대지	이대근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23.62 ~39.32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113	기정	1514-10	대	309.8	7.9	대지	김영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1동703호				11.9 ~27.6	4.73 ~26.67	88
	변경	1514-10	대	309.8	7.9	대지	김영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1동703호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23.62 ~39.32	-7.93 ~14.01	
114	기정	285-5	도	182	39	도로	공공	서울특별시				12.2 ~27.9	4.83 ~26.77	89
	변경	285-5	도	182	39	도로	공공	서울특별시				24.92 ~40.62	-7.89 ~14.05	
115	기정	821-1	구	98	53	도로	국	국토교통부				12.3 ~28.0	4.94 ~26.88	90
	변경	821-1	구	98	53	도로	국	국토교통부				24.93 ~40.72	-7.78 ~14.16	
116	기정	821-4	구	38	34	도로	국	국토교통부				12.3 ~28.0	4.94 ~26.88	91
	변경	821-4	구	38	34	도로	국	국토교통부				24.93 ~40.72	-7.78 ~14.16	
117	기정	270	도	1,651	1,214	도로	공공	서울특별시				13 ~28.7	5.27 ~27.21	92
	변경	270	도	1,651	1,214	도로	공공	서울특별시				25.39 ~41.09	-7.12 ~14.82	
118	기정	270-2	도	3	3	도로	공공	관악구청				12.4 ~28.1	5.05 ~27.00	93
	변경	270-2	도	3	3	도로	공공	관악구청				24.79 ~39.49	-7.34 ~14.6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119	기정	808-40 5	천	278	278	하천	국	국토교통부					13 ~28.7	5.21 ~27.15	94
	변경	808-40 5	천	278	278	하천	국	국토교통부					25.39 ~41.09	-7.18 ~14.76	
120	기정	270-3	도	148	116	도로	공	관악구청					13.3 ~29.0	5.51 ~27.45	95
	변경	270-3	도	148	116	도로	공	관악구청					24.63 ~40.33	-5.82 ~16.12	
121	기정	820-1	도	24	17	도로	국	국토교통부					13.8 ~29.5	5.52 ~27.46	96
	변경	820-1	도	24	17	도로	국	국토교통부					25.23 ~40.83	-5.18 ~15.74	
122	기정	820-4	도	6	6	도로	국	국토교통부					13.8 ~29.5	5.53 ~27.47	97
	변경	820-4	도	6	6	도로	국	국토교통부					23.55 ~39.25	-4.22 ~17.72	
123	기정	266-2	도	3	2	도로	공	서울특별시					13.8 ~29.5	5.53 ~27.47	98
	변경	266-2	도	3	2	도로	공	서울특별시					23.55 ~39.25	-4.22 ~17.72	
124	기정	266	도	199	104	도로	공	관악구청					13.8 ~29.5	5.54 ~27.48	99
	변경	266	도	199	104	도로	공	관악구청					23.55 ~39.25	-4.23 ~17.73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125	기정	818-49	구	80	78	도로	국	국토교통부					13.6 ~29.3	5.55 ~27.49	100
	변경	818-49	구	80	78	도로	국	국토교통부					23.35 ~39.05	-4.24 ~17.74	
126	기정	818-15	구	132	84	도로	국	국토교통부					13.6 ~29.3	5.55 ~27.49	101
	변경	818-15	구	132	84	도로	국	국토교통부					23.35 ~39.05	-4.24 ~17.74	
127	기정	239-1	도	829	516	도로	공	서울특별시					14.3 ~30.0	5.75 ~27.69	102
	변경	239-1	도	829	516	도로	공	서울특별시					24.05 ~39.75	-4.0 ~17.94	
128	기정	241-9	도	430	174	도로	공	서울특별시					14.6 ~30.3	5.90 ~27.84	103
	변경	241-9	도	430	174	도로	공	서울특별시					22.74 ~38.44	-2.24 ~19.7	
129	기정	241-121	도	57	16	도로	김영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171					14.7 ~30.4	5.95 ~27.89	104
	변경	241-121	도	57	16	도로	재단법인인화량 주택재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22.84 ~38.54	-2.19 ~19.75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130	기정	241-14	도	31	31	도로	백상규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7				14.7 ~30.4	5.95 ~27.89	105
	변경	241-14	도	31	31	도로	박정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1길 13, 1층동101호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백운수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1길 13, 1층동101호						
							월리암창수백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129 산디아고시 사타나스 스트리트 14836						
							조성률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20 201호						
							데미안성준조	미합중국 뉴저지주 서머셋 리버아가 8						
							리성미	미합중국 매릴랜드주 허거스타운 세인트 클레인가 1021				22.84 ~38.54	-2.19 ~19.75	
							조성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20 201호						
							백홍진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52-7						
							송영자	고양시 일산서구 주업동 60 강선마을 905-404						
							박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업동 60 강선마을 905-404						
							이신원	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헤이스팅우드 5030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변경	241-14	도	31	31	도로	박정애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41(불광동)						
							백명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76						
							백명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1 한양3차A 104-113						
							경진백김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포트맥시 르 하브르가 11524						
							은진백김머만	미합중국 팬실베이니아주 브린미워시 캐네디가 125						
							송명식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52-1				22.84 ~38.54	-2.19 ~19.75	105
							송민자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96						
							송문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5, 501호						
							송미경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						
							송호식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가길 26						
							김진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201-2101						
							김정원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9, 705호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131	기정	241-120	도	12	9	도로	백상규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7				14.7 ~30.4	5.95 ~27.89	106
	변경	241-120	도	12	9	도로	박정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1길 13, 1층동101호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백운수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1길 13, 1층동101호						
							윌리엄창수백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129 산디아고시 사타나스 스트리트 14836						
							조성률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20 201호						
							데미안성준조	미합중국 뉴저지주 서머셋 리버아가 8						
							리성미	미합중국 매릴랜드주 허거스타운 세인트 클레인가 1021				22.84 ~38.54	-2.19 ~19.75	
							조성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20 201호						
							백홍진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52-7						
							송영자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60 강선마을 905-404						
							박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60 강선마을 905-404						
							이신원	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헤이스팅우드 5030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변 경	241-120	도	12	9	도로	박정애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41(불광동)							
							백명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76							
							백명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1 한양3차A 104-113							
							경진백김	미합중국 매릴랜드주 포트맥시 르 하브르가 11524							
							은진백김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주 브린미워시 케네디가 125							
							송명식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52-1					22.84 ~38.54	-2.19 ~19.75	106
							송민자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96							
							송문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5, 501호							
							송미경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							
							송호식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가길 26							
							김진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201-2101							
							김정원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9, 702호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132	기 정	241-122	도	132	132	도로	공	관악구청					14.7 ~30.4	5.99 ~27.93	107
	변 경	241-122	도	132	132	도로	공	관악구청					22.84 ~38.54	-2.15 ~19.79	
133	기 정	241-1	도	413	132	도로	공	서울특별시					14.7 ~30.4	6.01 ~27.95	108
	변 경	241-1	도	413	132	도로	공	서울특별시					22.84 ~38.54	-2.13 ~19.81	
134	기 정	237-3	도	1,676	659	도로	공	서울특별시					14.7 ~30.4	6.07 ~28.01	109
	변 경	237-3	도	1,676	659	도로	공	서울특별시					22.84 ~38.54	-2.07 ~19.87	
135	기 정	808-130	천	476	385	하천	국	국토교통부					14.6 ~30.3	6.17 ~28.11	110
	변 경	808-130	천	476	385	하천	국	국토교통부					22.74 ~38.44	-1.97 ~19.97	
136	기 정	808-390	천	192	106	하천	국	국토교통부					15.1 ~30.8	6.17 ~28.11	111
	변 경	808-390	천	192	106	하천	국	국토교통부					23.24 ~38.94	-1.97 ~19.97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 명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 피 심 도	구 분 지 상 권 설정범위	조 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137	기 정	815-6	도	148	114	도로	국	국토교통부					14.9 ~30.6	6.18 ~28.12	112
	변 경	815-6	도	148	114	도로	국	국토교통부					21.43 ~37.13	-0.35 ~21.59	
138	기 정	131-29	대	317	53	대지	임항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1-29					15.2 ~30.9	6.23 ~28.17	113
							임항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1-29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변 경	131-29	대	317	53	대지	임종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 이동1004호	우리은행 (신림로지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21.73 ~37.43	-0.3 ~21.64	
									금천세무서			근저당권			
139	기 정	131-39	대	167	8	대지	박봉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1-39	(주)에스 리테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근저당권			114
	변 경	131-39	대	167	8	대지	박봉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로8길 7	관악농업협동 조합	관악농업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1(신림지점)	근저당권	15.2 ~30.9	6.24 ~28.18	
140	기 정	131-30	대	331	18	대지	박구중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1-30 4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1(신림지점)	구분지상권	21.73 ~37.43	-0.29 ~21.65	115
	변 경	131-30	대	331	18	대지	박구중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84	(주)대아건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0-11 테이빌딩	전세권	15.4 ~31.1	6.29 ~28.23	-0.24 ~21.7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역			
141	기정	815-1	도	249	236	도로	국	국토교통부					15.6 ~31.3	6.47 ~28.41	116
	변경	815-1	도	249	236	도로	국	국토교통부					22.13 ~37.83	-0.06 ~21.88	
142	기정	132	도	397	295	도로	공	관악구청					15.6 ~31.3	6.47 ~28.41	117
	변경	132	도	397	295	도로	공	관악구청					22.13 ~37.83	-0.06 ~21.88	
143	기정	808-387	천	1,194	665	하천	국	국토교통부					19.6 ~35.3	6.77 ~28.71	118
	변경	808-387	천	1,194	669	하천	국	국토교통부					24.43 ~40.08	0.24 ~22.18	
144	기정	산3-8	도	595	323	도로	공	서울특별시					16.6 ~32.3	6.77 ~28.71	119
	변경	산3-8	도	595	323	도로	공	서울특별시					21.38 ~37.08	0.24 ~22.18	
145	기정	103-298	도	296	58	도로	공	서울특별시					16.7 ~32.4	6.79 ~28.73	120
	변경	103-298	도	296	58	도로	공	서울특별시					19.61 ~35.31	3.88 ~25.82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146	기정	103-283	대	10	2	대지	이인상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31번가 23-54				16.7 ~32.4	6.86 ~28.80	121
	변경	103-283	대	10	2	대지	이인상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31번가 23-54	관악구청 서울특별시		압류 구분지상 권	19.61 ~35.31	3.95 ~25.89	
147	기정	신4-5	임	1,050	25	임야	심경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 화랑A.3-703				16.9 ~32.6	6.88 ~28.82	122
							심능재	창원시 반림동 4-1 현대A.211-1005						
	변경	신4-5	임	1,050	25	임야	심경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 화랑A.3-703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심재철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0가길 15						
							심재욱	경주시 화랑로 64-1						
							김재인	미합중국 워싱턴주 뷰렌시 13가 레인 사우스웨스트 에이6호 12732						
							김재순	미합중국 워싱턴주 에드먼드시 98 에비뉴 22524				19.61 ~35.51	3.97 ~25.91	
							심태이비드재환	미합중국 워싱턴주 우드웨이시98020 그레이스톤 레인미스트 24141						
							심재호	미합중국 워싱턴주 버셀리 186 클레이스 사우스미스트 3806						
							심재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롯데캐슬아이비 102-2703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용			
148	기정	산4-6	임	308	306	임야	공	서울특별시				16.9 ~32.6	6.88 ~28.82	123
	변경	산4-6	임	308	306	임야	공	서울특별시				19.61 ~35.51	3.97 ~25.91	
149	기정	산4	임	14,113	51	임야	심경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 화랑A.3-703						124
							임능재	창원시 반림동 4-1 현대A.211-1005					6.95 ~28.89	
	변경	산4	임	14,113	51	임야	심경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 화랑A.3-703	서울특별시					
							심재철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07길 15			구분지상 권			
							심재욱	경주시 화랑로 64-1						
							김제인	미합중국 워싱턴주 부렌시 13가 레인 사우스웨스트 에이16호 12732						
							김재순	미합중국 워싱턴주 에드먼드시 98 에버뉴 22524				22.21 ~37.91	4.04 ~25.98	
							심데이비드재환	미합중국 워싱턴주 우드웨이시98020 그레이스톤 레인이스트 24141						
							심재호	미합중국 워싱턴주 바셀리 186 블레이크 사우스이스트 3806						
							심재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롯데캐슬아비비 102-2703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기정	변경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150	기정	산5-1		임		13,974	3,864	임야	주에스지세계물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9				33.1 ~48.8	7.32 ~29.27	125
	변경	산5-1		임		13,974	3,784	임야	주에스지세계물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9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34.51 ~50.21	4.79 ~26.74	
151	기정	산6-1		임		47,112	1,861	임야	현이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21	(주)한국제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8-6	근저당권			126
											(주)무림제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5	근저당권	37.9 ~53.6	8.34 ~30.08	
											(주)신무림제 지	진주시 상평동 281-1	근저당권			
	변경	산6-1		임		47,112	1,861	임야	현이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21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38.15 ~53.6	7.09 ~28.83	126
152	기정	산6-1		임		47,112	810	임야	현이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21	(주)한국제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8-6	근저당권			126-1
											(주)무림제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5	근저당권	37.9 ~53.6	8.34 ~30.08	
											(주)신무림제 지	진주시 상평동 281-1	근저당권			
	변경	산6-1		임		47,112	810	임야	현이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21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38.15 ~53.6	7.09 ~28.83	126-1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153	기정	산7-1	임	32,826	4,661	임야	김정선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0							
							김세민	서울시 강동구 송파동 133							
							김형숙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4 현대A.105-802							
							김혜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0-62							
							김준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5-13							
							김혜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5-13							
							김준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5-13					48.4 ~64.1	10.46 ~32.48	127
							엄지현	인천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2-903							
							엄태익	인천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2-903							
							김정호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5-34							
							김정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5-50 비-302							
							김정철	미합중국 뉴욕시 부루크린 제이스트리트 230 아파트 4지호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변경	산7-1	임	32,826	4,661	임야	김혜란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동 702호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48.65 ~64.35 9.5 ~31.52 127
							김준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8길 62, 301호						
							김혜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5-13						
							김준희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702호						
							김정선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7-8, 201호						
							엄지현	인천시 연서구 해돋이로 107, 1동4203호						
							김정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동 504호						
							김정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308-407						
							김정일	서울시 서초구 식유촌길 84-0						
							김정호	미합중국 뉴욕 11361, 베이사이드46 애버뉴 202-40						
							김형숙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썬동 1003호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면 적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 피 심 도	구 분 지 상 권 설 정 범 위	조 서 번 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변경	신7-1	임	32,826	2,539	임야	김혜란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동 702호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48.65 ~64.35	9.5 ~31.52	127-1
							김준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8길 62, 301호						
							김혜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5-13						
							김준희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702호						
							김정선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7-8, 201호						
							엄지현	인천시 연서구 해돋이로 107, 1동4203호						
							김정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동 504호						
							김정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308-407						
							김정일	서울시 서초구 식유촌길 84-0						
							김정호	미합중국 뉴욕 11361, 베이사이드46 예비뉴 202-40						
							김형숙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씨동 1003호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154	기정	815-5	도	31	1	도로	국	국토교통부					15.4 ~31.1	6.24 ~28.18	128
	변경	815-5	도	31	5	도로	국	국토교통부					21.75 ~37.45	-0.29 ~21.65	
155	기정	131-41	도	4	1	도로	공	서울특별시					15.4 ~31.1	6.24 ~28.18	129
	변경	131-41	도	4	1	도로	공	서울특별시					21.75 ~37.45	-0.29 ~21.65	
156	기정	808-389	천	3	3	하천	국	국토교통부					15.4 ~31.1	6.25 ~28.19	130
	변경	808-389	천	3	3	하천	국	국토교통부					21.75 ~37.45	-0.28 ~21.64	
157	기정	815-4	도	3	3	도로	국	국토교통부					15.4 ~31.1	6.34 ~28.28	131
	변경	815-4	도	3	3	도로	국	국토교통부					21.75 ~37.45	-0.19 ~21.75	
158	기정	237-31	도	15	10	도로	공	관악구청					15.9 ~31.6	6.47 ~28.41	132
	변경	237-31	도	15	10	도로	공	관악구청					20.68 ~36.38	1.69 ~23.63	
159	기정	808-388	천	66	66	하천	국	국토교통부					16.3 ~32.0	6.62 ~28.56	133
	변경	808-388	천	66	66	하천	국	국토교통부					21.08 ~36.78	0.09 ~22.03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역			
160	기정	812-13	구	49	38	대지	국	국토교통부					16.3 ~32.0	6.62 ~28.56	134
	변경	812-13	구	49	38	대지	국	국토교통부					21.08 ~36.78	0.09 ~22.03	
161	기정	228-1	도	344	210	도로	공	서울특별시					16.5 ~32.2	6.68 ~28.62	135
	변경	228-1	도	344	210	도로	공	서울특별시					21.28 ~36.98	0.15 ~22.09	
162	기정	813-3	도	319	275	도로	국	국토교통부					16.5 ~32.2	6.71 ~28.65	136
	변경	813-3	도	319	275	도로	국	국토교통부					21.28 ~36.98	0.17 ~22.12	
163	기정	813-1	도	331	226.0	도로	국	국토교통부					16.5 ~32.2	6.71 ~28.65	137
	변경	813-1	도	331	226.0	도로	국	국토교통부					21.28 ~36.98	0.17 ~22.12	
164	기정	226-2	전	722	230	대지	유형목 외1인	전남 고흥군 고흥면 옥하리 175			미등기		14.1 ~29.8	6.86 ~28.80	138
	변경	226-2	전	722	230	대지	유형목 외1인	전남 고흥군 고흥면 옥하리 175			미등기		17.01 ~32.71	3.95 ~25.89	
165	기정	226	전	911	581	대지	공	서울특별시					13.5 ~29.2	6.89 ~28.83	139
	변경	226	전	911	581	대지	공	서울특별시					16.41 ~32.11	3.98 ~25.92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166	기 정	133-1	전	570	69	대지	이영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들마을 406-602						
							이종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A 423-401						
							이희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A 423-401						
							이진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A 423-401				29.9 ~45.6	7.35 ~29.29	
							이영협	미합중국 90703 켈리포니아주 시리토스시 케리트 에베뉴 17222						
							이영수	캐나다 브이301 3443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코퀴틀렘시 할렘고트 3167						
							이승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A 121-1206						
변 경	133-1	전	570	69	대지	이영협	이영협	미국 켈리포니아주 노스힐시 버넷가 9400120호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140
							이영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시 111에이가 15266						
							이승은	인천시 서구 검단로501번길 44, 1-402						
							이종효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00, 새동801호						
							이진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00, 새동801호				31.31 ~47.01	4.44 ~26.38	
							이희용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00, 새동901호						
							이승자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406-602						
							이진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7길 22, 101-903						
							이관준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 910-1102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명 :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토피 심도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조서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역			
167	기정	133	학	11,791	142	학교	공	서울특별시				32.1 ~47.8	8.01 ~29.98	141
	변경	133	학	11,791	142	학교	공	서울특별시				32.55 ~48.25	6.76 ~28.73	
168	기정	산7-3	임	1,642	462	임야	마순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37-1 삼호수정 A.102-1102				49.2 ~64.9	8.84 ~30.82	142
	변경	산7-3	임	1,642	462	임야	마순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37-1 삼호수정 A.102-1102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49.35 ~65.05	7.88 ~29.86	
169	기정	산7-2	임	1,587.0	655	임야	한주봉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525 우성아파트 107-805				49.1 ~64.8	10.46 ~32.48	143
	변경	산7-2	임	1,587.0	655	임야	한주봉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525 우성아파트 107-805	서울특별시		구분지상 권	49.25 ~64.95	9.5 ~31.52	
170	추가	1527	도	8,313.8	691	도	공	관악구청				24.52 ~40.22	-7.94 ~13.2	145
171	추가	산6-1	임	47,112	124	임야	현이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21				38.15 ~53.6	7.09 ~28.83	126- 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삼육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79.1.9.)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6호(2009.7.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4호(2011.3.31.), 제2014-105호(2014.3.20.)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삼육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21에 위치한 삼육대학교의 생활관(남)의 1개동의 수직증축과 미래관 외 1개동에 대하여 준공된 면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학교	대 학 (삼육대학교)	노원구 공릉동 26-21	173,141	-	173,141	서울시 고시 제 5 호 (1979.1.9)

※ 기 결정된 고시면적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6호(2009.7.9.)임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조서 (변경있음)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학교	노원구 공릉동 26-21	계	173,141	-	173,141	
			건축부지	30,370	감) 10	30,360	
			녹지부지	35,957	-	35,957	
			조경부지	26,934	증) 354	27,288	
			도로부지	58,562	감) 344	58,218	
			주차장부지	5,367	-	5,367	
			광장부지	1,288	-	1,288	
			운동장부지	14,663	-	14,663	

2)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용 적 륜(%)		높이의 범위(층,m)		비 고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8 이하	18 이하	55 이하	56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다. 건축물 계획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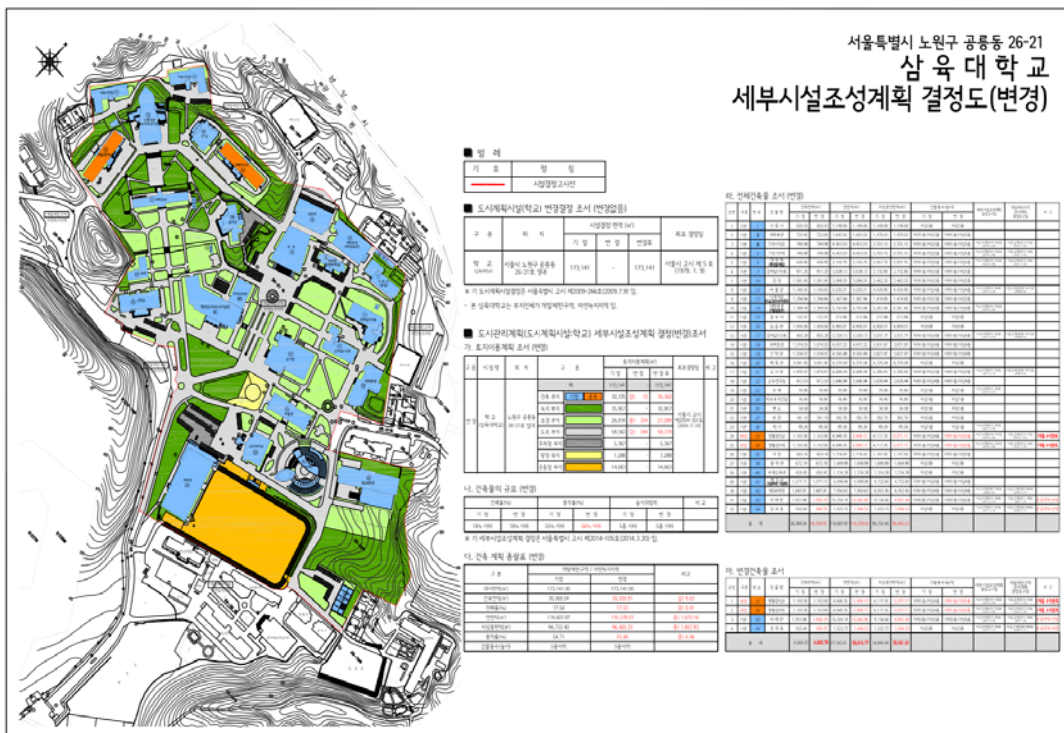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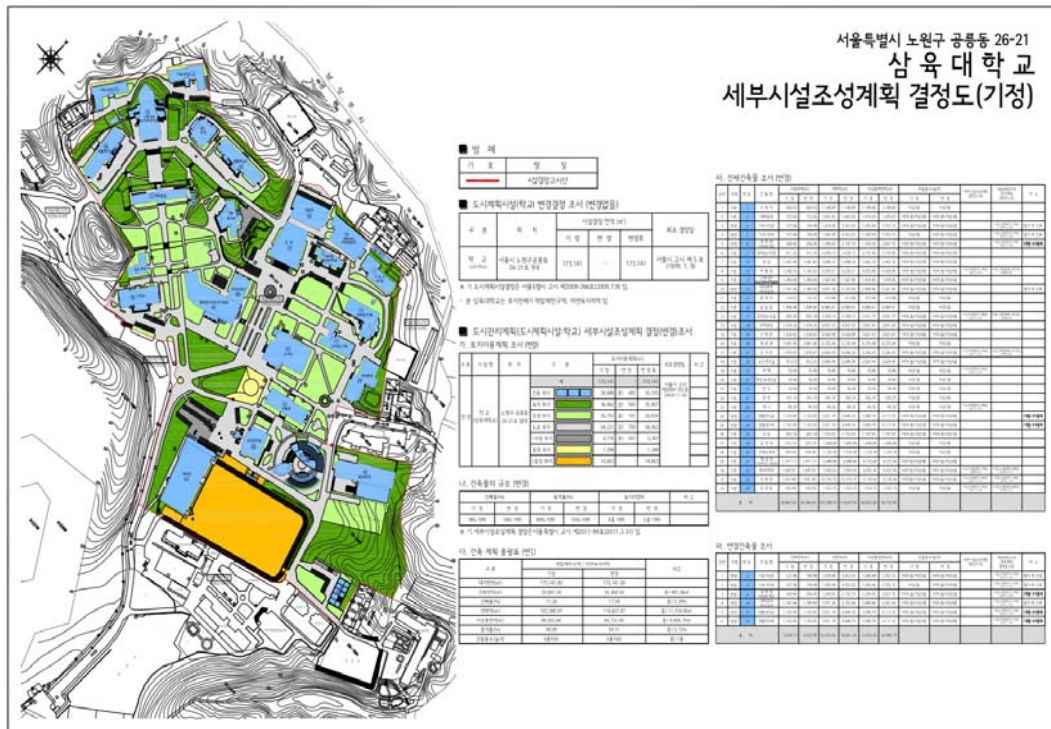
건물명	건 축 면 적(㎡이하)		연 면 적(㎡이하)		지상층연면적(㎡이하)		높이(층)		비고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생활관(남)	1,102.95	1,102.95	4,949.35	5,909.17	4,117.35	5,077.17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수직증축
생활관(여)	1,102.95	1,102.95	4,949.35	5,909.17	4,117.35	5,077.17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수직증축
미래관	1,951.88	1,936.19	15,724.19	15,540.90	9,136.66	8,951.04	지하2층 지상5층	지하2층 지상5층	준공면적 반영
강의동 (뉴스타트연구동)	502.64	508.70	1,522.72	1,456.53	1,522.72	1,456.53	지상3층	지상3층	준공면적 반영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2), 노원구 도시관리과(전화 2116-3866)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2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김민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2길 *1, **2호(본오동)	일시 : 2017-02-15 09:48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9m 초과	과태료: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홍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6*2, **5호(신읍동)	일시 : 2016-12-02 03:58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39m 초과	과태료:50만원
선재일	경기도 시흥시 하상로8번길 *-1, *0*호(하상동)	일시 : 2016-12-05 05:04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5.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 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37호

2017년도 제2차 서울시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용 자 신 청 제 한]

1. 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
 2. 추진위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3.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4. 용자금 상황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제(개)정 조합 등
 5.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관한 아래 규정 제(개)정 조합 등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2. 용자대상 우선순위 : 신청지역이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용자대상자를 결정한다
- 가. 용자 신규 신청자
- 나. 일부지역에 용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3. 용자금의 용도
- 가.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 나.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용자금의 한도
- 가. 담보대출 : 용자금액은 2017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 나. 신용대출
- 1)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2) 2017년 필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용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로 함.
- [추진위원회]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1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12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15억원
- [조 합]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2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3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40만㎡미만 : 최대 4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40만㎡이상 50만㎡미만 : 최대 5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50만㎡이상 : 최대 60억원
5. 용자금 지원
- 가. 지원예산 : 금8,798백만원(도정 8,655, 재축 143)
- '17년 예산 : 16,043백만원, 제1차 지원결정액 : 7,245백만원
- 나. 지급방법 :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
(용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
- 다. 대출이자 : 담보에 의한 용자 연 2.0%, 신용에 의한 용자 연 3.5%

6. 용자금 신청

가. 서류접수(정비구역→자치구)

- 1) 접 수 처 :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
- 2) 접수기간 : 2017. 5. 8(월)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나. 용자금 신청서류 제출 : 2017. 5.12(금)까지(자치구→서울시)

7. 용자신청 및 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가. 용자금을 신청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1) 용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 2)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용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사유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지역

나. 용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음. 용자가 취소된 경우 수탁운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은 이미 용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용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음.

1) 용자결정 부적격 사유

- 서울시 및 용자수탁기관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용자결정 취소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용자를 받은 경우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추진위원회

- 1) 용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용자금 상환기간 만료시 용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용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2) 용자기간 내에 시공사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용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함.
- 3) 용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나. 조 합

- 1) 용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용자기간 만료시 용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용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2) 용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 3) 용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9. 신청서류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서식]
-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1부.[별첨서식]
- 융자금 집행내역 사후 검증결과서 1부.[별첨서식]
- 조합 및 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 결의) 1부
 - ▶ 최근 2년 이내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한도내 지원(특정금액, 서울시 융자금 한도내)
- 아래 사항이 명기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각 1부.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
 - ▶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분담내용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
(단, 각 규정에서 명시한 경과기간 중에는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10.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133-7209)

붙임 #2

정비사업 용자금 신청서식[자치구]

정비사업 용자금 (자치구)검토서

사업장명 (대 표)	0000구역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정비구역 위 치		
구역유형	*일반구역/ 재축구역	구 역 면 적	m ²	조합원수	명
		건축 연면적	m ² *누락없이 정확히 기재		
용자종류	*신용 / 담보	용 도	*운영비,용역비 등	용자금액	원

검토항목	확 인 결 과	검토 의견
일반현황	○ 공공관리 대상구역 여부 : ○ 구역지정 일자 : ○ 조합(추진위) 최초 인가일 : ○ 조합(추진위) 최종변경인가일 : ○ 조합(추진위)동의율 : 000/000명 (%)	*신용용자는 공공관리 구역만 해당 *일몰제 적용대상 구역여부 확인
정관변경 및 총회의결	○ 조합정관(추진위 운영규정) 개정 • 개 정 일 : • 의 결 수 : 000/000명 (%) ○ 자금차입 총회 의결 • 의결일시 : • 의 결 수 : 000/000명 (%) • 금액명시 :	*정관(운영규정)에 기재여부 확인 -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분담내용 등 ○ 자금차입 의결의 적정성 ○ 정관변경 및 총회의결 법적절차 준수 여부 등
용자신청 제한사유 해당여부	○ 정비구역 미지정 및 해제 대상구역 여부 : ○ 진행중인 소송 유무 : • 사 건 명 : • 소 제기일 : • 피 고 : • 원 고 : • 내 용 : • 추진경과 - (※ 필요시 별지 작성) ○ 기타 용자지연 및 용자제한 요인 • ○ 해산동의서 청구여부 : • '17. 월 현재 청구율 %	○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조합(추진위) 존립여부 등 파악정도 ○ 용자지원 적정 여부 등 검토의견

검토항목	확 인 결 과	검토 의견
일 물 제 대상구역 용자신청 적정여부	○ 현재의 추진현황(*정확히 작성) • • ○ 향후 추진계획 • *00년0월0일~0월0일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00년0월0일~0월0일 : 조합설립 창립총회 ○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지연요인 등) • • ○ 일몰제 적용기간 내 조합설립 신청 가능여부 • ○ 기타사항 •	○ 일몰제 제한규정 단축(1년~6개월)운영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검토 - 일몰제 적용시점을 기산하여 잔여기간 내 단 계별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 검토의견
정비사업 단 계 별 정체여부	○ 최근 2년동안 총회 미개최 여부 ○ 추진위 최초 승인이후 3년 경과 여부 ○ 조합설립후 4년동안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여부 ○ 사업시행인가후 4년동안 관리처분계획 미인가 여부	※ 개최일자 기재
용자금 운용 적정성 여부	○ 직전 지원받은 용자금 적정 집행여부 ‘용자금 집행내역 사후검증 보고’ 확인필	
구비서류	○ 용자신청서, 용자금 사용계획서 및 내역서, 조합인가서, 추진위인승인서, 총회회의록, 조합정관, 추진위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 제정 등 ※ <u>총회회의록 및 조합정관, 추진위운영 규정은 전자자료 제출</u> - 일부 복사본 제출 지양 - 가능할 경우 총회책자 포함	○ 구비서류 적정여부 - 조합정관 및 추진위운영규정 제정여부,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 규정은 각 규정에서 정한 경과기간 중에는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종합의견	○ 정비사업 진행상황 및 최근 정비사업 추진실적 ○ 주민동향 ○ 자금조달실태 및 용자 필요성 ○ 사업진행 전망(추진속도, 추진사항, 추진의지, 추진율 등) ○ 정비업체, 시공사 등 협력업체명 등 ※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적 의견 작성(자세히 작성)	

○○정비사업 구역 현황도

- 정비구역 현황도 첨부 -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식[추진위원회 · 조합]

[별지 제33호 서식]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

신 청 자	조합명 : ※ 공공관리 여부(적용,비적용)
	공공관리 시행방식(구청장, 위탁), ※ 위탁대행사 :
	사업장 위치 :
	대표자(조합장) : 전화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주된 사무소 :
	조합 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조합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1.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1부.
2.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1부.[별첨서식]
3.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1부.
4. 자금차입 총회결의 회의록(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 속기록) 1부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조합정관 사본 1부
6.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
(단, 각 규정에서 명시한 경과기간 중에는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7.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용자금 사전 검토서식]

2017년도 제2차 정비사업 용자금 사용 계획서

□ 정비구역 및 용자금 신청현황(정비구역 : ○○구 ○○동 ○○-○○번지 일대)

[사무실 소재지 : / 대표 (☎ -)]

정비구역 현황	구역 지정일	조합 등 승인(인가)일	동 의 율(%)	구역면적	건축 연면적
		※최초,최종 모두 기재	% (동의자수/ 토지등소유자수)	m ²	m ²

용자 신청 및 집행 현황	구 분 (단계별)	기지원액 (백만원)	집행잔액 (백만원)	금 회 신 청 액 (백만원)	용자금 집행계획(비율)			
					사업(용역)비	조합 등 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비 고
	추진위							
	조 합				(%)	(%)	(%)	

□ 용자금 사용 계획

그 간 정비사업 추진현황	○ - ○ - ○ - ※ 그 동안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중심으로 정리해주세요.		
추진단계	정비사업 추진단계 '17.4월 현재	☐ 추진위원회 ※ 정비구역 추진단계 해당란에 √ 표기	☐ 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인가
용 자 금 사용계획	※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정과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작성해주세요. ※ 별첨 '소요경비 내역서'에 산출내역 등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 - ○ - ○ - ○ -		
향 후 추진계획	○		
비 고	○		

2017년 정비사업 용자금 소요 경비내역

(금액 : 천원)

구 분	집행명목(적요)	소요경비	산출기초	비 고
용역비				
건축심의 관 련 용역비				
기 타 용역비				
사업비				
운영비				
총 계				

[용자금 사후 검증서식]

정비사업 용자금 집행내역 사후 검증결과

①집행내역 검증결과	적 정 / 부적정(적정집행 60% 이하 : 부적정)[자치구]			
정비사업 추진단계	☐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인가	
구체적인 추진과정	※ 구체적인 용자금 사용 명목 기재			
용자금 내역	※용자금 대출일자, 대출금액 기재			
용자금 집행내역 (검 증 결 과)	구 분	사업(용역)비	조합등 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신 청 시	(%)	(%)	(%)
	실제집행	(%)	(%)	(%)

연번	당초 용자금 집행계획		실제 용자금 집행현황		증 . 감	②적정집행 여부확인 [자치구]
	집 행 명 목(적요)	집행계획 (원)	집 행 명 목(적요)	집행금액 (원)		
합계						
1						
2						
3						
4						
5						
6						
7						
8						
9						
10						

작성자 : 조합/추진위 (인)
 확인자 : 구청 과 (인)

- ※ 자치구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재하여야하며 증빙자료 제출(조합 등→ 자치구)
 ※ '① 집행내역 검증결과, ② 적정집행여부 확인' 은 조합 등에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후
 반드시 자치구에서 기재후 제출(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융자금 지원결정((예비)승인)된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융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추진위원회가 융자신청인인 경우
 - 가. 융자신청서(주택도시보증공사 서식)
 - 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
 - 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본
 - 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자 명부
 - 마. 서울시 융자금 결정금액 사용계획서
 - 바. 자금차입에 관한 주민총회 결의서(속기록)
 - 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아. 추진위원장 인감증명서
 - 자.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카.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조합이 융자신청인인 경우
 - 가. 융자신청서(주택도시보증공사 서식)
 - 나.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및 인가서 사본
 - 다. 법인등기부 등본
 - 라. 조합정관 사본
 - 마. 조합원 명부
 - 바. 서울시 융자금 결정금액 사용계획서
 - 사.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속기록)
 - 아. 조합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자. 조합장 인감증명서
 - 차. 조합 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4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조성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24, *동 ***호 (계산동, 보문아트빌라)	일시: 2017-02-05 14:40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85t 초과	처분일: 2017. 3.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5. 31.
이의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402번길 21-5, *동 ***호 (유방동, 금강하이츠빌라)	일시: 2017-02-11 07:00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2t 초과	처분일: 2017. 3.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5. 31.
곽녹영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73번길 *** (송림동)	일시: 2017-02-14 15:49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총중량 4.65t 초과	처분일: 2017. 3.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5. 31.
이종태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 ***호 (중동)	일시: 2017-02-14 19:33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폭 0.29m 초과	처분일: 2017. 3.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5. 31.
김규억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44, ***동 ****호 (부개동, 주공아파트)	일시: 2017-02-17 13:41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축하중 1.6t 초과	처분일: 2017. 3.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5. 31.
김혜원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91번길 *** (송의동)	일시: 2017-02-26 06:34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4.45t 초과	처분일: 2017. 3. 27.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7. 5. 31.
김대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52번길 33-**, ***호 (박달동)	일시: 2017-03-03 05:33 장소: 구로구 천왕동 내용: 제한 폭 0.25m 초과	처분일: 2017. 3.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5.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원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6길 2-**, ***호 (석촌동)	일시: 2016-10-06 14:25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10.4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7. 3. 31.
공병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35번길 **, *층 *호 (원종동, 선진빌라)	일시: 2016-12-05 09:54 장소: 개화교 내용: 제한 축하중 1.2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장석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22번길 ***, ***호 (덕암동, 독신빌라)	일시: 2016-12-08 05:16 장소: 노들길 내용: 제한 높이 0.22m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3. 31.
박영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내산길 *, ***호(봉일천리)	일시: 2016-12-21 10:55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축하중 1.3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임홍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0길 *, ***호 (불광동, 정우빌라 지층)	일시: 2016-12-22 10:47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4.4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7. 5.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49호

과태료부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와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90건)

과태료부와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70가1605	김진목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86 (이태원동)	2017-03-19 15:01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70러1101	이염선	서울 금천구 독산로10길 83 401호 (시흥동, 건우로알빌라)	2017-02-22 05:43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3	70러2239	JINGUA NGLONG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8길 18-5 지층 (공향동)	2017-03-11 20:48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4	70로5564	장길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50 108동 103호 (시흥동, 관악우방아파트)	2017-03-08 05:50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	"
5	70머1935	박유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 109동 401호 (신정동, 양천아파트)	2017-03-25 16:09	송파대로 2차로	"	"
6	70보1007	정경만	서울 용산구 이촌로 38 1동 204호 (이촌동, 미도맨션)	2017-03-29 06:06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7	74고8755	이미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13길 22-12 A동 501호 (신월동, 더 SK빌리지)	2017-03-15 06:25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8	75너9820	최민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82길 26 3층 (중곡동)	2017-03-31 20:03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9	75버1931	김순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7길 49 301호 (미아동)	2017-02-14 17:34	북부간선도로 1차로	"	"
10	75보8275	진주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8길 12-34 (시흥동)	2017-03-16 17:22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11	76노9024	이근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38 (독산동)	2017-02-06 11:21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12	76조2905	TIAN WENHA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66 (신길동)	2017-03-12 05:44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13	80거4323	우대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가길 8-12 (목동)	2017-02-03 11:50	경인고속도로 1차로	"	"
14	80거5312	이현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33 2층 (전농동)	2017-02-23 15:23	강변북로 일산방향 1차로	"	"
15	80고1150	(주)목동 아트건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2길 8 (목동)	2017-03-15 13:16	경인고속도로 1차로	"	"
16	80구2293	최종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80 104호 (오금동, 성우리빙타워)	2017-03-27 14:34	송파대로 2차로	"	"
17	80구8619	정명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4길 4-2 B동 102호 (역촌동)	2017-03-28 11:40	동일로 3차로	"	"
18	80나1460	김계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다길 49-8 103호 (목동)	2017-03-20 13:03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19	80너3020	김금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8길 24 607호 (화곡동, 강서뉴타운아파트)	2017-03-31 14:24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20	80너4030	주-신지 엔지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5길 10 수창빌딩 지층 (논현동)	2017-03-28 08:33	강변북로 일산방향 1차로	"	"
21	80너5574	오영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6길 90-3 203호 (장안동, 씨제이하우스)	2017-03-29 13:03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2	80노3032	나승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12길 5-10 (신길동)	2017-02-24 17:18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	"
23	80누2521	박용갑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2길 52 501호 (오금동, 오륜파크빌)	2017-03-04 18:01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	"
24	80누5864	(주)대양 씨앤알건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56 206호 (암사동, 상원빌딩)	2017-02-23 14:54	동일로 4차로	"	"
25	80누6145	김필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8길 33-17 2층 (능동)	2017-03-05 14:47	송파대로 4차로	"	"
26	80다2013	이정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35 303동 706호 (평동, 경희궁자이)	2017-03-28 15:21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27	80다3576	윤병국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3 (갈월동) ()	2017-03-26 08:33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28	80더1834	최차운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65길 27 (면목동)	2017-03-23 10:44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29	80라2847	서기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다길 20 401호 (상계동)	2017-02-09 10:49	동일로 2차로	"	"
30	80로5874	강삼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75-45 116동 1602호 (이문동, 쌍용아파트)	2017-03-31 18:52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31	80로6646	채경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4길 31 502호 (목동, 토미하우스)	2017-03-03 13:37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32	80로6994	박민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6가길 85 B동 402호 (정릉동, 삼성출타운)	2017-02-20 14:02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33	80루6946	전종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94 401동 1410호 (월계정백4단지아파트)	2017-02-14 15:55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34	80마2454	박민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23가길 31 602호 (장안동, 금성아파트)	2017-03-27 17:04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5	80마3083	안형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나길 50 C동 602호 (월계동, 삼창아파트)	2017-03-25 16:20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36	80마3426	서옥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24-18 402호 (삼전동)	2017-02-09 01:12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37	80마3623	노성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3 1102동 1303호 (신내동, 신내대명아파트)	2017-03-10 12:44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38	80머4357	송복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302동 2310호 (우면동, 엘에이치서초3단지)	2017-03-21 15:27	강변북로 서울방향 4차로		
39	80모4720	조병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32길 78-16 (장위동)	2017-03-30 13:21	강변북로 일산방향 1차로		
40	80버2245	김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02-14 (목동)	2017-03-29 13:23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41	80서2305	김세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35-16 201호 (삼전동)	2017-03-29 16:19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42	80소3619	지수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18길 30 (신림동) ()	2017-03-08 16:09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5차로		
43	80오3815	(주)카넥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6 417호 (서초동, 서초오피스텔)	2017-02-17 20:51	경인고속도로 2차로		
44	80저2096	서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6길 20-7 401호 (성산동, 행복빌라)	2017-02-26 17:46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45	80저2797	이현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4길 21 701동 1406호 (신내동, 동성아파트)	2017-03-31 20:44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46	80저4107	김은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4가길 38-1 (수유동)	2017-03-31 11:04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47	80저4852	권오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5길 40 401호 (염창동, 진산빌라)	2017-03-30 14:46	강변북로 서울방향 4차로		
48	80주3099	김순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다길 45 301호 (상봉동, 정우파크빌)	2017-03-30 14:33	동일로 2차로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9	82구1602	홍근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2라길 11 (송정동)	2017-03-20 10:54	강변북로 서울방향 3차로		
50	82구2035	김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54길 18-4 지층 (제기동)	2017-03-07 11:24	북부간선도로 1차로		
51	82마1603	유명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8-17 2층 (하월곡동)	2017-03-16 15:47	북부간선도로 2차로		
52	84다8196	권혁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67길 26 (독산동)	2017-02-21 06:50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53	85보8157	김재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6길 15 109동 1204호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2017-03-24 16:10	경인고속도로 3차로		
54	86구3121	김재섭	서울 동작구 양녕로34길 46-2 (상도동)	2017-03-23 19:30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5차로		
55	86마5072	채호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6 501호 (구산동, 금촌빌라)	2017-03-29 09:35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56	86무6094	김은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3길 1 203호 (시흥동)	2017-03-04 14:59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5차로		
57	86주3074	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0길 5-7 307호 (가락동)	2017-03-14 11:24	송파대로 3차로		
58	89나3051	박춘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7길 25 201호 (성산동)	2017-03-26 08:40	강변북로 서울방향 4차로		
59	89마6541	박준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2길 14 204호 (목동, 목동하우스)	2017-03-29 21:53	강변북로 일산방향 1차로		
60	89수2706	박계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100 101동 1510호 (목동, 목동2차 성원아파트)	2017-02-03 10:00	강변북로 서울방향 2차로		
61	89여1835	(주)삼경 이앤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2 502호 (성내동, 남광빌딩)	2017-03-30 15:50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62	90두5596	LIU ZHITAO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8길 70 (미아동)	2017-03-29 18:21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63	90러4045	민창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213-3 (독산동)	2017-03-12 07:44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64	90러5445	김종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3가길 11 501호 (화곡동, 신우빌라)	2017-03-28 17:12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65	90루1513	최현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18길 3-5 (이촌동, 3층)	2017-03-31 08:50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66	90루3756	김인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65길 78 2층 (미아동)	2017-02-21 17:03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67	90소3391	주-케이 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517 (역삼동)	2017-03-22 10:42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68	90소3585	황보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8길 29-12 4층 (문정동)	2017-03-26 11:27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69	90소4943	박명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7나길 53 201호 (목동, 두두빌라)	2017-03-19 13:05	강변북로 서울방향 4차로		
70	90소7547	윤근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44 702호 (미아동)	2017-03-30 22:03	강변북로 서울방향 4차로		
71	90저9694	김찬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4길 28-1 (홍은동, 지층)	2017-03-29 15:52	통일로 1차로		
72	91가5219	변상국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 322동 402호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2017-03-17 09:56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73	91가6117	이재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7길 20 1010동 402호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2017-02-28 09:11	동일로 2차로		
74	91머1386	정태봉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12가길 4-2 (보광동)	2017-03-25 11:14	북부간선도로 2차로		
75	91저4889	정병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7길 11 (신정동)	2017-03-28 15:46	북부간선도로 1차로		
76	92보6531	신주덕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길 60 202호 (마장동, 오복아트빌)	2017-02-24 15:56	북부간선도로 2차로		
77	92서4493	김미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23-1 2층 201호 (신월동)	2017-03-25 17:26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78	93나4547	(주)주태 건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1가길 3 (불광동)	2017-03-29 15:30	동일로 4차로		
79	93다9962	조현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34-1 2층 (이문동)	2017-03-26 15:12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80	94다5618	왕성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22-9 301호 (목동)	2017-03-29 23:49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81	94라1943	정선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4길 6 802동 907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8단지)	2017-03-23 15:52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82	95가6145	선남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4길 5 1층 (장안동)	2017-03-31 23:27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차로		
83	95거6128	김현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36 1층 1호 (연희동)	2017-03-13 15:59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84	97오2276	유진그린 환경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오리로 1063-9 (천왕동) ()	2017-03-14 16:01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3차로		
85	서울83자67 60	임경호	서울 송파구 풍성로 10 302호 (풍납동)	2017-03-30 09:08	경인고속도로 3차로		
86	서울85누30 91	김종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라길 25 301호 (등촌동, 유명아트빌)	2017-03-26 20:04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87	서울85다13 56	강재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31 104호 (화곡동)	2017-03-03 08:39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88	서울85로47 35	한병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길 33-15 지충동 (응암동)	2017-03-22 06:49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89	서울86라12 83	이동철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132번길 40 401호 (고강동, 원 하우스)	2017-03-11 14:52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90	92서5703	최운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20 303호 (창동)	2017-02-28 11:58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7. 5. 15(월)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관리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김효동(Tel 02-2133-3659,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5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6호(2013.1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송파구 신천동 28번지 일대 「잠실광역환승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8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잠실광역환승센터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
 - 성명 : 롯데물산(주) 외 2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올림픽로 300)
4. 사업의 규모
 - 면적 19,968㎡, 지하1층, 환승정류장 18면 및 통근·통학 주차차 13면
5. 사업기간 : 2014.6.1. ~ 2017.3.31.
6.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2133-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57호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외 1필지(103-211)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장

I. 열람 기간: 2017. 4. 28. ~ 2017. 5. 11.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02-2133-4932)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184,840	-	184,840	서울시고시 제195호 1996.7.5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4,840	-	184,840	100.00	-
주거 지역	소 계	76,912	-	75,365.6	40.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477	-	2,477	1.3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	-	2,334	1.3	-
	제3종일반주거지역	32,740	-	32,740	17.7	-
	준주거지역	39,361	감)1,546.40	37,814.60	20.5	-
상업 지역	소 계	66,079	-	67,625.40	36.6	-
	일반상업지역	66,079	증)1,546.40	67,625.40	36.6	-
공업 지역	소 계	41,849	-	41,849	22.6	-
	준공업지역	41,849	-	41,849	22.6	-

나. 대상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위 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546.4	-	1,546.4	100.0	쌍문동 103-6, 103-211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쌍문동 103-6일대	1,546.4	감)1,546.4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쌍문동 103-6일대	-	증)1,546.4	1,546.4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쌍문동 103-6일대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1,546.4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 변경 없음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 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획지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1,157.0	쌍문동 103-6	1,157.0	
변경	1,546.4	쌍문동 103-6	1,157.0	동일 토지 소유자로(KT&G) 역세권 청년주택건립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쌍문동 103-211	389.4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기정	변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비고	
용도 계획	지정용도 (a)	-	공동주택(주거복합) ¹⁾		
	불허용도 (간선부 B-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 제외)	공공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 정비관련), 단란주점, 안마시설, 고시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변경 없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 정비관련), 단란주점, 안마시설, 고시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권 장 용도 (1) (35m이상 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변경 없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 지정용도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조, 제6조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
주택에 한함(오피스텔 제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쌍문동 103-6, 103-211 : 공동주택(주거복합)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103-6, 103-211 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 개발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개발밀도(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비고
건폐율	• 60%이하	• 60%이하	변경 없음
용적률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 기준용적률 : 300% - 허용용적률 : 36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1.3\alpha)$ 이내 (α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기본용적률 680%이하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최고높이	• 50m 이하	55m이하(계획높이 54.9m)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최고높이 완화요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기정 (기준300%, 허용 360%) - 변경 (기본용적률 680%) • 높이 변경 - 기정 50m / 변경 55m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용적률 680% 완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높이 55m 완화

■ 역세권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0% 이상 (309.28㎡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1% (311.50㎡)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	• 10%이상~20%미만 (지상1층 비주거설치 의무)	
	주거비율	• 80% 초과 90% 이하	
	공공임대: 민간임대	• 20 : 80	
		- 주거 : 비주거 = 89.6% : 10.4% - 공공임대 : 준공공임대 = 22.4% : 77.6% (67세대 : 232세대)	

구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고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20.1㎡ 계획 • 민간임대주택 : 전용20.1㎡ 계획	680% 적용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 에너지효율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커뮤니티시설		• 50㎡ 이상	• 전용 55㎡(공용포함 94.16㎡)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변경 없음)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도봉로변 잦은 세가로 접속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개별필지의 주차진출입은 연접도로 중 최하위도로에서 진출입	— (변경없음)	대상지내 (쌍문동 103-6, 103-211)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위치변경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위치변경(북측→남측)	• 대상지내 진입가능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위치를 대상지 레벨차이로 인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대상지 남측으로 이동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59호

제35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학생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의 일환으로 도시건축문화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정의 현안에 대한 참여의 장(場)을 마련하고 우리 시 건축정책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장래 건축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1. 주 제 : 경계를 지우다
2. 응모기간 : 2017. 5. 1.(월) ~ 6. 30.(금)
3.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에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
4. 선정인원 : 30명
5. 응모방법
 - 1차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 형식의 글과 스케치로 표현하여 제출
 - 2차 :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2일간)을 통해 팀별 작업 후 결과물 제출

<대학생 건축 워크숍(안)>

- ▶ 일 시 : '17. 7. 28.(금) ~ 7. 29.(토)
-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예정)
- ▶ 참가대상 : 1차 심사 통과자(30명)
- ▶ 진행방법 : 1차 통과자로 팀을 구성하고 각 팀 튜터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여 보다 발전된 아이디어를 패널, 모형, 디지털 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제출
- ※ 워크숍 오리엔테이션(O.T) 일정 : 7. 7.(금) 예정

6. 1차심사 결과 발표 : 2017. 7. 4.(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saf.kr>) 게시

7. 시상 및 작품전시

- 시상내용 : 최우수 1팀, 우수 4팀 : 제35회 서울시 건축상(대학생 부문) 상장 수여
- 시상식 : 2017. 9. 14.(목) 예정
- 작품전시 : 2017. 8. 31.(목) ~ 9. 30.(토)
- ※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참가신청

- 응모기간 : 2017. 5. 1.(월) ~ 6. 30.(금)
- 응모방법
 - 웹사이트 or 모바일 앱 : '내 손안의 서울' <http://mediahub.seoul.go.kr/gongmo2>
 - 이메일 : office@saf.kr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에세이 및 스케치 A4 2매 이내
 - ※ 양식은 ‘내 손안에 서울’ 웹사이트 (<http://mediahub.seoul.go.kr/gongmo2>) 또는 서울 건축문화재 웹사이트(<http://saf.kr>)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 파일형식은 HWP, JPG 또는 PDF파일, 해상도는 가능하면 300dpi로 제출

9.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1차 심사에 통과하였으나 워크숍에 불참할 경우 별도로 선정된 예비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워크숍 불참자는 수상자에서 제외됨
-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 출판권 및 사용권 등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 조미리, ☎ 2133-7275)로 문의

참고자료

제35회 서울시 건축상(대학생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발제문

주제 : 경계를 지우다

- 경계를 지우며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다 -

서울 시내에는 수많은 경계가 존재한다. 학교, 공원, 문화재 등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시설물이 지형과 보안을 이유로 높은 담장과 축대,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담장없는 학교’ 등 소유자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도시속 경계는 무미건조한 도시풍광을 만들어내고 장소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그곳을 주변과 동떨어진 장소로 고립시킨다. 조밀한 도시 서울에서 이런 곳이야말로 방치된 채 버려지고 잊혀져가는 공간이 아닐까? 경계를 흐리고 지우며 또 재설정해봄으로써 서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공간을 만들어보자.

서식 1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신청서

소 속	대학(교)	학부·학과	학년(재학, 휴학, 대학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예 : 서울시 중구 (이하 세부주소는 생략하여 기재)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신청경로	☐ 인터넷(홈페이지, SNS) ☐ 보도자료 ☐ 지인권유 ☐ 기관소개			
신청동기	(글씨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참가신청 주의사항	1. 본 신청양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에세이 및 스케치는 A4 용지 2매 이내(양면 불가)로 서식 제한이 없으나, 세로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우측 상단에 성명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안내>

1. 수집·이용목적 : 참가자 인적정보 확인,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운영관련 이용(공지사항 안내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운영기간 동안 보유, 이후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동의 시,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제35회 서울시 건축상(대학생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인)

첨부 : 주제에 대한 에세이 및 스케치(A4 용지 각 1매)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응모자(저작권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연 락 처 :

저 작 물

- 공모명 : 제35회 서울특별시 건축상(대학생 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저작물 : 에세이, 스케치 및 워크숍 결과물

상기 저작권자 본인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 작품출품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제출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2. 제출자료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최/주관기관(서울특별시)이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은 수상일로부터 무기한으로 하고, 저작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60호

제35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및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1. 시상인원 : 26명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21명)

※ 대학생 별도모집

부 문		공 모 대 상	시 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공 모	① 신 축	최근 3년 이내('14.7.7. ~ '17.7.6.) 사용승인(신축)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1	2	20
	② 리 모델링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2.7.6.이전)로 최근 3년 이내('14.7.7. ~ '17.7.6.)에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1	
	③ 녹 색건축	최근 3년 이내('14.7.7. ~ '17.7.6.) 사용승인(신축, 리모델링 포함)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제출(인증기관·등급 표기)		1	
건축명장		당해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	1

※ 응모작품 수, 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수상자 발표

- 2017. 7월 중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saf.kr>) 게시

3. 시상내용

- 건축가 및 건축명장 : 「서울특별시 건축상」 상장 수여
- 건축주 :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명 명시)

4. 수상자(건축가) 특전

- 수상작 전시회 개최로 건축가 부각 및 대시민홍보
- 건축 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선정 시 우대
-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 회부시 경감자료로 활용
(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서울특별시 발주 공사에 한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및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에 따라 설계 용역비 1억 미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용역

5. 시상 및 작품전시

- 시 상 식 : 2017. 9. 14.(목)
- 작품전시 : 2017. 8. 31.(목) ~ 9. 30.(토)
 - ※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공모대상(작품공모)

- ① 신 축 : 최근 3년 이내('14.7.7.~'17.7.6.) 사용승인(신축)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 ② 리모델링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2.7.6.이전)로 최근 3년 이내('14.7.7.~'17.7.6.)에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 ③ 녹색건축 : 최근 3년 이내('14.7.7.~'17.7.6.) 사용승인(신축, 리모델링 포함)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녹색건축물
 -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제출(인증기관·등급 표기)

7. 작품공모신청

- 접수기간 : 2017. 5. 1.(월) ~ 7. 7.(금) (우편접수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건축기획과) / (우)100-744 「서울시 건축상」 담당자 앞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및 건축물대장 포함), 작품설명서 1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녹색건축인증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각1부(인증취득건축물)
 - ▶ 작품자료 1부 - A3 사이즈의 출력물 (10매 이내)
 - ▶ 작품CD 1부 - 신청서, 동의서, 작품설명서 및 작품자료
- ※ 구체적인 기준은 ‘**참고자료**’ 응모작품 제출기준’ 참고

8. 기타사항

- 기존의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은 제외함
- 1개의 작품을 각 부문에 중복하여 접수할 수 없음 (단, 녹색건축 부문은 중복신청 가능)
-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음 (접수는 가능)
- 수상자는 대표설계자 1인으로 한정함
- 설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등 기타 건축 관련 단체에서 응모자의 설계자로 인정, 추천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대표설계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작품심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1차 서류심사(수상예정작 25작품 및 상위10작품 선정), 2차 심사(상위10작품 중 최상위 5작품 선정), 3차 현장심사(최상위 5작품 중 대상 1작품 선정)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 예정임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수상예정작에 대하여 「건축상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개로 시민투표(인터넷)를 통해 특별상인 ‘시민공감특별상’을 시상예정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af.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수상예정자의 경우에는 전시를 위한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규격, 형식은 추후 통보 예정)
- 제출된 패널 및 모형은 전시종료 후 18:00 ~ 22:00에 반출하여야 하며 미반출 시 보관이 불가능 하므로 작품보관에 대해 일체 책임 지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담당 : 조미리, 전화 : 2133-7275)로 문의

참고자료

응모작품 제출기준

1. 서울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af.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1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및 녹색건축인증서(의무대상인 경우) 작품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작품자료는 표지, 개념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작품사진(5컷 이상)을 A3 사이즈 10매 내로 출력(좌철제본) 하여 제출
(신축·녹색건축 부문 중복응모작은 녹색건축과 관련한 계획개념, 노력요소 등을 표현하여 함께 편철)
3. 작품설명서 및 작품자료 등에는 설계자 인적사항 기재 불가
[작품자료 표지는 흰색바탕에 작품명(검정색, 50포인트, 굴림체 굵게)만 중앙에 표기]
4. 제1항과 제2항의 내용 파일을 CD에 담아서 제출
(작품자료 파일형식은 JPG 또는 PDF파일, 해상도는 300dpi로 제출)
5. 작품설명서에는 건축개요, 작품배경, 계획개념, 작가의 변 등에 대한 소개를 기재
(녹색건축 부문의 경우 녹색건축과 관련한 설계자의 의도 등을 구체화 하여 표현)
6. 수상예정작의 경우에는 전시를 위한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규격, 형식은 추후 통보 예정)
7. 제출된 패널 및 모형은 전시종료 후 18:00~22:00에 반출하여야 하며 미반출시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작품보관에 대해 일체 책임 지지 않음

서식 1

제35회 서울시 건축상 작품공모 신청서

건축물명 (작품명)						
부 문	☐ 신 축 ☐ 리모델링 ☐ 녹색건축			※ 녹색건축은 중복체크 가능		
대지위치	새주소 : 구주소 :		대지면적			
지역 · 지구			주용도			
건축물규모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설계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00구-00호	
	연락처	T. , HP.				
	성 명			생년월일		
건축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HP.				
시공사 / <u>관계전문가</u>	회사명					
	현장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1. 수집 · 이용목적 - 설계자 인적정보 확인 -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SAF) 운영관련 이용(공지사항 안내, 홍보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SAF) 운영기간 동안 보유, 이후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 (동의 시,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설계자 1인이 신청하되 건축주의 확인(서명 또는 인)후 신청

첨부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사본 또는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2017. . . .

신청인(대표설계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서식 2

작 품 설 명 서

(작품명: , 응모분야:)

▶ 건축개요, 작품배경, 계획개념, 작가의 변, 녹색건축 설계개념(녹색건축 부문에 한함) 등

※ 1~2매(부족한 경우 별지 1매 추가) 기술,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양식변경 불가

서식 3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응모자(저작권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연 락 처 :

저 작 물

- 공모명 : 제35회 서울시 건축상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 저작물 : 작품 설명서, 작품자료 (사진, 도면 등)

상기 저작권자 본인은 「제35회 서울시 건축상」과 관련 작품출품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2.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최/주관기관(서울특별시)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은 수상일로부터 무기한으로 하고, 저작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의 경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AURUM)에 등재 예정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61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7. 4. 27. ~ 2017. 5. 3.(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선산섬 (전영갑)	조경공사업 03-001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25, 5162호(대치동)	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시정명령 불응	법 제81조 제2호	등록말소 (2017.5.10.)	법 제83조 제7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전화 02-2133-82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7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2017.04.27. ~ 2017.05.12.(15일간)

5.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이내에 미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02-3284-54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2/1)	일시: 2011.11.19. 15:55 장소: 금천(독산한신APT앞) 내용: 축 하중 1.4t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879,000원 납기일: 2017.04.30.
고*천	전남 고흥군 도화면 신기탑성동길 ***	일시: 2013.04.27. 15:02 장소: 여의하류IC앞 내용: 축 하중 1.55t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777,000원 납기일: 2017.04.30.
윤*로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30번길22 ***동(청학동 가든주택)	일시: 2015.07.30. 15:58 장소: 남부순환로 내용: 축 하중 1.4t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615,000원 납기일: 2017.04.30..
강*수	충남 아산시 고불로665 ***동 ***호(좌부동, 초원설화타운)	일시: 2016.05.10. 05:58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축 초과 0.35m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555,000원 납기일: 2017.04.30
박*철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95번길 32 **동 ***호(덕천동, 시영아파트)	일시: 2016.05.20. 06:16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폭 초과 0.25m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333,000원 납기일: 2017.04.30..
최*용	서울 관악구 장군봉2길37 ***호(봉천동)	일시: 2016.05.25. 16:43 장소: 금천교 내용: 폭 초과 0.25m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333,000원 납기일: 2017.04.30..
최*창	인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145 *--*	일시: 2016.06.03. 06:13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폭 초과 0.18m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333,000원 납기일: 2017.04.30..
이*휘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58길 **_**(신월동)	일시: 2016.06.04. 16:22 장소: 목동야구장앞 내용: 축 하중 1.3t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555,000원 납기일: 2017.04.30.
최*식	경기 평택시 지장로27번길69 *동 ***호(서정동, 금일주택)	일시: 2016.06.17. 11:42 장소: 구로고가 내용: 총 중량 4.75t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549,000원 납기일: 2017.04.30.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용	서울 구로구 오리로1197, ***동 ***호(오류동,금강수목원아파트)	일시: 2016.06.22. 11:42 장소: 신길로9길 내용: 높이 초과 0.25m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658,800원 납기일: 2017.04.30.
문*남	인천 서구 가정로136, *동 ***호(가좌동,삼영아파트)	일시: 2016.07.15. 08:02 장소: 대방천 내용: 총 중량 4.7t 초과	처처분일: 2017.3.06. 과태료: 549,000원 납기일: 2017.04.30.
손*섭	인천 부평구 산곡로13번길 3809 *동 ***호 (산곡동 금산아파트)	일시: 2016.08.17. 06:01 장소: 구로고가 내용: 폭 초과 4.2t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543,000원 납기일: 2017.04.30.
김*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753길 25-15 *동 ***호(한라빌라)	일시: 2016.07.15. 08:02 장소: 대방천 내용: 총 중량 4.7t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325,800원 납기일: 2017.04.30..
박*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51길 7-16 *층 **호(박달동)	일시: 2016.09.20. 15:56 장소: 도림사거리 내용: 높이 초과 0.17m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322,200원 납기일: 2017.04.30.
이*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281-9 ***동 ***동(덕이동 덕이1차 동문아파트)	일시: 2016.09.21. 15:56 장소: 박미 빗물펌프장 내용: 폭 초과 1.503m 초과	처분일: 2017.3.06. 과태료: 1,074,000원 납기일: 2017.04.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95호

2017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입 시행중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2017년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 분야 : 신진건축가, 중진건축가, MP(총괄계획가)

※ 신진건축가는 만45세 이하(공고일 기준)

나. 모집 인원 : ○○명

2. 서울시 공공건축가 주요업무 및 역할

가.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나.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원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선정 심사 시 우대사항

- 서울특별시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최근5년 이내)
- 젊은건축가상,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
- 국제현상공모 당선, 국외수상사례 등 주요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참여자(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 여성 기업으로 등록한 여성건축사

6. 공공건축가 선정 시 중복 활동 금지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복활동 제한

7.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15. (월) ~ 2017.5.19. (금)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 ▷ 서울소식/새소식/분야선택/주택·도시계획·부동산 또는
 - ▷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제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 방문제출 : 2017. 5. 19.(금) 18:00까지 제출되는 신청서까지 인정
- 등기우편 : 2017. 5. 19.(금)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까지 인정
(주소 :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도시공간개선단)
- 이 메 일 : 2017. 5. 19.(금) 18:00까지 발송되는 신청서까지 인정
(주소 : zohuni@seoul.go.kr)

8. 제출서류 (첨부 양식 참조)

가. 응모원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각 1부

나. 실적증명서 (A4 3장 이내)

- 최근 5년간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3개 이하로 제한하며, 각 작품별 약식 평면도 · 입면도 · 투시도 · 현장사진 등은 첨부 가능

※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경우 응모원서만 제출

9. 심사위원단 구성

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단 10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심사 계획이며 결과는 6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임.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준하 부회장
- 한국건축가협회 배병길 회장
- 대한건축학회 하기주 회장
- 새건축사협의회 박인수 부회장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박영순 회장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함인선, 김승제 위원
- 서울특별시 시의원 1인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기획과장

※ 간사 : 도시공간개선반장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02-2133-76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작성요령 1부

2. 응모원서(아래한글) 및 자기소개서(아래한글), 실적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1부.

제출서류 작성요령

1. 제출서류에는 신청인 본인이 서명(전자서명 포함) 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작성시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 또는 허위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모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② “신청분야”에는 신진·중진·MP(총괄계획가) 중에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진분야는 ‘17년도 공고일 기준 만45세 이하인 자)
 - ③ “학력”은 학사·석사·박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④ “현주소”는 거주하는 곳과 근무지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⑤ “현소속”는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서, 직위 등)
 - ⑥ “주요경력”은 실무경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반드시 A4 3매 이내로 작성합니다.
 - ① 워드프로세서 또는 수기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 ② 글자크기 13point 내외, 신명(태명조), 줄간격 160% 내외를 권장합니다.
 - ③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그 동안의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서울시 공공건축가 모집에 참여하게 된 동기, 중점적으로 추구하려는 분야에 대한 소신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④ 기타, 위 작성분량 및 작성형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3장 이내로 작성합니다.
 - ① 최근 5년간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3개 이하로 제한하며, 각 작품별 약식 평면도·입면도·투시도·현장사진 등은 첨부 가능
 - ② 학위, 자격증, 수상실적 등은 증명서 사본 필수 제출
 - ③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수상실적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사본 필수 제출

응 모 원 서

접수번호				신청분야	신진, 중진 MP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 × 4cm)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생년월일	(세)	
주 소				연 락 처	사 무 실	
					휴 대 폰	
					E-mail	
현 소 속						
학 력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고등학교이상기재)					
주요경력	근무처(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00기업(00과·팀)			20XX.XX.XX ~ 20XX.XX.XX		
논문, 저술, 번 등	- - -					
자격사항	종 류	등록번호	발급일자	비 고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및 실적 증명 각 1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서울시 공공건축가 모집에 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5.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1. 응모자 인적사항

◎ 응모 분야 :

◎ 성 명 :

2. 주요 실적

(학위 논문을 제외한 대표적인 연구논문, 저술, 국내외 수상 실적, 현상공모 당선, 주요 작품 등 5건 이하)

- ◎
- ◎
- ◎
- ◎
- ◎

3. 주요 활동사항

구 분	기 간	활 동 내 용	비고(직책 등)
학회, 단체 등 ◎ ◎			
기 타 ◎ ◎			

4. 학위 논문 주제

가. 석사 논문

◎ 제 목 :

◎ 주 제 :

※ 해당자에 한함.

나. 박사 논문

◎ 제 목 :

◎ 주 제 :

※ 해당자에 한함.

5. 참여 동기 등 자기소개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17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 적 증 명
〈포트폴리오〉 - 3장 이내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7-2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남산동2가 25-8 ~ 24-12 도로 외 7개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결정(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중 구 청 장

1. 결정사유

-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서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 이상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우선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류	1	6	국지도로	180	남산동2가 25-8	남산동2가 24-12	일반도로	퇴계로 20길	1963.07.01.	
폐지	소로	3류	2	6	국지도로	180	남산동3가 13-4	남산동3가 32-2	일반도로	퇴계로 24길	1963.07.01.	
폐지	소로	3류	3	6	국지도로	115	만리동1가 53-5	만리동1가 54-2	일반도로	만리재로37 길	1963.09.19.	
폐지	소로	3류	4	6	국지도로	1,004	신당동 302-4	신당동 381-8	일반도로	퇴계로 76길	1978.01.09.	
폐지	소로	3류	5	6	국지도로	170	을지로1가 185	소공동 91-4	-	-	1963.07.01.	
폐지	소로	3류	6	6	국지도로	160	을지로6가 30-2	광희동1가 99	일반도로	을지로 24길	1963.07.01.	
폐지	소로	3류	7	4	국지도로	110	장충동2가 193-80	장충동2가 193-211	일반도로	퇴계로 50길	1963.07.01.	
폐지	소로	2류	8	8	국지도로	80	황학동 1416-2	황학동 1468-1	일반도로	마장로 15길	1964.01.24.	

3. 관계도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결정도(중구청 도로시설과 및 도심재생과에 비치)
4.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로시설과(☎02-3396-6103) 및 도심재생과(☎02-3396-5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고시 제2017-5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17호(2017.03.09.)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성동구 용답동 39-15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17-299호(2017.4.6.)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7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39-15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다. 사업의 규모 : 447.6㎡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시장(사무수임자 성동구청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동구 공원녹지과(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2286-5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용답	39-13	대	94.9	94.9	용답동 용답21길 3-3 (용답동)	고순상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답십리역지점)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권	
								용답동 용답21길 3-3 (용답동)	황명자	근저당권	
								용답동 용답21길 3-3 (용답동)	황명자	근저당권	
2	용답	39-14	대	106.8	106.8	용답동 용답21길 3 (용답동)	이성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용답동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용답동 용답21길 3 (용답동)	최은주				
3	용답	39-15	대	151.1	151.1	용답동 용답21길 1 (용답동)	박춘호	성동구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4	용답	39-16	대	64.1	64.1	용답동 39-16	김상규	성동구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5	용답	39-27	대	30.7	30.7	용답동 39-16	김상규	성동구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별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1	용답동 39-13	건물 (지하1층)	연외조	11.57	11.57	창고	용답21길 3-3 (용답동)	고순상 이미숙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담십리역지점)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권		
		건 물 (1층)		54.15	76	주거							
		건물 (2층)		-	59	주거							
		부속건물 (지붕층)	세멘블럭조	-	29	주거			용답동 용답21길 3-3 (용답동)	황명자			
			조립식	-	4	창고							
2	용답동 39-14	건물 (지하1층)	연외조	25.79	27	공장 및 사무실	용답동 용답21길 3 (용답동)	이성호 최은주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용답동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건물 (1층)		56.36	65	주거							
		건물 (2층)		49.35	78	주거							
		부속건물 (1층)	세멘블럭조	2.7	6	창고							
		부속건물 (1층)	세멘블럭조	-	5	부여							

별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3	용답동 39-15	건물 (지하1층)	연와조	67.77	94	주거	용답21길 1 (용답동)	박준호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세마 을금고	근저당권	
		건물 (1층)		81.98	89	주거						
		건물 (2층)		48.93	79	주거						
		부속건물 (1층)	세멘블럭조	-	5	보일러실						
4	용답동 39-16외 (39-27)	건물 (지하1층)	세멘블럭조	-	1	보일러실	용답동 39-16 (용답동)	김상규	용답19길 17-1 (용답동)	용답세마 을금고	근저당권	
		건물 (1층)	세멘블럭조	-	1	보일러실						
		건물 (2층)	연와조	11.67	11.67	창고						
		부속건물 (지붕층)	연와조	56.33	74	주거						
		부속건물 (지붕층)	세멘블럭조	-	62	주거						
		부속건물 (지붕층)	세멘블럭조	-	30	주거						
		부속건물 (지붕층)	세멘블럭조	-	3	창고						

영업권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세부 구분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사업자등록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용답동 39-14	지하 1층	제조	대일피혁	1식	제조 (파혁임가공)	용답동 39-14	이성호	

◆ 성동구고시 제2017-52호

사도 변경(일부폐지)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7-189 일대 사도변경(일부폐지) 관련하여 「사도법」 제4조에 의거 변경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도변경 결정 조서

구 분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당 초	4	47	행당동 317-179	행당동 317-35	
변 경	4	32	행당동 317-179	행당동 317-192	기능상실된 사도 일부(15m) 폐지

나. 관계도서: 생략

다.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광진구고시 제2017-3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70호(2009.10.22.)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1호(2009.11.2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0호(2010.2.25.)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5호(2014.5.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공사』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6-878호(2016.11.1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광진구 광장동 307-3호 외 1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2) 사업의 명칭 :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 다.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 1) 면적 : 4,913㎡(변경없음)
- 2) 규모 : (당 초) 자주식 주차장 200면(지하1~2층)
(변 경) 자주식 주차장 217면(지하1~2층)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1) 성명 : (당 초) 서울특별시장
(변 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 주소 : (당 초)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변 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7(자양동 777)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작성고시일 ~ 2017.4.30.
(변 경) 작성고시일 ~ 2017.12.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변경없음)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고시 제2017-5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학동 612-2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도 봉 구 청 장

1. 변경 결정 취지

- 방학2동 주택가 공용주차장(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 결정을 통해 상부에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건축하여 주민 문화향유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주차장	도봉구 방학동 612-28	면적 (㎡)	609.7	-	609.7	도봉구 고시-55호 (2003.7.30.)	공간적 범위결정

-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주차장	도봉구 방학동 612-28	지상1층 이하	-	증)609.7㎡	609.7㎡	-

○ 공간적범위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주차장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 (지상1층이하 : 609.7㎡)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입체적개발(비도시계획시설:근린생활시설)로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확보를 위한 공간적범위 결정	-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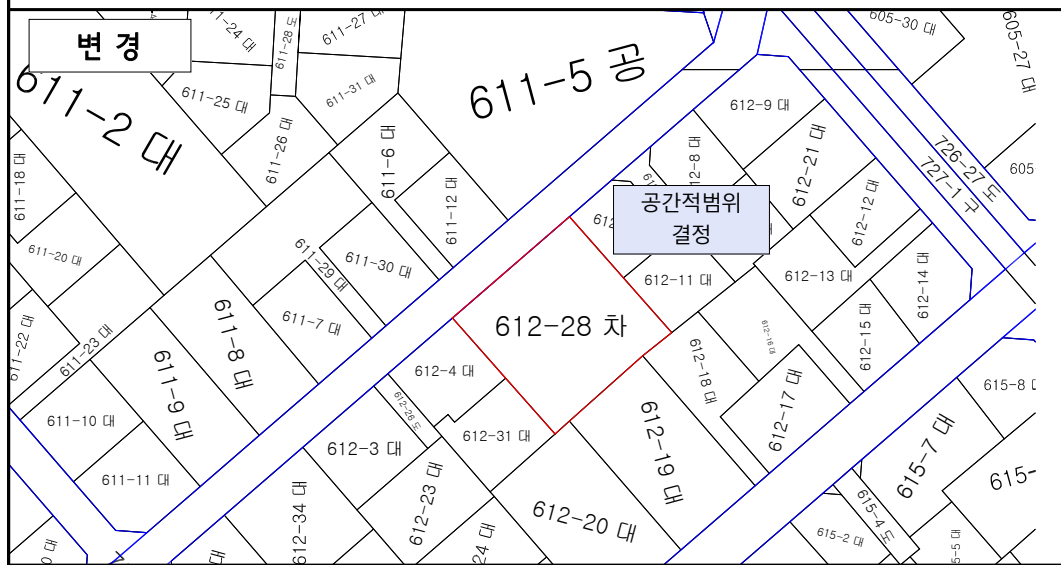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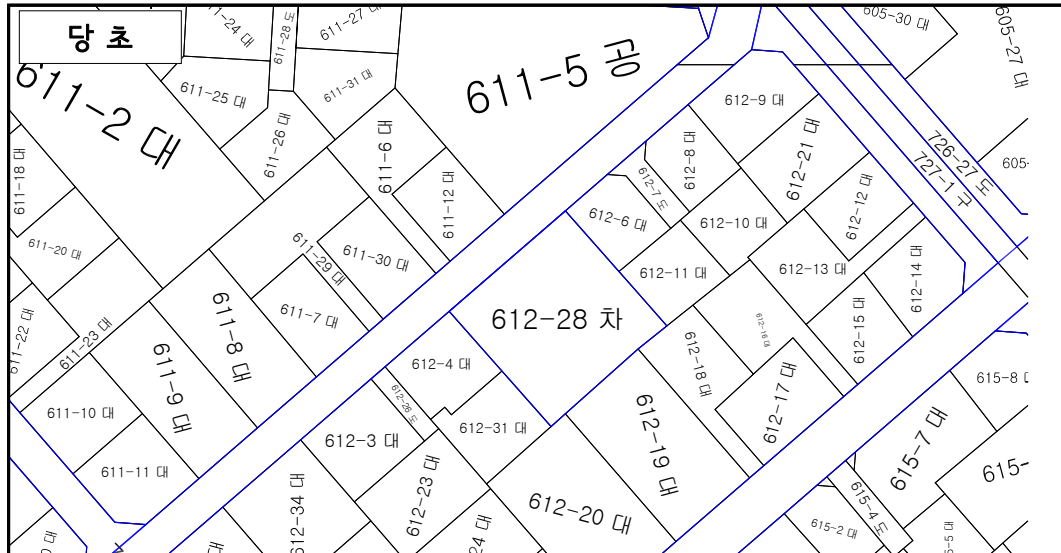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붙임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5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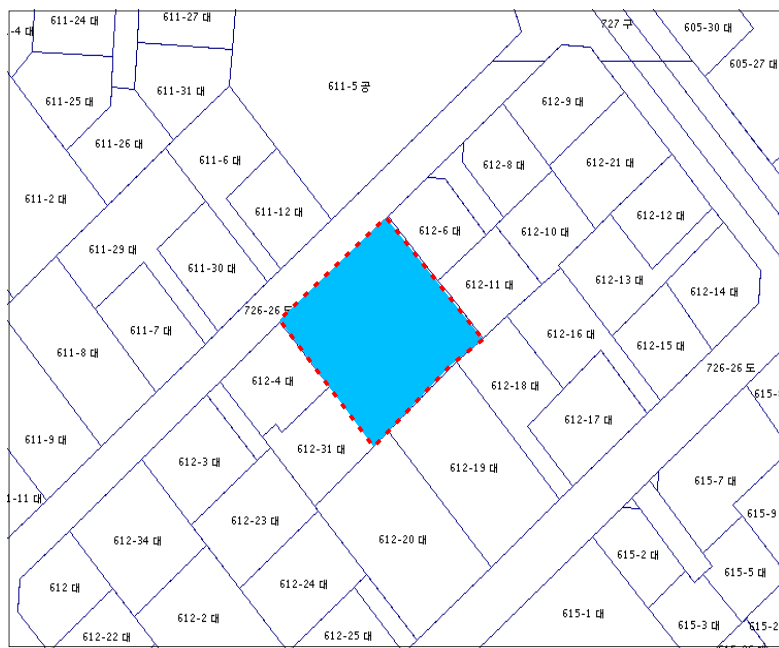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 적 고 시 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 결정 지형도면	범례		입안 및 결정권자		
		당초	구분	작성자	1차확인자
		변경	소속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Scale = 1 : 1,000			직위	담당	도시계획팀장
			직명	시설주사보	시설주사
			성명	강지연	정성수
			확인인		

■ 공간적범위 결정도- 평면도 : 지상 1층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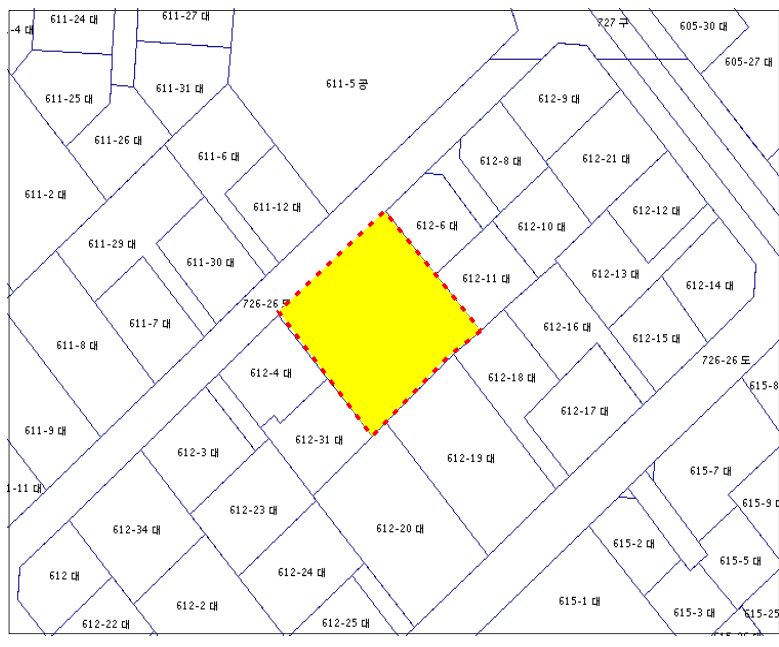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공간적범위결정】
-지상1층이하-

범례

	사업대상지
	도시계획시설
	비도시계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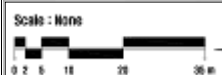
■ 공간적범위 결정도- 평면도 : 지상 2층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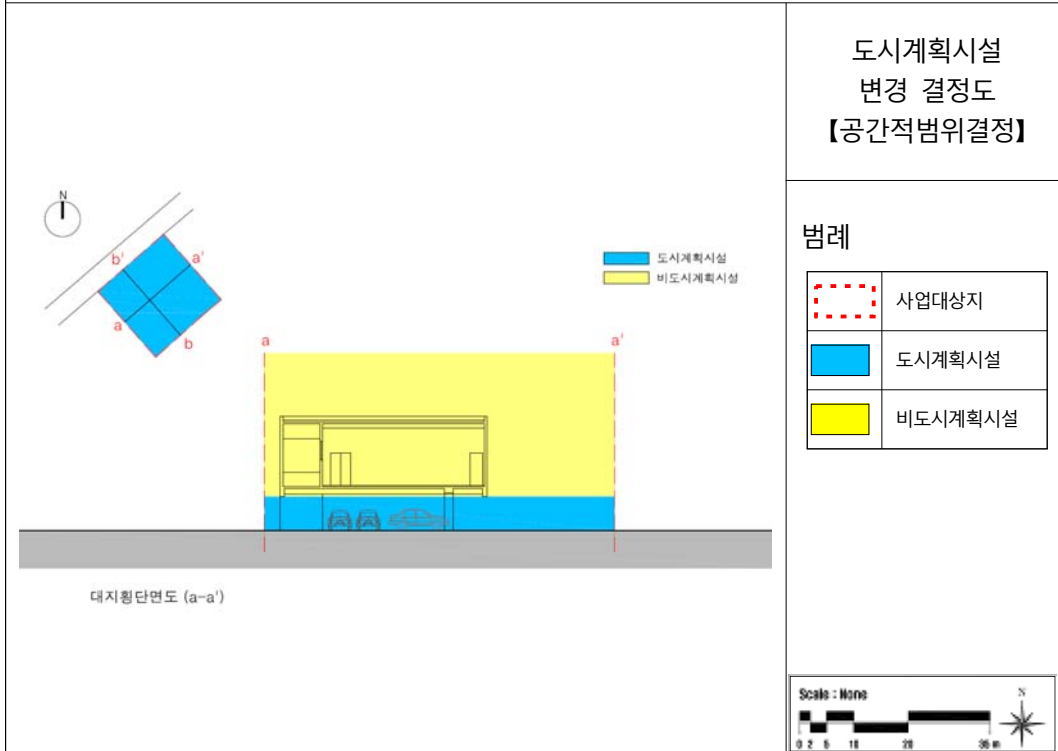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공간적범위결정】
-지상2층이상-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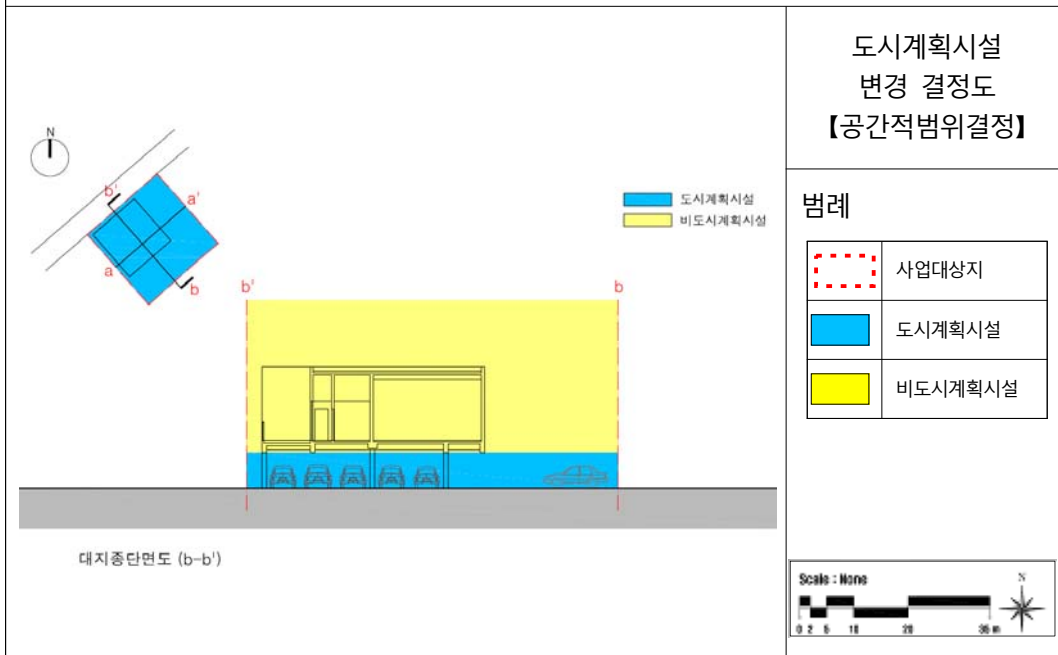
	사업대상지
	도시계획시설
	비도시계획시설



■ 공간적범위 결정도- 횡단면도



■ 공간적범위 결정도- 종단면도



◆ 서대문구고시 제2017-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5호(1983.2.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7-5호(2017.1.1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대문구 홍제1동 315-30~167-2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폭 6m, 연장 142m]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2017.1.12.)로 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토목과(☎ 330-1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	당초	홍제동	315-21	대	195	40	이명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15 (홍제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홍제동지점)	근저당권	소유권 정정
							주재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7-7 삼보빌라 401호				
							주유나	서울 은평구 통일로59길8-6, 306호(북변동)				
	변경	홍제동	315-21	대	195	40	이명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15 (홍제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홍제동지점)	근저당권	
2	당초	홍제동	315-53	대	56	56	곽춘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59 세종리첸시빌 101-404				
	변경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3	당초	홍제동	315-31	대	462	33	배성자	서울 구로구 고척로27바길 47 101동203호(고척동, 그랜드아파트)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무악재지점)	근저당권	
							배미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27(홍제동)				
							배상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41번길 16-55, 202호(반여동)				
							배영미	서울 송파구 마천로35길18, 704호 (마천동, 아남아파트)				
							배혜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13 102동1001호(평촌동, 향촌아파트)				
	변경							(변경없음)				
4	당초	홍제동	167-20	대	53	6	서대문구					
	변경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5	당초	홍제동	167-56	대	22	22	강인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33					
	변경							(변경없음)					
6	당초	홍제동	313-56	도로	19	19	박성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4-3 대치삼성아파트 112-1208	주식회사 창조이앤씨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4-5 아이케이투빌딩	가등기		
	변경							(변경없음)	마포세무서		압류		
7	당초	홍제동	313-49	대	117	11	김아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1길54, 2동104호(공덕동, 현대아파트)					
	변경							(변경없음)					
8	당초	홍제동	313-35	대	195	22	이석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5					
	변경							(변경없음)					
9	당초	홍제동	313-31	대	106	1	서대문구						
	변경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0	당초	홍제동	167-11	대	129	32	주식회사 진보어패럴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26 (홍제동)				
	변경							(변경없음)				
11	당초	홍제동	167-10	대	238	43	김향남	일본국 동경도 강호천구 서강 2-26-10-305				
	변경							(변경없음)				
12	당초	홍제동	167-12	대	202	50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없음)				
13	당초	홍제동	313-37	대	317	309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없음)				
14	당초	홍제동	167-3	대	50	30	서대문구					
	변경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5	당초	홍제동	313-30	대	317	4	박정웅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0					
							권영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0					
							송영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가길 21, 303호 (홍제동, 세원연립)					
							이승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46					
							서정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0 103호					
							최종태	서울 광진구 지양동 553-426					
							임점례	서울 은평구 통일로50길 12 (녹번동)					
							정남준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23 가동 309호(홍은동, 금호빌라)					
							이동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7길15, 202호 (남가좌동)					
							정국동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23길 33 (홍제동)					
							정경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23길 33 (홍제동)					
							엄윤섭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402동 502호(디엠씨파크뷰자이)		중랑서부 새마을금고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5길 4 (면목동)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이 하 여 백					

물 건 조 서

○ 사업명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	당초	홍제동	315-21	가건물		7	이명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15 (홍제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홍제동지점)	근저당권									
				대문	철제	1식														
				담장	벽돌	1식														
				계단	철제	1식														
				주차장	슬라브	1식														
				수목		1식														
	변경	홍제동	315-21	가건물		7	이명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15 (홍제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홍제동지점)	근저당권									
대문	철제	1식																		
담장	벽돌	1식																		
계단	철제	1식																		
주차장	슬라브	1식																		
수목		1식																		
2	당초	홍제동	167-57	대문	철제	1식	김용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5 아남 라동 201호												
				담장	벽돌	1식							박영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07-21						
				베란다1층		1											김종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57		
				베란다2층																
	변경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면적 (㎡)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3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조혜숙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1-16 202호					
							김현숙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가길 24 다동 102호(홍제동, 아남빌라)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홍제동지점)		근저당권	
							정남중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54 아남빌라 다동 201호					
							구은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9-15 경일세르빌 402					
							김신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길 41-15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도곡스위트지점)		근저당권	
							박창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가길 24, 302호(홍제동, 아남빌라)					
4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없음)					
							이석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5					
								(변경없음)					
5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식회사 진보어페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1-27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면적 (㎡)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6	단조	홍제동	167-10	답장	벽돌	1식	김향남	일본국 동경도 강호천구 서강 2-26-10-305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건물1층		2						
				건물2층		2						
				계단	철계단	8						
				계단	화강석	1식						
				수목		1식						
	변경						(변경없음)					
							이하여백					

◆ 마포구고시 제2017-58호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91호(2009.10.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 학교) 결정(변경,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호(2010.2.18)로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7-41호(2017.3.23)로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 사업에 대하여,
2. 당초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7-41호(2017.3.23)로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과 사업시행지 위치 및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토지의 분할로 인한 신규 지번부여로 인한 동일 위치 내 지번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동된 지번으로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원녹지과(☎02-3153-95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7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조성 사업

나. 사업개요

구분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당초	도시계획시설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마포구 성산동 산11-1번지	○ 사업의종류 - 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 규모 : 3,600㎡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고시 -최초:건설부고시(제2181호) (1966.2.5) -최종:서울특별시고시(제391호) (2009.10.8)	사업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변경		마포구 성산동 산11-73번지			

다.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02-3153-9553)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바. 토지·물건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공원녹지과, ☎02-3153-9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동	번지					성명	주소(등기)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계			13,103	3,600							
변경				3,600	3,600							
당초	성산	산11-1	임야	13,103	3,600	임야 (경로당·이동식화장실 부지, 산책로 등으로 사용)	학교법 인한양 학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변경	성산	산11-73	임야	3,600	3,600							

※ 성산동 산11-1번지 13,103㎡중 경로당·이동식화장실 부지,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3,600㎡에 대해 토지분할 후 새로운 지번인 성산동 산11-73번지 부여

◆ **강서구고시 제2017-32호****사도개설 변경 허가 고시**

강서구고시 제2017-7호(2017.2.9.)로 외발산동 383번지 주기장 사업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 고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되어 「사도법」 제4조에 의거 변경 허가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강 서 구 청 장

- 변경 내용(사업시행자)
 - 당초 : (주)삼표(대표 남병규,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24)
 - 변경 : (주)삼표산업(대표 홍성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24)
- 도로종류 : 사도
- 시행목적 : 주기장(외발산동 383번지) 진입로 개설
- 허가토지

위치	지목	면적(㎡)	비고
합계		737	
외발산동 385-9	임야	431	
외발산동 385-6	임야	306	

5. 공사개요 : $B=6m$, $L=120m$, $A=737m^2$
6. 공사개요 : 허가일로부터 2년간
7. 관계도서 : 생략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600-6842)

◆ 관악구고시 제2017-2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470호(2017.03.28.)로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7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대상지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관악산, 신원동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 2) 면 적 : $2,700m^2$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합계				2,700					
1	신림동 산159-5	임야	29,855	1,20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2	신림동 산159-34	임야	33,481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			

◆ 강남구고시 제2017-63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3(2016.4.14.)호로 정비구역지정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15(일원대우아파트-강남구 일원동 690-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포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개포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강남구 일원동 690-1번지 일대	10,440.4	-	10,440.4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0,440.4	-	10,440.4	100.0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440.4	－	10,440.4	－
획지	획 지 1	8,558.3	－	8,558.3	－
정비기 반시설 용지	소 계	1,882.1	－	1,882.1	• 순부담면적 : 1,051.9㎡(10.9%) － 도로 : 395.1㎡ － 공원 : 656.8㎡
	도 로	1,225.3	－	1,225.3	
	공 원	656.8	－	656.8	

3)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07	15~24	국지 도로	620 (123)	광로1-71	대로3-108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402	8~12	국지 도로	304	대로3-108	근린공원1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402	8~12	국지 도로	304	대로3-108	근린공원1	일반 도로	-	오기에 의한 정정

주) 연장 항목의 ()안은 대상지 연접부 수치임

나) 공 원 (변경없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늘푸른 (수서)	근린 공원	일원동 690-1번지	12,067.1	-	12,067.1	건고 388호 (84. 09. 28)	개포늘푸른 근린공원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0,440.4	일원동 690-1번지 일대	5	-	-	5	-	-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일원대우 아파트 주택재건축정 비구역	10,440.4	획지1	8,558.3	일원동 690-1번 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0.0 이하	249.93 이하	최고22층 /67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총세대수의 20%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 총세대수의 60%이상,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총 세대수 : 186세대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	186세대	100.00				
			60㎡이하	59.89	41세대	22.04	소형주택 : 10세대 (5.38%)			
			60~85㎡이하	84.95	103세대	55.38				
			85㎡초과	115.40	42세대	22.58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세대수의 77.42%, 전체 연면적의 69.8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6m : 개원길변, 일원로8길변 • 건축지정선 3m : 개원길변, 일원로8길변 건축한계선에 인접하는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거이외의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용도인 경우								
심의완화사항		• 용적률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30%이하)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93%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 (249.93%)적용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계획에 따라 20%완화 적용 - 평균 21.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변경	일원대우 아파트 주택재건축정 비구역	10,440.4	획지1	8,558.3	일원동 690-1번 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0.0 이하	249.90 이하	최고22층 /67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총세대수의 20%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 총세대수의 60%이상,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총 세대수 : 186세대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고</th></tr><tr><td>합 계</td><td>-</td><td>184세대</td><td>100.00</td><td></td></tr><tr><td>60㎡이하</td><td>59.94</td><td>39세대</td><td>21.20</td><td>소형주택 : 11세대 (5.98%)</td></tr><tr><td>60~85㎡이하</td><td>84.90</td><td>80세대</td><td>43.48</td><td></td></tr><tr><td rowspan="2">85㎡초과</td><td>101.92</td><td>22세대</td><td>11.96</td><td></td></tr><tr><td>121.90</td><td>43세대</td><td>23.37</td><td></td></tr></table>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	184세대	100.00		60㎡이하	59.94	39세대	21.20	소형주택 : 11세대 (5.98%)	60~85㎡이하	84.90	80세대	43.48		85㎡초과	101.92	22세대	11.96		121.90	43세대	23.37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	184세대	100.00																													
60㎡이하			59.94	39세대	21.20	소형주택 : 11세대 (5.98%)																													
60~85㎡이하	84.90	80세대	43.48																																
85㎡초과	101.92	22세대	11.96																																
	121.90	43세대	23.37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세대수의 64.68%, 전체 연면적의 54.9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6m : 개원길변, 일원로8길변 • 건축지정선 3m : 개원길변, 일원로8길변 건축한계선에 인접하는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거이외의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용도인 경우																																	
		심의완화사항 • 용적률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30%이하)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93%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 (249.90%)적용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계획에 따라 20%완화 적용 - 평균 21.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 될 수 있음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변경)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비고
	10,440.4㎡	8,558.3㎡	1,882.1㎡	830.2㎡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882.1㎡ - 830.2㎡ = 1,051.9㎡ •순부담비율 : 1,051.9㎡/9,610.2 = 10.94%				-

구분		산 정 내 용			비 고															
기정	개발가능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기부채납완화용적률 = 190% + 10% + 30.3% = 230.3% ≒ 230%																		
	허용 인센티브	<table><tr><th>구 분</th><th>인센티브 용적률</th><th>비 고</th></tr><tr><td>합 계</td><td>17%</td><td>10%만 적용</td></tr><tr><td>우수디자인</td><td>5%</td><td>10%만 적용</td></tr><tr><td>친환경, 신재생에너지</td><td>5%</td><td>심의 시 결정 5%</td></tr><tr><td>지속가능형 건축구조</td><td>7%</td><td>친환경3%, 신재생에너지 2%</td></tr></table>			구 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 고	합 계	17%	10%만 적용	우수디자인	5%	10%만 적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5%	심의 시 결정 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친환경3%, 신재생에너지 2%	공동주택건 립관련 용도지역관 리 등 지침
		구 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 고																
		합 계	17%	10%만 적용																
		우수디자인	5%	10%만 적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5%	심의 시 결정 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친환경3%, 신재생에너지 2%																	
기부채납 완화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00%+ {190%×(1.3 × 0.1229) } = 30.3%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1,051.9㎡ ÷ 8,558.3㎡ = 0.1229																			
정비계획 용적률	•230% 이하																			
법적상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49.93%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249.93%) 적용																			
소형주택 건립용적률	•9.965% 이상 = (249.93%-230%) × 0.5																			
변경	개발가능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기부채납완화용적률 = 190% + 10% + 30.3% = 230.3% ≒ 230%																		
	허용 인센티브	<table><tr><th>구 분</th><th>인센티브 용적률</th><th>비 고</th></tr><tr><td>합 계</td><td>17%</td><td>10%만 적용</td></tr><tr><td>우수디자인</td><td>5%</td><td>10%만 적용</td></tr><tr><td>친환경, 신재생에너지</td><td>5%</td><td>심의 시 결정 5%</td></tr><tr><td>지속가능형 건축구조</td><td>7%</td><td>친환경3%, 신재생에너지 2%</td></tr></table>			구 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 고	합 계	17%	10%만 적용	우수디자인	5%	10%만 적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5%	심의 시 결정 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친환경3%, 신재생에너지 2%	공동주택건 립관련 용도지역관 리 등 지침
		구 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 고																
		합 계	17%	10%만 적용																
		우수디자인	5%	10%만 적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5%	심의 시 결정 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친환경3%, 신재생에너지 2%																	
기부채납 완화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00%+ {190%×(1.3 × 0.1229) } = 30.3%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1,051.9㎡ ÷ 8,558.3㎡ = 0.1229																			
정비계획 용적률	•230% 이하																			
법적상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49.90%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249.90%) 적용																			
소형주택 건립용적률	•9.95% 이상 = (249.90%-230%) × 0.5																			

※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및 건축법에 따른 층수완화 중복적용 불가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40	증) 62.04	702.04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획지 ① (공동주택용지)	50	증) 24.76	74.76	
	경비실		-	증) 17.04	17.04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100	증)41.26	141.26	
	주민공동시설		220	증) 51.07	271.07	
	어린이놀이터		270	감) 72.09	197.91	

6)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기정	법적상한용적률		• 연면적 21,390.0㎡ / 부지면적 8,558.3㎡ = 249.93%			
	정비계획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230% (기준용적률 190%, 인센티브 10%, 기부채납 30%)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49.93%- 230% = 19.93%			
		증가된 용적률의 50%	• 19.93% × 8,558.3㎡ = 1,705.66㎡ • 1,705.66㎡ × 0.5 = 852.83㎡ 이상			
		의무 연면적	• 852.83㎡ 이상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합계	10	855.2㎡	의무 연면적 : 852.83㎡
85.52㎡			10	855.2㎡		
변경	법적상한용적률		• 연면적 21,387.19㎡ / 부지면적 8,558.3㎡ = 249.90%			
	정비계획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230% (기준용적률 190%, 인센티브 10%, 기부채납 30%)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49.90%- 230% = 19.90%			
		증가된 용적률의 50%	• 19.90% × 8,558.3㎡ = 1,703.10㎡ • 1,703.10㎡ × 0.5 = 851.55㎡ 이상			
		의무 연면적	• 851.55㎡ 이상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합계	11	857.68㎡	의무 연면적 : 851.55㎡
77.97㎡			11	857.68㎡		

7)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비고
기 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110세대 • 계획: 186세대 • 증) 76세대	-
변 경				• 현황: 110세대 • 계획: 184세대 • 증) 74세대	-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계획결정(변경)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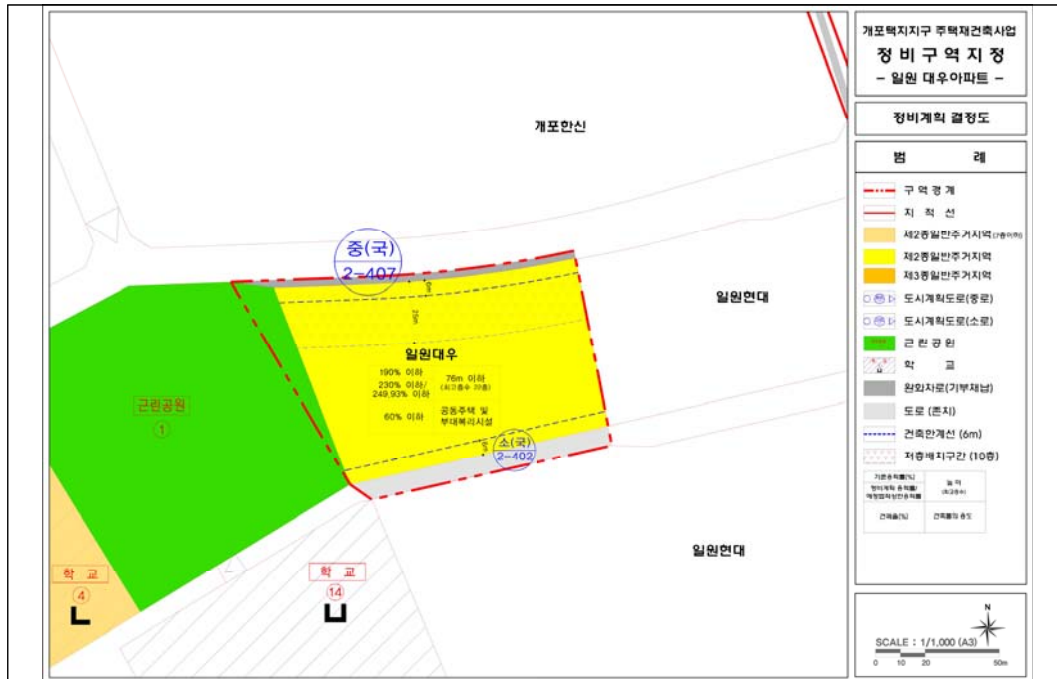
4. 관련서류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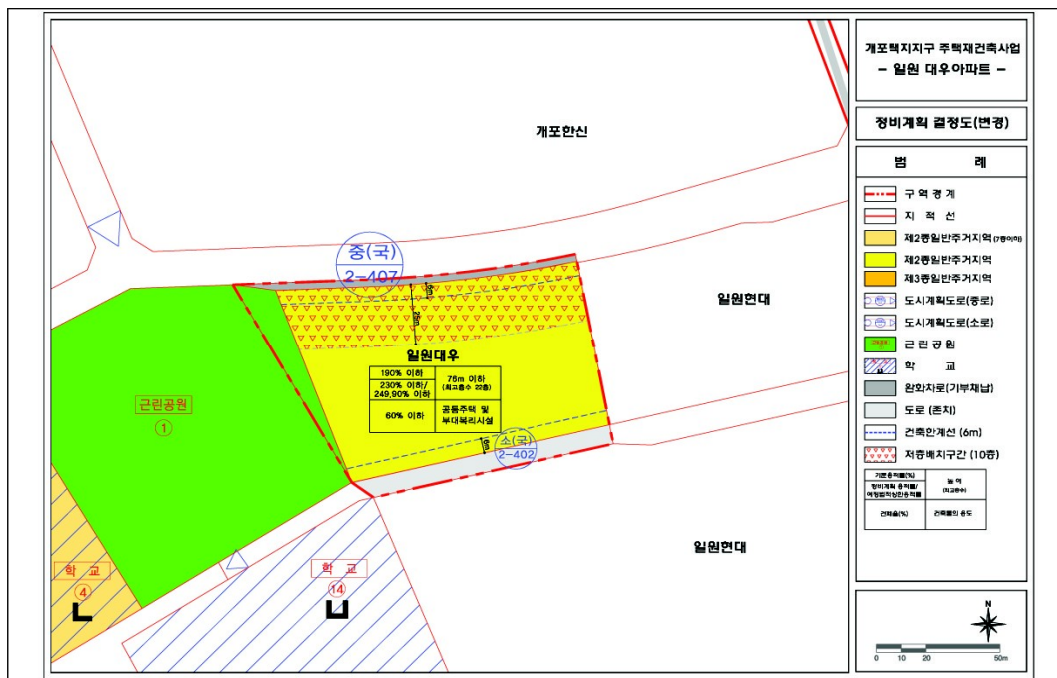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비계획결정(기정)도



2. 정비계획결정(변경)도



◆ 강동구고시 제2017-6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7-261호(2007.8.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강동구 공고 제 2017-257호(2017.2.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37번지 외 2필지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37번지 외 2필지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장
-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명일근린공원 조성
-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 마. 규 모 : 토지보상 2,073㎡
-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 아.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권 리명세	
	계	3필지			2,073						
당초	1	산37	임	5,950	5,950	이선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 로 86, 101동 1506호(여의도 동, 롯데캐슬아이비)			993.33/5950	
						알렉산더훈 강	미합중국 7800 케논 크로버 드 라이브 베커스필드 캘리포니아 93313			990/5950	
						전광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A동 1203호(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793.33/5950	
						이승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11-8(수택동)			1190/5950	
						김재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9, 101동 1001호(정릉동, 정 릉푸르지오아파트)			661.09/5950	
						김상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길 12-8(보문동1가)			661.09/5950	
						김태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05, 1201호(공덕동, 백상프로 포즈오피스텔)			661.16/5950	
변경	1	산37-2	임	1,050	1,050	이선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 로 86, 101동 1506호(여의도 동, 롯데캐슬아이비)			993.33/5950	
						알렉산더훈 강	미합중국 7800 케논 크로버 드 라이브 베커스필드 캘리포니아 93313			990/5950	
						전광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A동 1203호(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793.33/5950	
						이승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11-8(수택동)			1190/5950	
						김재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9, 101동 1001호(정릉동, 정 릉푸르지오아파트)			661.09/5950	
						김상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길 12-8(보문동1가)			661.09/5950	
						김태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05, 1201호(공덕동, 백상프로 포즈오피스텔)			661.16/5950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당초	2	162-1	전	463	463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변경	2	162-1	전	463	463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당초	3	산50	임	1,944	1,944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변경	3	산50-4	임	560	560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지장물(건축물)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구분	번호	소재지	건 물 면 적(㎡)		소 유 자		세대주	세대원	용 도	구 조
			계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성 명	주 소				
당초	1	162-1	53.55㎡	주거용	김옥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71(상일동)			주거용	
				화장실						
				창 고						
				관정						
변경	1	162-1	53.55㎡	주거용	김옥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71(상일동)			주거용	
				화장실						
				창 고						
				관정						

구 공 고

◆ 성동구공고 제2017-392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공람공고

1. “장안평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28호(2016.8.4.)]”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47호(2016.8.11.)]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의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4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포함)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4월 27일

성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7. 04. 27. ~ 2017. 05. 27.(30일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02-2286-5560)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성동구 용답동 234일대	29,883.7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9,883.7	100.0	
획 지	29,883.7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9,883.7	-	29,883.7	100.0	
유통상업지역	29,883.7	-	29,883.7	100.0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유통업무설비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유통 업무 설비	-	성동구 용답동 234일대	29,883.7	감) 29,883.7	0	서울특별시고시 제580호 (78.11.7)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 설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29,883.7	-	-	1	-	-	1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정 상한		
신설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29,883.7	획지	29,883.7	용답동 234 일대	자동차 관련시설	60 이하	400/600 이하/—		130 이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건폐율		- 60%이하							
				구분		인센티브항목		인센티브량			
				옥상녹화		저층부 상부 옥상녹화 조성		70%이하			
				건축물 저층형태		건축물 저층 외관 및 형태					
		※구체적인 인센티브계획은 계획설명서 참조									
		용적률	기준 용적률	● 400%							
허용 용적률	● 600%이하(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준수 : 20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량 = 400%+200%≤600%이하										
	구분		인센티브항목		부여량						
	의무		친환경개발		100%이하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80%이하						
		생활문화 인프라		10%이하							
산업안정		20%이하									
공익시설		20%이하									
보행가로 활성화		20%이하									
※구체적인 인센티브계획은 계획설명서 참조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높이		● 최고 130m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자동차시장1길 : 5m, 자동차시장3길변 : 3m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전면공지		● 위치 : 자동차시장1길 : 5m, 자동차시장3길변 : 3m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공공시설 등 부담계획		● 공공기여율 20% 이상 ●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기준 적용(도시계획시설 폐지 기준) ※구체적인 공공기여계획은 계획설명서 참조									

바) 기타사항 : 이하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중랑구공고 제2017-41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16-16호(2016.03.31.)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2016-25호(2016.05.12.)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된 「신내동 312-1 번지일대 공공공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

나.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179 (신내동 662)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신내동 312-1 번지일대 공공공지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12-6, 326-12	면적 : 135㎡	2016.05.12. ~ 2016.12.31.

라. 붙임 : 위치도 1부.

□ 위 치 도



◆ 노원구공고 제2017-404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노원구고시 제2017-44호(2017. 4. 20)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상계동 389-52외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10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89-52, 389-54, 389-55
2.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행(주차장)
 - 나. 사업의 명칭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2단계)
4. 사업의 내용
 - 가. 면 적 : 199㎡
 - 나. 사업규모 : 지상 평면식주차장 약 10면(일반형 및 경형주차면)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7. 열람장소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104)
8. 열람기간 : 2017. 4. 27 ~ 2017. 5. 12

토 지 조 서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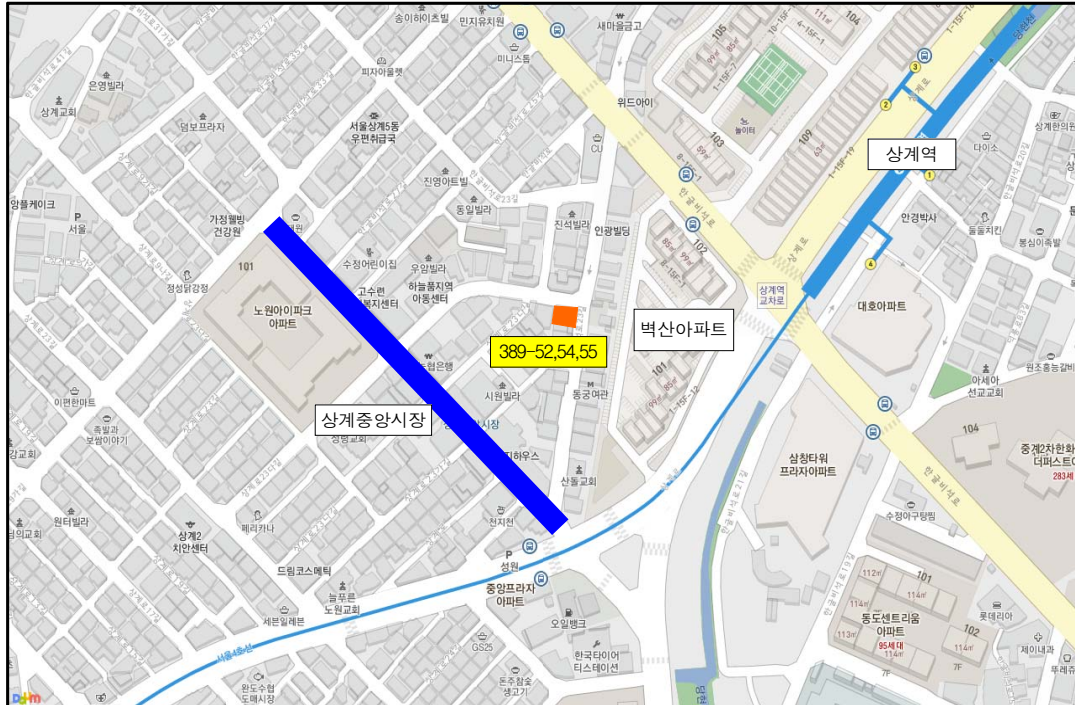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389-52	대	126	홍정선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갈매길 45-***	이심철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5-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2	상계동 389-54	대	40	조상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 40*호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동작구 서당로 215 서림테마상가 2층 신한은행(서당남성지점)	근저당권	
3	상계동 389-55	대	33	"	"	-	-	-	
계			199			-	-	-	

별첨조서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2단계)

연번	소재지 지 번	구 조	규모	연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389-52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 지붕	단층	52.2	홍정선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갈매길 45-**	이심철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5-3**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	
2	상계동 389-54	세멘조	단층	72.7	조상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 40*호	-	-	-	
계				124.9		-	-	-	-	

< 위치도 >



< 현장사진 >



◆ 강서구공고 제2017-569호

도시관리계획(등촌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강서구 등촌동685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폐지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강 서 구 청 장

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II.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시장	대규모 점포	등촌3동 685번지	2,889	감)2,889	-	1995. 12.30	준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당해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은 부지면적에 10%이상을 의무로 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지종합유통 물류시장	시장 폐지 감) 2,889㎡	• 시장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토지이용효율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함.

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상업용지 (A용도) 등촌동 685번지	불허용도	- 건축법에 명시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따른 부적격 시설 준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포함) 단,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 상가주택 등은 허용	허용용도 외 시설	
	허용용도	불허용도 외 시설	-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만 가능. 단, 비주거 용도는 건축물의 최소 2 개층 이상 적용)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	

나. 건축물의 밀도

1)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

위치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등촌동 685번지)	기정	400%	
	기준	300%	
	허용	400%	※1991.05.11. 이후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변경 상한	-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총 제공면적'의 해당 용적률 ※ α = '총 제공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에 대한 '총 제공면적'의 비율 ※ 총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면적 + 환산부지면적 ※ 환산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 단, 2000.07.01.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상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 신설 : 열람도서참조

1) 계획유도 인센티브(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이내에서 계획)

항목	세분	세부계획	비고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	a = 개방형구조 : 3.0 필로티구조 : 2.0

2) 친환경 인센티브(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상에서 계획)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14$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10$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6$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 에너지효율등급 1+, 1++, 1+++ 등급 추가 ※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항목 삭제로 인한 녹색 건축, 에너지 효율등급 인센티브 추가 반영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16$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14$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12$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10$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8$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6$	

라. 건축물의 높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등촌동 685번지	최저층수	• 3층	• 3층	
	최고층수	-	• 15층	

마.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관계도면 : 생략(강서구 도시계획과 열람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구로구공고 제2017-6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시특별시고시 제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구로구고시 제2016-29호(2016.3.3)로 변경결정 고시되어, 구로구공고 제2016-392호(2016.3.24)로 열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6-54호(2016.4.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공고 제2016-709호(2016.6.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고, 구로구고시 제2016-98호(2016.6.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고척프라자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다. 공사완료(준공)현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	공사기간	공사완료 (준공일)
고척프라자주변 도로개설공사 (고척동51-27호~320-3호)	도로개설 B=8~13m, L=50m	구로구고시 제2016-98호 (2016.06.23)	2016.09.28 ~2017.04.26	2017.04.17 (2017.04.19)

라. 위치도 : 1부 (게재생략)

◆ 구로구공고 제2017-681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도로)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구로구 고척동 66-1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구로구청장

가. 입안사유

- 도시가스 공급원이 과거 나프타 분해 및 LPG에서 수입천연가스로 변화됨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부지면적 기준이 변경(폐지) 되어, 소유자의 제안으로 한국가스공사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만 남기고 도시계획시설 해제 하고자 하며,
- 고척동 66-12번지 일대에 15m계획도로가 있으나 장기 미집행 상태로 당분간 집행이 어려워 소유자가 인근 주민의 구일역 접근성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제안되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도로)을 변경결정 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결정(안)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가스공급 설비	-	고척동 66-12일대	10,148	감)9,700	448	서울특별시 고시 제652호 (84.11.16)	잔여부지 한국가스공사 부지(44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3.0	특수 도로	125.0	고척동 66-31	고척동 66-30	보행자 전용도로	-	구로구고시 제2015-39호 2015.3.12	
변경	소로	3	1	6.0	특수 도로	198.0	고척동 66-31	고척동 66-30	보행자 전용도로	-	구로구고시 제2015-39호 2015.3.12	폭원확폭 및 도로연장

다. 관련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5)

구로구청홈페이지(<http://guro.go.kr>→고시·공고),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 금천구공고 제2017-488호

도시관리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4개소] 결정(변경) 열람공고(안)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결정된 시흥1존치관리구역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금 천 구 청 장

1. 목적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재)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시흥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828번지 일대	25,030	-	25,030	서울시고시 제2006-123호(' 06.4.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14-134호(' 14.04.03.)로 촉진계획 변경 결정
신설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57일대	-	증) 49,282.4	49,282.4	서울시고시 제2012-127호(' 12.5.17.)로 촉진계획 변경 결정
신설	박미사랑마을(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대		증) 97,596.2	97,596.2	서울시고시 제2014-32호(' 14.1.29.)로 촉진계획 변경 결정
신설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70번지 일원	-	증) 121,812	121,812	서울시고시 제2016-179호(' 16.6.30.)로 촉진 계획 변경 결정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11층)(☎02-2627-1562)
-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의견 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4개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1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공고 제2017-62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관악구 남현동 산99-19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hdongsoo@ga.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관 악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① 위치 : 남현동 산99-19번지 일대(사당역~남태령역 과천대로변)
- ② 면적 : 약 62,000㎡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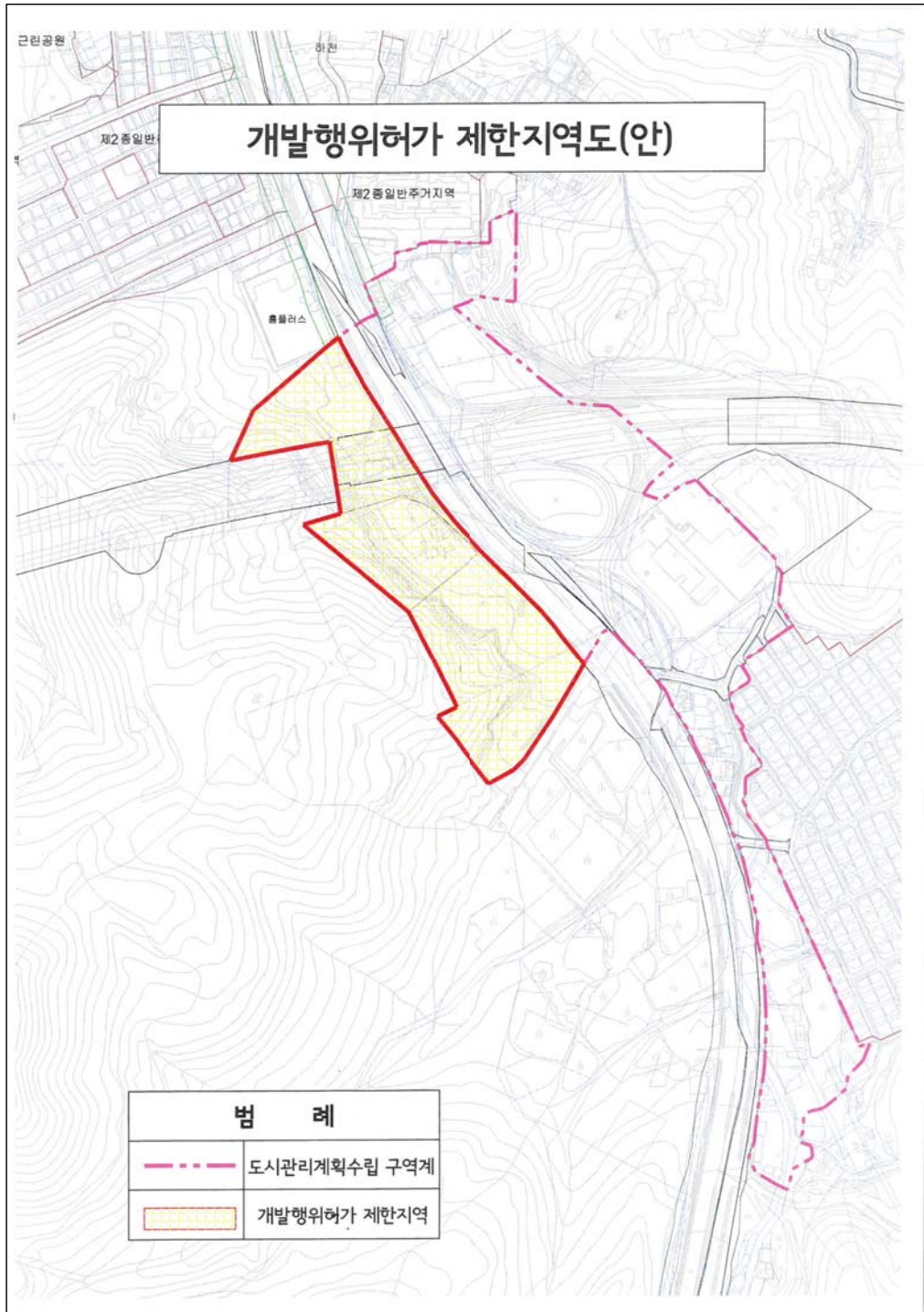
- ① 서울시의 「과천대로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 ② 도시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절개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해소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행위

- 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②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고시일 이전 허가, 승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건축허가·신고
 -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재축
 - 3)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다만 도시관리계획 고시일 다음날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해제됨.

-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관악구청 6층 도시계획과(☎879-6355)
 사. 관련도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 서초구공고 제2017-5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2('01.9.2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2('16.6.23)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5호('16.12.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원지동체육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원지동체육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부지 면적 : 20,923㎡
 - 나) 시설면적 : 11,063㎡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7)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물건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나.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지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	원지동	23-0	잡	14,834	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2	원지동	26-0	전	3,093	1,74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	원지동	26-1	대	298	222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	원지동	26-2	대	132	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5	원지동	28-0	전	3,002	3,002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6	원지동	28-1	전	2,294	1,89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7	원지동	28-2	전	1,099	54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8	원지동	29-1	전	492	47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9	원지동	29-2	전	2,581	2,56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0	원지동	29-8	답	1,114	575		국(건설교통부)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1	원지동	32-0	전	5	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2	원지동	32-3	전	838	346		국(건설교통부)				
13	원지동	33-0	전	2,029	1,96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4	원지동	33-2	전	336	330		국(건설교통부)				
15	원지동	33-3	도	144	19		국(건설교통부)				
16	원지동	34-1	전	504	50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7	원지동	34-2	전	315	31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8	원지동	34-4	전	19	19		국(건설교통부)			지분 4분의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지분 4분의1	
19	원지동	34-8	전	435	435		국(건설교통부)				
20	원지동	34-9	전	100	100		국(건설교통부)			지분 4분의3	
							국토해양부			지분 4분의1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21	원지동	34-10	전	496	6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22	원지동	34-12	도	261	131		국(건설교통부)				
23	원지동	34-13	전	85	29		국(건설교통부)			지분 4분의3	
							국토해양부			지분 4분의1	
24	원지동	35-3	답	3	3		국(건설교통부)				
25	원지동	35-9	답	10	10		국(건설교통부)				
26	원지동	35-10	답	1	1		국(건설교통부)				
27	원지동	35-11	전	247	27		국(건설교통부)				
28	원지동	35-13	도	135	13		국(건설교통부)				
29	원지동	35-14	답	129	32		국(건설교통부)				
30	원지동	38-0	전	293	29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31	원지동	38-3	전	303	303		국(건설교통부)				
32	원지동	38-4	전	855	39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3	원지동	38-6	전	26	17		국(건설교통부)				
34	원지동	38-7	도	261	145		국(건설교통부)				
35	원지동	39-0	전	245	24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6	원지동	39-1	전	473	2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7	원지동	산79-2	임	454	454		국(산림청)				
38	원지동	산79-3	임	1,100	1,100	염곡동 142	조영출				
39	원지동	산79-5	임	170	170		국(건설교통부)				
40	원지동	산79-6	임	15	1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41	원지동	산79-9	임	904	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2	원지동	산79-11	임	1,373	1,339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3	원지동	산79-13	임	1,481	28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4	원지동	산79-14	임	1,016	78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5	원지동	산79-15	임	1,608	9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6	원지동	611-2	도	898	213		국(건설교통부)				

[별지 제5호서식]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원지동 체육관 조성사업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35(2016.1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7-27(2017.1.12.)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서초구청장					
	주 소		서초구 남북순환로 2584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조영출					
	주 소		서초구 염곡동 142, 염곡안3길 11					
물건의 내역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광고탑 (기초포함)	기초 - CON' C 광고탑 - 철구조물	1개소	지방 제정 공제회	마포구 마포대로 136 18층 (공덕동, 지방 제정공제회)	• 광고탑 설치를 위하여 토지 임대 - 광고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 지방제정공제회 - 위탁받은 사업자 ⇒ 주식회사 애드21 - 두원산업주식회사	
		광고탑 기초	CON' C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소유자 날인 거부 사유 - 추후 보상 관련 안내문 오지 않는야, 안내문 오면 그때 필요 하다면 하겠다.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 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17년 2월 3일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인) 물건의 소유자 주식회사 애드21, 두원산업주식회사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1. 본서식은 물건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량(면적)"란에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3. "관계인"란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기재합니다. 4.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비고"란에 공부상 면적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원지동 체육관 조성사업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35(2016.1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7-27(2017.1.12.)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서초구청장					
	주 소		서초구 남북순환로 2584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조영출					
	주 소		서초구 염곡동 142, 염곡안3길 11					
물건의 내역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초구 원지동	산79-3	아까시나무	H8.0×R15	70주	조영출			
		참나무	H15×R80	1주	조영출			
		참나무	H8.0×R50	1주	조영출			
		참나무	H8.0×R40	6주	조영출			
		참나무	H8.0×R30	1주	조영출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소유자 날인 거부 사유 - 추후 보상 관련 안내문 오지 않는야, 안내문 오면 그때 필요 하다면 하겠다.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 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17년 2월 3일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인) 물건의 소유자 조영출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1. 본서식은 물건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량(면적)"란에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3. "관계인"란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기재합니다. 4.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비고"란에 공부상 면적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초구공고 제2017-576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6.23)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반포동 19-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27일
서 초 구 청 장

가. 인가신청의 요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 명칭 : 센트럴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

2) 사업대상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번지

3)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59,149.40㎡
- 건축연면적 : 286,023.74㎡
- 주요변경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건축면적	25,499.28㎡	25,499.28㎡	+ 0.00㎡	
연 면 적	286,023.74㎡	286,023.74㎡	+ 0.00㎡	
용적률 산정연면적	160,765.45㎡	160,765.45㎡	+ 0.00㎡	
건 폐 율	43.11%	43.11%	+ 0.00%	
용 적 율	271.80%	271.80%	+ 0.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수선 사항 (전체면적 증감없음)	지상1층	25,485.04 ㎡	25,411.88 ㎡	- 73.16 ㎡
	지상중1층	7,023.31 ㎡	8,947.54 ㎡	+ 1,924.23㎡
	지상2층	12,166.17 ㎡	12,219.96 ㎡	+ 53.79 ㎡
	지상7층	10,267.78 ㎡	10,502.16㎡	+ 234.38 ㎡
	지상8층	9,784.50 ㎡	9,792.06 ㎡	+ 7.56 ㎡
	지상9층	9,631.80 ㎡	8,489.93 ㎡	- 1,141.87 ㎡
	지상10층	9,631.80 ㎡	9,639.36 ㎡	+ 7.56 ㎡
	지상11층	5,063.64 ㎡	4,051.15 ㎡	- 1,012.49㎡
용도변경 (도시계획 시설)	지하4층	주차장 → 운수시설 (101.1㎡) / 운수시설 → 숙박시설 (101.1㎡)		운수시설(내부복도) 위치이동
	지하2층	창고 → 운수시설 (115.27㎡) / 판매시설 → 운수시설 (56.49㎡) / 운수시설 → 판매시설 (171.76㎡)		운수시설 (쓰레기처리장) 위치이동
	지상1층	운수시설 → 판매시설 (703.80㎡)□ /□ 운수시설 → 숙박시설 (7.56㎡)		운수시설□ -711.36㎡(감소)
	지상중1층	운수시설 → 판매시설 (472.88㎡)□ / 판매시설 → 운수시설 (1,184.24㎡)		운수시설□ +711.36㎡(증가)
비 고		• 대수선에 따른 시설면적 증감 없음 • 용도변경에 따른 운수시설의 면적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센트럴시티 대표 박주형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
- 5) 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다.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서초구 반포동	19-3 19-12	대	-	59,149.40	(주)센트럴 시티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청 제2017-583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 우리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7)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7일
서 초 구 청 장

가.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개소	구분	단계별 집행기간						비고
			계		1단계(2-1년차)		2-1단계('19~'20)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0	건수	10	106,785.6			10	106,785.6	
		사업비 (백만원)		6,468				6,468	
도로	2	건수	2	3,273.6			2	3,273.6	
		사업비 (백만원)		380				380	

시설별	개소	구분	단계별 집행기간						비고
			계		1단계(2-1년차)		2-1단계('19~'20)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공원	4	건수	4	79,681.0			4	79,681.0	
		사업비 (백만원)		6,088				6,088	
사회 복지시설	1	건수	1	7,251.0			1	7,251.0	
		사업비 (백만원)		사업 시행시 제출				사업 시행시 제출	
도서관	1	건수	1	342.2			1	342.2	
		사업비 (백만원)		사업 시행시 제출				사업 시행시 제출	
시장	1	건수	1	4,258.8			1	4,258.8	
		사업비 (백만원)		사업 시행시 제출				사업 시행시 제출	
주차장	1	건 수	1	11,979.0			1	11,979.0	
		사업비 (백만원)		사업 시행시 제출				사업 시행시 제출	ㄴ

나.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연번	시설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백만원)				비고
				연장 (m)	폭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구비	민간	
1	도로	서초동 1742-3	2-1 단계 '19~'20	6.0	150.0	963.6	100		100		
2	도로	서초동 1376-5	2-1 단계 '19~'20	10	231.0	2310.0	280		280		
3	공원	도구머리공원 (방배동 산75-1일대)	2-1 단계 '19~'20			69,578.0	2,803		2,803		
4	공원	원지어린이공원 (원지동 368-1일대)	2-1 단계 '19~'20			1,938.0	297		297		

연번	시설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백만원)				비고
				연장 (m)	폭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구비	비재정적 민간	
5	공원	방배동근린공원 (방배동 산102-20일대)	2-1 단계 '19~'20			7,003.0	1,448		1,448		
6	공원	능안어린이공원 (내곡동168-10일대)	2-1 단계 '19~'20			1,162.0	1,540		1,540		
7	사회 복지 시설	우면동 산 21-2	2-1 단계 '19~'20			7,251.0	사업 시행 시, 산출			사업 시행 시, 산출	
8	도서 관	방배동 997-2	2-1 단계 '19~'20			342.2	사업 시행 시, 산출		사업 시행 시, 산출		
9	시장	서초동 1448-1일대	2-1 단계 '19~'20			4,258.8	사업 시행 시, 산출			사업 시행 시, 산출	
10	주차 장	신원동 225일대	2-1 단계 '19~'20			11,979.0	사업 시행 시, 산출		사업 시행 시, 산출		

다. 열람기간 : 2017년 4월 27일부터

라. 주요 사업별 단계별 집행계획조서 및 관계도면 : 생략

◆ 서초구공고 제2017-59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열람공고

서초구 방배동 산127번지(사당역~남태령역 과천대로변) 일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개발행위허가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njhn0928@seocho.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서 초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2)

서초구 홈페이지 → 열린구청 → 서초구소식 → 고시/공고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내용

1) 제한 대상지역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산127번지 일대(사당역~남태령역 과천대로변)
- 면 적 : 약 135,700㎡

2) 근거 및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 서울시의 「과천대로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 도시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과천대로 일대의 경관 회복 및 지역재생을 통해 서울관문으로서의 지역위상 정립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

3) 제한대상 행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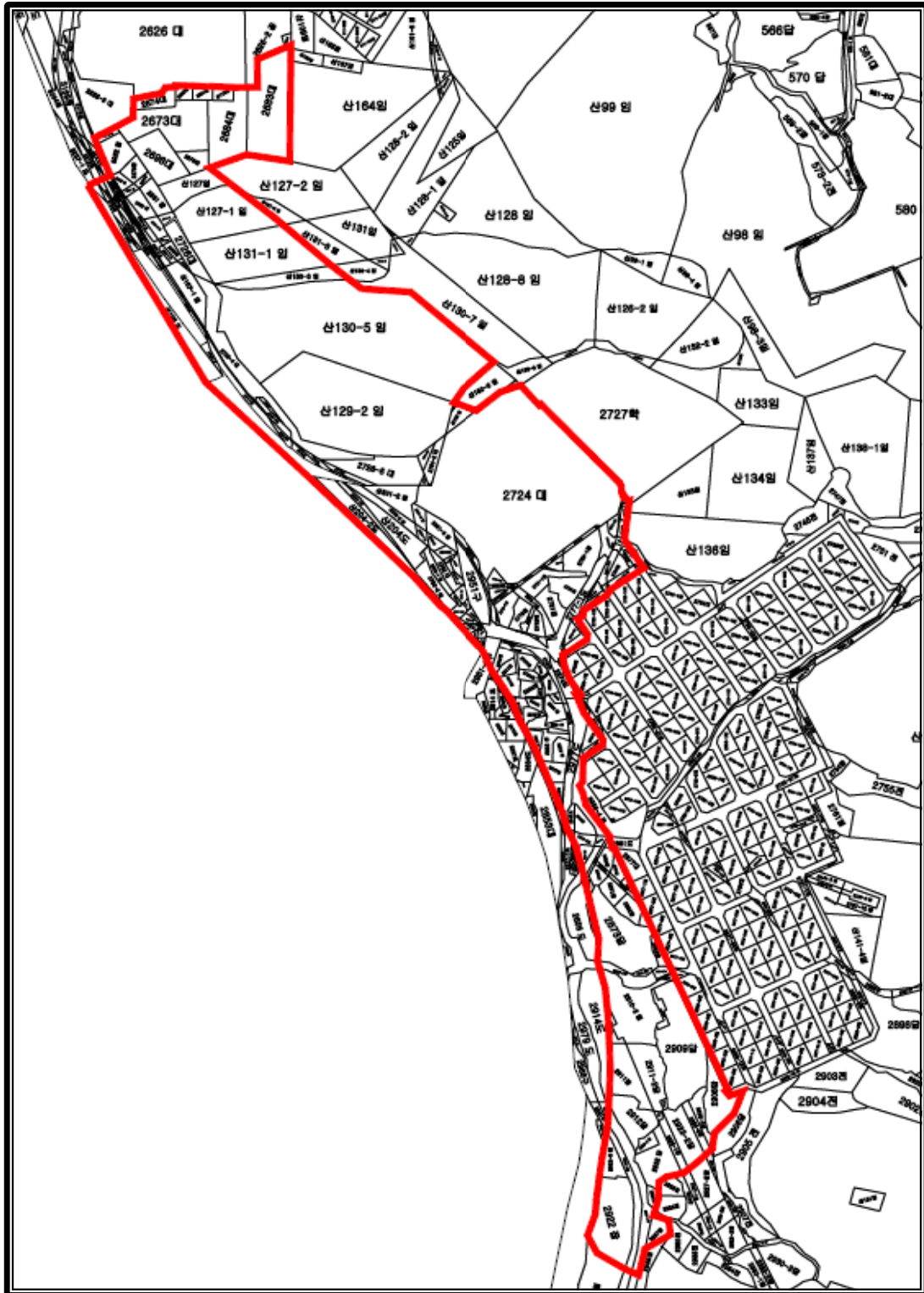
- 고시일 이전 이미 적법하게 행정청의 허가·신고·승인을 받아 착공한 개발행위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건축허가·신고
 - 나.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재축
 - 다.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단, 기간완료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경우 그 기간까지로 함)

라. 시행시기 : 고시일부턴 효력 발생

마. 관계도면 : 첨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관계도면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 2척	올림픽대교 정밀점검	2017.04.25.~ 2017.04.28.	2017. 4.20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7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727-24번지 등 10필지
 - 면 적 : 영구 10,263㎡, 일시 13,2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장안교(구교) 성능 개선공사에 따른 교량 철거 및 신설
 - 내 역 :

당 초	변 경
- 장안교 성능개선공사 - 장안교 하부구간 (별자리마당 526㎡, 운동기구 18개소, 벤치17개소, 행성쉼터7개소)	- 좌 등 - 장안교 하부구간 (벤치 : 중랑구 31개소, 동대문구 14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2015.08.03.~2017.09.30.)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